2021
자동차경기
국내규정집

CJ 대한통운 | OFFICIAL PARTNER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

MEMBER OF FIA

차례

국내 규정

국제 규정

공인수수료

부록

국내 규정

제1장
도덕헌장(Code of Ethics)

제정 2014년 1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21년 1월 1일

제1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한다.

제2조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제3조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여 성숙한 모터스포츠 문화를 이룩한다.

제4조 모터스포츠에 불건전한 행위를 삼가며, 모터스포츠인으로서 품위를 지킨다.

선수, 오피셜, 팀 관계자 및 모터스포츠 관련업을 하는 모든 종사자는 남녀평등과 스포츠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 올바른 모터스포츠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한자동차경주협회와 국제자동차연맹이 진행하는 상벌 관련 사항과 회원간 분쟁 조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

제6조 모터스포츠 전반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제7조 모터스포츠 발전과 권익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 모터스포츠 가치를 훼손하는 비리와 부정, 차별과 폭력을 철저히 배격한다.

제9조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현하여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제10조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장
국내스포츠규정

제정 1997년 1월 1일
개정 2000년 1월 1일
개정 2001년 1월 1일
개정 2002년 1월 1일
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6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21년 1월 1일

제1조 총칙

제1.1조 자동차경기의 국제적 총괄

국제자동차연맹(이하 FIA라 한다)은 각국의 자동차경기와 기록을 관장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실시하는 권한 기구이고 FIA 국제 챔피언십을 주관하고 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최종 국제심의 기관이다. FIA는 1바퀴, 2바퀴, 3바퀴 차량에 관해서는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Motocyclisme)이 상기의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1.2조 국제스포츠 규정 (International Sporting Code, ISC)

FIA는 스포츠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제스포츠규정을 제정한다. 국제스포츠규정 및 그 부칙의 목적은 국제 모터스포츠를 부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제스포츠규정은 경기 및 선수의 참가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단, 모터스포츠의 안전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FIA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자동차경기의 국내적 총괄

FIA에 가입하는 각 나라의 클럽과 단체는 국제스포츠규정을 준수한다. ASN은 FIA가 각 나라 별로 스포츠 권한을 인정한 유일한 단체로 해당 국가의 국내스포츠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자동차경기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및 취소

각국의 ASN은 FIA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스포츠규정에 의해 부여된 스포츠 권능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자국의 다른 일개 혹은 여러 개의 단체에 위임하는 권리를 가지며 FIA에 통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위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국내스포츠규정의 제정권

각국의 ASN은 국내스포츠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이 규정은 FIA의 국제스포츠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FIA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제1.6조 국내의 총괄권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라 한다)는 FIA에 의하여 한국 대표로서 공인되며 FIA의 정관 및 국제스포츠규정을 준수하며, 이에 의하여 국내의 자동차경기를 관리, 총괄하는 유일한 권한 단체이다.

제1.7조 국내스포츠규정의 제정과 시행

KARA는 전조의 권한을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FIA의 국제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스포츠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본 규정은 4륜차 이상의 자동차가 참가하고 국내에서 조직되는 KARA의 모든 공인 경기에 적용된다.

제2조 용어와 정의

제2.1조 개요

이하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와 약칭은 국내스포츠규정과 그 부칙 및 부칙에 준한 모든 특별규정에서 적용되며,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다.

1. FI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 Automobile)

   국제자동차연맹의 약칭으로 공인된 각국 자동차단체에 의하여 구성된 유일한 국제적 기관이다.

2. ASN (Authority Sporting National)

   FIA에 의하여 공인된 각국 국내의 모터스포츠를 총괄하는 단체의 약칭이다.

3. KARA

   본 협회의 영어명(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의 약칭이다.

4. 자동차

   모두가 한 줄로 늘어서 있지는 않는 적어도 네 개의 바퀴가 지속적으로 지면(또는 얼음)과 접촉해 있으며, 적어도 두 개의 바퀴는 조향에, 적어도 두 개의 바퀴는 추진에 쓰이고, 탑승한 선수가 그 동력과 조향 시스템을 항시 제어하는 운송 수단.(경기의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차량, 트럭, 카트를 포함한, 그러나 이들만으로 한정되지 않은 다른 용어들을 자동차와 바꿔서 쓸 수 있다)

5. **실린더 용량**

1개 또는 그 이상의 엔진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의 상하 운동으로 생기는 배기량을 말한다. 이 용량은 세제곱 센티 미터로 나타내고, 실린더 용량에 대한 계산의 원주율은 항상 3.1416으로 한다.

6. **클래스구분**

자동차의 실린더 용량이나 국내경기 차량규정에 준한 자동차의 구분이다.

7. **경기** (Competition)**, 대회** (Event)

경기(Competition)는 개별 결과를 갖는 모터스포츠 활동으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히트, 결승, 연습주행, 예선 주행과 카테고리별 결과로 구성된다. 경기 종류에는 서킷레이스, 랠리, 크로스 컨트리 랠리, 드래그 레이스, 힐 클라임, 기록 경기, 테스트, 트라이얼, 드리프트 등이 있으며 FIA의 재량에 따른 다른 형태의 경기들이 있다.

대회(Event)는 여러 개의 경기(Competition), 퍼레이드, 데모 주행, 투어링 어셈블리(Touring Assembly)등으로 구성되는 집합이다.

8. **짐카나**

가속, 브레이크 등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경기로, 정해진 코스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주행하는 경기이다.

9. **드리프트**

포장된 노면에서 접지 면과의 마찰력, 자동차의 관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속도와 방향을 컨트롤하는 것을 겨루는 경기이다.

10. **서킷 레이스**

서킷에서 열리는 경기로, 2대 이상의 차량이 같은 세션 내에 출발하여 동일한 코스를 주행하고 속도 또는 미리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서의 주행거리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는 경기를 말한다.

11. **드래그레이스**

2대의 차량으로 정확하게 거리가 측정된 직선 코스에서 스탠딩 스타트로 출발하여 (페널티 없이) 피니쉬 라인을 먼저 통과한 차량이 이기는 가속 경기를 말한다.

12. **오프로드 경기**

비포장노면을 포함한 서킷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이 같은 세션 내 동일한 코스를 주행

하고 속도 또는 미리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서 주행거리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는 경기를 말한다.

13. 국제경기

FIA에서 공표한 국제스포츠규정과 그 부칙, 일반 규정에 따른 국제 안전의 표준 수준을 획득한 경기를 말한다.

FIA 또는 타 ASN 캘린더에 등록된 경기여야 한다.

14. 국내경기

국내 경기는 국제스포츠규정 제3조에 의거 KARA 공인 하에 개최되며 다음 사항을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한다.

1) 오직 KARA에 등록된 팀과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 선수만이 참가할 수 있는 경기

2) KARA의 캘린더에 등록되어 있는 경기

15. 제한된 경기 (RESTRICTED EVENT)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경기 참가자 혹은 선수가 특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국내경기 혹은 국제경기를 제한된 경기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최자 초대 참가에 의한 경기는 제한된 경기이다.

16. 클로즈드 (CLOSED) **대회**

국내 경기가 KARA가 발급한 선수 라이선스를 가진 한 클럽의 회원만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클로즈드 (Closed) 경기라고 한다. 이 경우 KARA의 공인을 받아야 하며 때에 따라 여러 클럽이 개최할 수 있다.

17. 랠리 (RALLY)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열리는, 평균 속도를 부과하는 도로 경기. 랠리는 모든 차량이 따라야 하는 루트로 구성되어 있거나, 사전에 정해져 있는 같은 랠리포인트에 모이는 여러 개의 루트, 또는 공통 루트가 아예 없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루트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스페셜 스테이지, 곧 일반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 주최되는 이벤트로, 이들을 모두 합쳐서 랠리의 총 순위를 결정하는 구간을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둘 수 있다.

스페셜 스테이지로 쓰이지 않는 일정은 로드 섹션이라고 부른다. 이들 로드 섹션은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도로를 부분 활용하는 경기지만 상설, 또는 준상설 서킷에서 진행되는 스페셜 스테이지가 랠리의 전체 거리 가운데 20%보다 많은 경우에는, 진행 절차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스피드 경기로 보아야 한다.

18. 테스트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또는 시간 내에 각 경기 참가자가 선택해서 주행할 수 있는 공식 시간을 말한다.

19.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및 시리즈

챔피언십은 시리즈 경기이거나 단독 경기일 수 있다. 오직 FIA만이 국제 관련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시리즈를 인가할 수 있으며 오직 KARA만이 국내챔피언십컵, 컵, 트로피, 챌린지 및 시리즈를 인가할 수 있다.

국내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및 시리즈는 오직 KARA나 KARA로부터 서면에 의해 승인된 주최자(대회주최자) 만이 개최할 수 있다.

국내 챔피언십 대회는 최상위 클래스의 평균 엔트리 숫자가 6대 이상 가능한 규모여야 한다. 만일 평균 엔트리 숫자가 6대 미만일 경우 챔피언십 대회 자격 유지 여부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

20.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KARA에게 승인을 받고, 스포츠 경기의 주최자를 대변하여 스포츠 경기의 조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대회특별규정을 집행하는 단체이며, 경기 운영을 책임지는 1인, 대회주최자를 대표하는 1인, 경기 기술적 측면을 책임지는 1인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집합체를 말한다.

21. 공인 (Organizing permit)

국내경기 또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대해 국제스포츠규정과 국내스포츠규정에 맞추어 기록, 조직, 일정, 대회특별규정 등을 KARA가 허가하고, KARA 캘린더에 등록하는 과정을 말한다.

22. 대회특별규정

해당 대회의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규정에 따라서 주최자가 KARA의 승인을 받은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말한다.

23. 공식 프로그램

경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관중에게 알리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준비하는 공식문서를 말한다.

24. 코스

경기에서 선수가 주행하는 노선을 말한다.

25. 서킷

시작과 종료지점이 같고 고유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경주를 위해 특별하게 건설되었거나 특별하게 설치된 폐쇄된 코스를 말한다.

서킷은 설비의 특성 및 경기에서의 이용도에 따라 임시, 준상설, 상설로 나눌 수 있다.

26. 스피드웨이

4개의 코너를 넘지 않고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는 상설 서킷을 말한다.

27. 마일 및 킬로미터

미터법에 의하여 1마일은 1.609344km로 하고, 1km는 0.621371mile로 환산 측정한다.

28. 기록 (Record)

규정되어 있는 특별조건 아래 수립된 최고의 성적을 말한다.

29. 지역기록 (Local Record)

선수의 국적에 상관없이 ASN에 의하여 승인된 상설이나 임시 트랙에서 수립된 기록을 말한다.

30. 국내기록 (National Record)

선수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 지역의 ASN이나 타지역의 ASN에 의하여 승인된 규정하에 세워지거나 갱신된 기록을 말한다.

국내기록은 그 기록챌린지에 적격인 차량의 규격이 세분화된 클래스 중 하나로 획득한 최고기록인 경우에는 국내 클래스기록(Class record)이라고 부르며, 또 클래스 구분을 고려하지 않은 최고기록인 경우에는 국내 절대기록(Absolute record)이라고 부른다.

31. 국제기록 (International Record)

국제기록이란 소정의 클래스 구분, 그룹 구분으로 수립된 최고의 성적을 의미한다. 이 기록에 관한 내용은 FIA 국제 규정을 따른다.

32. **세계기록** (World Record)

클래스에 관계 없이 차량이 수립한 최고의 성적으로 FIA에 의하여 공인된 기록을 말한다.

33. **기록보유자** (Holder of the Record)

개개의 기록챌린지에 있어서 수립된 기록은 도전 허가서의 명의인이고 그 공인신청서의 서명인을 두고 기록보유자라 한다. 경기중에 수립된 기록은 그것에 의하여 해당 성적이 수립된 자동차의 사용 명의인인 경기 참가자를 두고 기록보유자라 한다.

34. **출발** (Start)

스타트란 단독의 경기참가자나 동시에 출발하는 다수의 경기참가자에 대하여 출발의 신호가 주어진 순간을 말한다.

35. **컨트롤 라인** (Control Line)

그 장소를 차량이 통과할 때 계시되는 선을 말한다.

36. **출발선** (Start Line)

시간 측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의 컨트롤 라인을 말한다.

37. **결승선** (Finish Line)

시간 측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의 컨트롤 라인을 말한다.

38. **파크퍼미** (Parc Ferme)

파크퍼미는 대회특별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경기참가팀이 각 차량을 정해진 장소로 이동할 의무가 있다. 차량검차가 행하여지는 경기는 파크퍼미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39. **핸디캡** (Handicap)

차량이나 선수에 대해서 공평성을 주기 위하여 대회특별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방법이다.

40. **경기참가팀**

KARA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경기참가를 정식으로 접수한 팀을 말한다.

41. 선수

KARA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의 소지자로 경기에서 경기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42. 라이선스 (Licence)

어느 지위든 관계없이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에서 관할하는 경기에 참가 또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선수, 경기 참가자, 차량제조사, 팀, 오피셜, 주최자, 서킷 등)에게 발급되는 등록증. 자세한 내용은 각 등록 규정에 준한다.

43. 라이선스 등록명부

KARA에 의해 선수 라이선스를 발행 받은 자의 명부로 KARA가 보관한다. 등록명부에는 개개의 라이선스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44. 라이선스 번호 (Licence Number)

라이선스 발급 시 KARA에 의해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45. 출장정지 (Suspension)

출장정지란 그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단체에 대하여 국내 경기 또는 FIA의 총괄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의 각종 경기 참가자격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46. 자격상실 (Disqualification)

어떤 사람 또는 단체가 어떤 경기든 참가를 완전히 금지 당하는 것을 말한다.

47. 국적

KARA에 등록한 팀이나 KARA가 발급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선수는 라이선스 기한 동안은 대한민국 선수로 간주한다. 그러나 FIA 월드 챔피언십 경기에 한해서는 선수의 여권 국적을 공식문서, 기록, 시상 등에 적용한다.

제3조 경기규정

제3.1조 규정의 일반적 적용

국내에서 개최되어 KARA의 공인을 받는 모든 경기와 모든 행위는 본 규정이 적용된다.

제3.2조 경기의 개최

대한민국 내 개최되는 자동차경기는

1. KARA가 주최하거나
2. KARA가 허가한 주최자만 주최가 가능하다.

제3.3조 공식문서

모든 경기는 공식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특히 대회특별규정과 공식 프로그램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공식문서 중 본 규정에 상반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는 그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3.4조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

대회특별규정, 공식프로그램, 참가신청서 등의 모든 문서에 명확하게 '본 경기는 FIA의 국제스포츠규정과 KARA의 국내스포츠규정에 의거해서 개최한다(Held under the International Sporting Code of the FIA and the National Competition Rules of KARA)'라고 명시해야 한다.

제3.5조 규정의 정통 및 준수

경기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가하려는 모든 개인, 단체는 KARA에 라이선스의 교부를 신청하고 다음의 조항을 숙지한 후 경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FIA의 정관과 국제스포츠규정, 그리고 KARA의 정관과 국내스포츠규정을 숙지한다.
2. 위 사항 및 스포츠 기구의 결정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예외 없이 따를 책임을 갖는다.
3. 이러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가하는 사람 또는 단

체는 발급된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으며, KARA는 그러한 결정의 이유를 밝힌다.

4. 차량이 대회기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성능에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3.6조 공인에 대한 취소

경기 조직 및 운영 시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본 규정을 어겨 안전 또는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이에 대해 벌칙이 규정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공인 경기 중 상기와 같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인은 취소 할 수 있다. 또한 조건적 공인도 가능하며, KARA는 이유를 밝히고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 경기의 연기 또는 중지

경기는 연기 혹은 중지의 규정이 대회특별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나 심사위원회가 국가보안상 혹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연기를 결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연기 또는 중지 할 수 없다. 24시간 이상 연기 또는 중지의 경우에는 참가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경기조직

제4.1조 주최자

경기를 조직하는 단체, 팀, 개인을 주최자(대회주최자)라고 한다. 주최자는 그 권한과 의무를 조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다.

제4.2조 주최자의 등록

KARA가 공인하는 경기를 개최하려는 주최자는 제3장 대회주최자 등록 규정에 따라 KARA에 등록을 해야 한다.

제4.3조 경기공인

어떠한 경기도 KARA의 경기 공인이 없으면 개최할 수 없다. KARA는 필요에 의해 부분적 또는 조건적 공인을 부여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4.4조 경기공인의 신청

경기 시리즈 등록신청은 대회 개최 2개월전까지 시리즈 등록신청서, 대회특별규정(스포츠규정,차량기술규정)을 KARA사무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 경기 공인의 신청은 대회 개최 5일전까지 대회공인신청서, 대회특별규정(공지사항이 있을 경우) 드라이버, 오피셜 명단, 대회공인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제7장 대회 등록규정 제12조 참조)

국제 경기의 공인 신청은 대회 개최 3개월전까지로 한다. KARA가 신청에 대한 비용은 매해 발표하는 규정에 따라 정한다. 공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부칙을 따른다.

제4.5조 경기공인 증명의 발급

KARA는 경기 공인 증명을 공문으로 발송한다.

제4.6조 법률 및 규정의 준수

경기는 일반 공도 혹은 서킷 또는 양쪽을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단, 조직 위원회가 관계 관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다면, 경기 공인 증명은 발급되지 않는다.

1. 경기가 일반교통에 공개되어 있는 공도상에서 행하여질 경우 국내에서 시행되어 있는 교통 법규에 근거해서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당교통 법규의 위반에 대하여는, 심사 위원회의 재량에 의한 벌칙이 부과된다.

제4.7조 대회특별규정의 내용

대회의 특별규정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본 규정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에 규정한 조문 (본 규정 제3.4조 참조)
2. 경기의 명칭과 경기 종목 (제2조 용어와 정의 참조)
3. 주최자의 주소와 이름
4. 경기의 장소, 일정
5. 심사위원 명단, 주요 오피셜 명단, 경기장 설명

* 레이스 디렉터 선임시 그 의무와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6. 경기의 세부사항, 경기차량의 세부적인 제한, 선수의 자격과 정원
7. 참가신청 기간
8. 참가비
9. 선수 지명의 최종 기일과 장소, 그 밖의 특별사항
10. 보험에 관한 사항
11. 선수의 교대나 자동차의 교환이 허용되는 경우와 그것에 따른 특별사항
12. 공식 검차 일정
13. 공식 예선의 일정과 방법
14. 스타트 일시와 방법, 핸디캡의 규정
15. 스타트 시 선수의 반칙에 대한 벌칙 규정
16. 경기중의 연료보급에 관한 규정
17. 항의에 관한 특별사항
18. 경기의 중단, 연기, 중지에 관한 특별사항
19. 결승 심사방법과 순위 판정방법
20. 시상방법
21. 경주차의 안전규정(롤케이지, 소화장치, 전원차단장치, 견인고리등)
22. 경주차 무게측정의 정확한 기준과 부품의 사용, 개조의 범위등
23. 그 밖의 경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 특별규정의 변경

경기의 참가접수가 끝난 후에 대회특별규정을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KARA와 경기 심사위원회가 인정하여 결정하게 되었을 때 대회특별규정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변경된 대회특별규정에 대해 드라이버 브리핑 전에 심사위원회와 협의가 되어야 하며 문서로 공식 게시의 의무를 가진다.

제4.9조 공식 프로그램의 내용

경기의 공식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식 프로그램은 게시판과 대회 관련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

1. 본 규정 중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에 규정하는 사항 (제3.4조 참고)
2. 주최자와 조직위원의 이름
3. 경기 장소와 일정
4. 경기 시간과 간단한 설명
5. 팀과 선수의 이름, 경기차량에 주어진 식별용 번호 및 표시
6. 핸디캡이 주어지는 경우의 규정
7. 각 경기별 시상에 관한 세부사항
8. 경기심사위원회의 이름, 경기위원장 및 주요 오피셜의 이름
9. 공인 단체의 표기

제4.10조 경기참가등록

경기참가자와 주최자의 계약은 본 규정과 대회특별규정에 따른 참가신청이 수리되는 것에 따라 성립된다. 이로 인하여 경기참가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경기에 참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제4.11조 참가에 관한 분쟁

경기참가자와 주최자간에 참가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본 규정 '항소권' 규정에 따라 그 재정을 KARA에 신청하고 KARA는 이를 조정한다.

제4.12조 참가신청의 개시

주최자는 경기의 공인을 받은 후 참가자격이 있는 참가자에게 참가접수를 받을 수 있다. 참가신청자는 참가신청서에 기입사항을 기재, 서명하고 참가비와 함께 마감 전까지 주최자에게 제출한다.

제4.13조 참가신청서의 내용

참가신청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본 규정 '공식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조문'에 규정한 사항. (제3.4조 참고)
2. 선수, 경기참가팀, 경기 참가자의 이름과 KARA 라이선스 번호
3. 참가신청은 참가자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으나 서명은 반드시 선수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
4. 팀, 선수, 경기탑승자 및 피트에 근무하는 팀 관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당사자의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5. 본 규정 중 다음 조항 (경기참가자, 선수, 경기탑승자 및 피트요원의 계약문의 서명)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 및 서명은 신청서와 별도 용지에 하여도 된다.
6. 대회특별규정에 따라 규정된 그 밖의 신청서 기입사항

제4.14조 경기참가팀, 선수, 경기탑승자 및 마샬, 오피셜의 참가서약

1. 경기참가팀 관계자, 선수, 경기탑승자 및 마샬, 오피셜은 경기참가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약을 한다.

   "나는 이 대회의 대회특별규정과 국제스포츠규정, 국내스포츠규정에 동의합니다. 나는 경기 참가에 따라 관련되어 일어난 사망, 부상, 그 밖의 사고에 대해서 절대로 KARA나 주최자, 조직위, 오피셜에게 경기에 관한 비난, 책임추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 사고가 상기 주최 단체와 대회 관계자의 실수가 원인이 되었더라도 변함 없습니다. 또 선수의 참가종목에 관한 표준능력을 가지고 참가차량도 코스와 스피드에 관해 적격하고 경기가 가능한 것을 맹세합니다."

2. 이에 붙여 선수는 다음 양식의 서약문에 서명하여야 한다.

   "나는 이 경기에서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을 주는 신체적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KARA와 대회주최자에 알리고, 신체장애자에 대한 라이선스를 교부 받지 않는 한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전항 1,2에 규정한 서약문서에 18세 미만의 참가신청자의 경우 당사자의 부모와 법정 대리인이 신청서 및 별도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15조 참가신청의 마감

참가접수 마감의 기한은 대회 특별규정을 따른다. 대회주최자는 참가 신청 접수를 받을 때 KARA선수 라이선스 취득자에 한해 참가 접수를 받아야 한다.

제4.16조 기타 통신 수단에 의한 참가신청

참가 등록의 신청은 우편, 팩시밀리, 이메일 그 밖의 통신 수단에 의해 행할 수 있다. 단 신청 접수 마감시간 이전에 발송되어야 한다. 참가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참가비가 첨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해당 통신 수단에 기재된 발신 시간을 가지고 접수 날짜의 증거로 한다.

제4.17조 허위 또는 부정기입의 참가신청

허위 또는 부정기입을 한 참가신청은 무효이고 그 경우 신청자는 본 규정 위반으로 되어 참가비를 몰수당한다.

제4.18조 참가신청 거부

대회주최자는 참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늦어도 경기 개최 5일 이전까지 거부의 이유를 밝힌 뒤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거부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이의 신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본 규정으로 인하여 참가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참가비는 반환된다.

제4.19조 참가신청 조건부 승인

대회특별규정으로 조건부 참가가 가능한 취지를 규정할 수 있다. 그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참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0조 참가신청서의 접수 통지

대회주최자는 참가신청서를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접수를 승인하고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정원을 넘는 신청이 있을 경우 대회특별규정으로 규정하는 법을 택하되 대회특별규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면 선착순으로 다른 방법을 주최자가 정할 수 있다.

제4.21조 참가접수 명단의 공포

대회주최자는 공식 참가접수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경기참가팀, 선수의 이름을 공식 프로그램에 넣어 공포하면 안 된다. 더구나 조건부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 그 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참가접수 명단의 발표는 참가 신청 마감일 후에 빠른 시일 내에 하여야 한다.

제4.22조 드라이버의 가명 사용

1. 라이선스를 가명으로 등록하려면 KARA에 특별신청을 해야 한다.
2. 라이선스는 가명으로 발급될 수 있으나, 한 사람이 두 개의 가명을 사용할 수 없다.
3. 이 경우 승인되었다면 라이선스는 그 가명으로 발급된다.
4. 가명으로 등록된 라이선스 보유자는 모든 경기에서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참가해서는 안 된다.
5. 가명을 바꾸려면 원래의 이름을 바꿀 때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6. 가명으로 등록된 사람은 본명 또는 다른 가명으로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을 때까지 변경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제4.23조 조건부 참가 승인

참가자가 본 규정 제4.19조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선정이 있을 경우 주최자의 동의를 얻어 조건부 참가접수가 인정된다.

제4.24조 동일 차량의 중복 참가

한대의 차량으로 하나의 경기에 한번만 참가신청이 허용되나 KARA가 본 규정의 특례

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복출장이 가능하다. 단, 챔피언십 경기는 동일 선수로 운전하면 안 된다.

제4.25조 자동차의 교환

참가신청서의 기입사항과 상이한 출전차량이 있는 경우 공식 프로그램이 발표된 후에도 경기심사위원회의 대회특별규정으로 규정하는 규격에 일치하면 동일 부분, 동일 클래스의 다른 자동차로 교환이 허용된다.

제4.26조 공식 통지

특별규정의 발표 후에 일어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주최자와 경기참가자, 선수에 대해 공식 통지로 지시할 수 있다.

제4.27조 보험

대회주최자는 대회주최자 등록 규정에 근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KARA는 대회주최자에 대하여 보험증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28조 경기참가자 및 선수의 공식 명단

대회주최자는 경기 참여가 승인된 참가자의 공식 명단을 늦어도 경기 시작 48시간 전까지 KARA에 보내고 각 경기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참가 신청이 이 시간 이후에 마감되는 경우는 예외로, 최소한 공식 검차와 선수 브리핑 직후 최종 엔트리 명단을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4.29조 성적 발표

대회주최자는 KARA와 각 경기참가자에 대해 경기가 종료되고 5일 이내 또는 KARA가 지시한 기한 내에 경기의 최종성적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4.30조 상금 등의 수여

대회주최자는 대회특별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경기의 최종성적 판명 후 3주일

이내 또는 KARA가 지시한 기한까지 모든 상금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 경기 코스-도로 및 서킷

제5.1조 공공도로상의 경기코스

경기에 사용되는 도로의 선정은 KARA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경기코스의 승인신청은 주행로와 거리를 정확히 표기한 코스도를 첨부하여 KAR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일반도로상의 주행거리 측정

기록챌린지 이외의 경기 사용코스는 그 거리가 5km 이내의 경우 공인측량사가 도로중앙선을 계측하여야 한다. 5km 이상은 5만분의 1 이상의 국토교통부가 인증하거나 판매하는 지도를 통하여 정한다.

제5.3조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제 라이선스

상설,임시 서킷 또는 코스의 국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KARA를 통하여 FIA에 신청하여야 한다. FIA는 KARA와 협의하여 부적당한 경우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FIA는 거부나 취소 시 그 이유를 알려준다.

제5.4조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

KARA가 부적당하다고 판정할 경우 이유를 밝히고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5조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의 기재문

FIA에서 발급되는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에는 주행거리, 허가되는 경기 차량의 카테고리, 서킷 또는 코스가 국제 또는 세계기록 챌린지에 사용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명기한다.

KARA허가의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에는 주행거리와 국내기록 챌린지에 사용되는 것인가를 기재한다. 또한 서킷 또는 코스에 관한 대회특별규정도 기재되어 경기 참가자가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6조 상설/임시 서킷 또는 코스의 조건

상설/임시 서킷 또는 코스의 충족조건은 FIA나 KARA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5.7조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의 공시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는 그 유효기간 중 서킷 또는 코스의 일정 장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5.8조 서킷 또는 코스 라이선스비

FIA나 KARA가 발급하는 서킷 또는 코스 공인에 대한 라이선스비는 FIA나 KARA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스타트 및 히트

제6.1조 스타트

1. 스타트란 단독 또는 동시에 출발하는 다수의 경기참가자에게 출발의 신호가 주어진 순간을 말한다. 시간 측정을 할 때에는 스타트와 함께 시작한다. 스타트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① 롤링 스타트
   ② 스탠딩 스타트
2. 선수는 스타트의 신호가 난 순간에 출발하는 것으로 본다. 어느 경우도 스타트의 신호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3. 기록챌린지 이외의 경기는 그 스타트의 종류를 반드시 대회특별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6.2조 스타트라인

1. 기록챌린지와 롤링스타트에 의한 경기의 스타트라인은 차량이 통과함에 의하여 시간 측정이 개시되는 기준선을 말한다.
2. 스탠딩스타트에 의한 경기의 스타트라인은 차량(또는 필요시 각 선수)이 출발 전에 지시 받은 정위치해야 하는 기준선을 말한다.

3. 대회특별규정에는 스타트 전의 모든 차량의 위치와 그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6.3조 롤링 스타트

롤링 스타트란 시간 측정이 개시된 순간에서 차량이 이미 주행상태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 롤링 스타트는 스타트신호가 나오기 전에 세이프티카에 의해 유도되어 진다. 별도의 대회특별규정이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이 때 유도차를 제외한 선두의 차량이 스타트라인을 지나는 순간 또는 별도의 신호가 제시되는 시점에 스타트가 성립된다.

제6.4조 스탠딩스타트

스탠딩스타트란 스타트 신호가 나는 순간에서 차량이 정지의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스탠딩스타트에 의한 기록은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스타트라인을 통과하는 순간에 계측장치를 작동시키게 되는 차량의 부분이 그 스타트라인보다 10cm 후방에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그 차량의 엔진은 스타트에 앞서 시동시킨 것으로 한다.
2. 스탠팅스타트에 의한 경기는 스타트에 앞서 엔진의 시동과 정지에 관한 사항을 대회특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독 스타트 또는 동시 스타트의 차량에 대하여:
   - 자동계측장치에 의하여 시간 측정이 행하여질 경우 그 차량(들)은 스탠딩스타트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차량의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자동계측장치에 의해 시간 측정이 행하여지지 않거나 시계에 의한 시간 측정이 행하여 지는 경우 그 차량(들)은 프런트 휠 스타트 라인 위에 있는 위치로 차량의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스타트라인 위치에 관계없이 대회특별규정으로 각 경기참가자의 스타트 위치를 규정한 경우라도 시간 측정은 스타트의 신호가 난 순간에 시작된다. 이 때 서킷의 경우 각 경기참가자의 스타트 위치에 관계 없이 1랩째부터 각 차량이 계측라인을 지날 때 계측을 한다.
5. 스타팅 그리드의 최종발표가 있은 후에는 스타트 불가한 차량의 그리드는 비워둔 채로 두고 그 외의 경기 참가차량에게 공표된 그리드의 위치는 변경할 수 없다.

제6.5조 스타터(Starter)의 명령

선수와 출전차량은 스타트 깃발이 올려지거나 내려질 때 스타트 할 수 있다. 스타트 깃발이 올려지고 내려짐은 다른 적당한 신호를 동반하여도 되고 신호등으로도 가능하다.

제6.6조 반칙 스타트에 대한 벌칙

스타트 신호 이전에 제위치에서 전진한 경우 부정출발이 된다. 부정출발을 한 운전자는 어느 경우든 그 사람이 그 경기코스를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에 대하여 벌칙이 가산된다. 그 벌칙은 곧바로 그 선수의 피트에 통보되어야 한다.

대회특별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본 규정에 정하여져 있는 범위 내에서 앞서 밝힌 벌칙을 가중하거나 다른 벌칙을 추가할 수 있다.

제6.7조 스타트 오피셜

조직위원회는 스타트를 감시하기 위하여 한사람 또는 몇 명의 오피셜을 지명할 수 있다. 스타트 오피셜은 반칙 스타트를 확인했을 경우 즉시 그 경기위원장에 보고한다.

제6.8조 히트

하나의 경기에서 복수의 히트제 스타트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그 구성은 조직위원회가 결정하며 사전에 대회특별규정, 공식 프로그램에 발표하여야 한다. 히트제 스타트의 구성은 필요한 경우에 심사위원회만이 변경할 수 있다.

제6.9조 동률

동률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경기 참가자들은 순위 결과에서 이들이 기록한 순위에 걸려 있는 상금 및 그에 따른 상을 나눠가지거나, 이들 경기 참가자들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관련 경기 참가자들만으로 제한된 추가 경기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처음의 경기를 다시 치를 수는 없다.

제7조 기록

제7.1조 판정 관할권

KARA는 한국 국내에서 수립된 기록의 공인신청에 대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한다. 국제기록이나 세계기록의 공인신청은 KARA에 의하여 FIA에 제출되고 그 판정은 FIA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7.2조 기록수립의 자격을 갖는 차량

각각의 국제기록은 본 규정 제9조의 정의에 적합한 차량에 의하여서만 수립이 가능하다.

제7.3조 공인기록

공인기록이란 지역기록, 국내기록, 클래스별 기록, 세계기록만을 말한다. 한 개의 같은 기록은 상기 구분된 분류에 의하여 여러 종류로 공인 받을 수 있다. 서킷에서 수립된 기록과 도로에서 수립된 기록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

제7.4조 클래스별로 제한된 기록

그 클래스에서 기록을 수립하거나 갱신한 차량은 동일 클래스에 해당하는 세계기록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나 상위의 클래스에서 기록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7.5조 공인기록 및 거리

국내기록, 국제 클래스별 기록, 세계기록은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D항에 실린 기록과 거리에 의해 공인 받을 수 있다. KARA는 자체적으로 국내 기록을 공인할 수 있다.

제7.6조 레이스 중에 수립된 기록

레이스 중에 수립되지 않은 기록은 어떠한 것도 공인하지 않는다.

제7.7조 기록의 등록

KARA는 국내에서 수립되거나 갱신된 기록의 등록을 공지하고, 또한 요구에 따라 국내기록의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KARA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7.8조 기록의 발표

공인되기 전까지 '공인 승인 중'이라고 명기하지 않는 한 관계자는 어떠한 상업적 광고로 사용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제8조 경기참가자와 선수

제8.1조 경기참가팀 및 선수의 등록

공인 경기에 참가하는 팀과 선수는 KARA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한다.

제8.2조 라이선스의 발급

KARA는 FIA 국제 라이선스 자격증을 발급하는 권한을 가지며, 일정한 양식에 의한 국내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제8.3조 라이선스 발급 권한

라이선스는 KARA가 별도로 정하는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다.

제8.4조 임시 경기참가 허가 조건

KARA외 타 ASN 발급 선수 라이선스를 소유한 자가 국내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KARA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의해 참가할 수 있다.

제8.5조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의 국적

KARA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모든 경기 참가팀 또는 선수는 라이선스 유효기간 동안에는 한국 선수로 준한다.

제8.6조 라이선스의 발급거부

KARA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라이선스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8.7조 라이선스의 유효기한

국내 개인 라이선스(선수, 오피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기타 단체 라이선스와 FIA 국제 라이선스는 매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8.8조 라이선스의 수수료

KARA가 발급하는 라이선스의 수수료는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8.9조 라이선스의 효력

1. KARA에 의하여 발행된 국제 선수 라이선스나 국내 선수 라이선스 소지자는 KARA 공인 경기와 국제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단, 대회특별규정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선수 라이선스의 소지자가 그 유효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자격(운전면허증)을 상실했을 때에는 라이선스는 무효가 되고 곧바로 KARA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10조 라이선스의 취소

금지된 경기, 비공인경기에 참가, 운전, 직무 수행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가한 자는 KARA에 의해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제8.11조 선수의 변경

1. 참가신청이 마감되기 전 선수 교체를 원하는 팀은 대회특별규정에 금지 조항이 없다면 가능하다.
2. 참가신청이 마감된 후 선수 교체를 원하는 팀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직위원회는 선수 교체 및 추가 선수 명단을 KARA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12조 경기참가자, 선수, 그 외 관계자의 책임

경기참가팀은 지명한 선수, 탑승자, 팀 관계자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국제스포츠 규정, 본 규정, 경기 대회특별규정, 공식통지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경기참가자와 팀은 대회에서 얻은 정보를 대회의 명예훼손이나 비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별도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제8.13조 참가 변경 금지

국제경기나 국내경기에 참가를 등록한 경기참가자나 선수가 그 경기에 참가하지 않고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개최된 다른 경기에 참가한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개최일로부터 KARA가 정하는 기간동안 자격정지가 적용된다.

단, 그 경기가 외국에서 개최됐을 경우는 KARA와 해당 ASN사이에 있어 벌칙에 대해 합의가 성립되어야 한다. 양 ASN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그 문제는 FIA에 제소하는 것으로 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9조 자동차

제9.1조 자동차의 분류

KARA는 기록챌린지의 경우를 제외한 국내경기에 참가하는 자동차를 국내경기 차량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9.2조 위험한 차량

국내경기에 출장하는 자동차는 구조와 주행적성, 장치에서 국내경기 차량규정에 따라야 한다. 경기심사위원회는 자동차의 구조나 상태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경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9.3조 방화벽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자동차는 화재발생시 화재가 직접 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엔진과 운전자 사이에 유효한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4조 자동차의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

1. 특정한 자동차의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

KARA 또는 FIA는 경기 참가자, 선수,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본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특정한 자동차를 출장 정지,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을 할 수 있다.

2. 자동차모델의 출장 정지와 자격 상실

   KARA는 경기 참가자, 선수,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본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특정한 자동차 모델을 출장 정지,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을 할 수 있다. 국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스포츠규정을 따른다.

제9.5조 차량 의무 검사 규정

1. 모든 참가 차량은 공식 연습 시작 전까지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 받아야 한다. 차량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2. 심사위원회와 기술위원장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3. 경기 중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 경기장에서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외부에서 수리할 수 있으며 수리 완료 후 재검사를 통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4.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페널티가 부여되며 실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제9.6조 차량에 붙이는 광고

KARA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적용하는 특별조건을 규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9.7조 허위 광고

경기참가자나 단체가 경기나 기록의 광고를 할 경우는 발표된 성적의 일반조건과 특별조건, 경기와 기록의 성질, 차량의 분류, 클래스 구분, 취득한 성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중에게 이의를 갖게 하는 성질이나 과대광고는 그 광고의 해당 경기참가자나 단체에 대하여 본 규정 제11조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 오피셜

제10.1조 오피셜의 구성

KARA의 심판원 라이선스를 소지한자가 오피셜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팀 관계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는 소속 팀이 참가하는 대회에 오피셜로 참가할 수 없다.

다음은 오피셜의 종류이며, 각각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각 위원장은 보조요원의 배치, 임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최대한 돕는다.

- 심사위원 (the stewards)
- 경기위원장 (the clerk of Course)
- 레이스 디렉터 (the race director)
- 사무국장 및 요원 (the secretary of the Event)
- 기록위원장 및 요원 (timekeepers)
- 기술위원장 및 요원 (scrutineers)
- 피트위원장 및 요원 (pit marshals)
- 패독위원장 및 요원 (paddock marshals)
- 코스위원장 및 요원 (track or road marshals)
- 안전위원장 및 요원 (emergency coordinator)
- 의료위원장 및 구급대원 (medical)
- 사실판단관 (judge of fact)

제10.2조 감독권

KARA는 국제스포츠규정 및 본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공인대회를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1. KARA는 대회에 1명 이상의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안전한 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의 안전시설(트랙노면 및 주변 안전시설, 레이스 콘트롤, 피트, 검차장, 의료장비 등)을 검수 할 수 있다.

2) 오피셜 인원 및 안전차량의 배치 등 경기운영 관련 안전사항을 검수할 수 있다.
3) 경기장 시설 및 대회운영을 감독하며, 문제 발생시 경기장과 대회주최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와 개선을 요청을 할 수 있다.
4) 대회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장소의 출입이 가능하다. 단 심의중인 심사위원실과 레이스 중의 레이스컨트롤 등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5) 대회운영에서 발생하는 대회 결과, 기록지, 보고서 등 대회 관련 자료를 보고 받을 권한이 있으며, 각 세션(드라이버 브리핑 등)의 종료 또는 공식기록(연습, 예선, 결승 등) 발표 후 사무국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6) 대회 심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7) 감독관은 경기장 안전시설 및 대회운영의 미비점과 개선 내용을 협회에 보고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2. 감독관의 임무

1) FIA의 ISC 규정과 KARA의 국내규정 및 파견대회의 대회특별규정(스포츠규정/기술규정)을 숙지하여야 하고 각 라운드에 적용된 대회특별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경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 전 경기장 측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수하여야 한다.
- 레이스 컨트롤 및 CCTV 관리 상태, 무전기 상태, 메디컬 센터 관리 상태
- 서킷 인스펙션 항목
: 스타트 아치 및 신호등 작동 유무
: 트랙, 피트로드, 피트 입·출구, 그리드 등 라인 마킹 상태
: 피트 입·출구 속도 표지판 상태
: 피트 내 소화기 관리 상태
: 서킷 상태(주행 라인, 트랙 노면, 연석), 안전지대, 잔디 관리
: 가드레일, 타이어 베리어, 테크프로, 안전펜스 관리 상태
: 서킷 내의 광고, 홍보물, 현수막 설치 상태
: 서킷 내의 소화기 관리 상태
: 각 포스트 상태 및 일련번호 관리

3. 감독관은 KARA에 경기 중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 경기임원의 조직구성

1. 최소 필요 임원

   경기는 심사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경기위원장, 코스, 안전, 기술, 피트, 기록 등으로 구성된 경기위원회와 대회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장 등으로 경기 임원을 구성한다.

2. 레이스 디렉터

   각각의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에서 경기 전 기간 동안 레이스 디렉터를 임명할 수 있다. 레이스 디렉터를 임명할 경우에는 해당 레이스 디렉터의 의무와 권한을 관련 대회특별규정 중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4조 KARA의 심사 파견 및 승인

KARA는 KARA가 주최하는 경기나 공인을 부여한 경기에 대하여 적어도 1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임명, 파견하는 것으로 한다. 다른 오피셜들은 KARA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최자가 임명할 수 있다.

제10.5조 이익의 충돌

심사위원, 레이스 디렉터, 경기위원장, 기술오피셜 그리고 사무국장은 경기 결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받는 거래, 상업적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0.6조 겸직

조직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심사위원을 제외한 동일자가 본 규정 제10.1조에 명시된 임무의 여러 종류에 대하여 겸임 할 수 있다.

제10.7조 금지된 임무

어떠한 임원도 하나의 경기에서 임명받은 것 이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또 어떠한 오피셜도 자기가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외의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10.8조 오피셜의 보수

심사위원은 명예직으로 활동해야 하며, 그외 오피셜들은 KARA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10.9조 심사위원회의 책임

1. 심사위원은 경기의 조직이나 경기 주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갖지 않으며, 주최와 연관된 어떠한 운영 임무도 수행해서는 안된다.
2. KARA가 직접 주최하는 경기의 경우는 심사위원이 주최자의 임무를 겸임하여도 된다.
3. 국제 및 국내자동차경기 규정집과 대회특별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4. 공식 스케쥴과 참가 엔트리를 확인하고 드라이버 브리핑에 참석해야 하며, 선수들의 메디컬 체크 여부와 이전 경기에서의 페널티, 특이사항 등을 점검한다.
5. 공식 스케쥴 시작 전 트랙의 상태와 의사, 앰블런스, 소화기 등의 배치 여부와 안전대책을 점검하며, 적정 인원의 오피셜과 구난 차량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킷 인스펙션을 실시한다.
6. 상기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경기위원장에게 공식 스케쥴의 시작을 지시한다.
7. 심사위원은 공식연습, 공식예선, 결승레이스가 개최될 때 항상 심사위원실에 있어야 하며, 경기위원장 또는 레이스 디렉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8. 심사위원회는 대회 종료 후 최종보고서에 서명하여 KARA에 송부한다. 이 보고서에는 각각의 경기의 성적결과 및 제출된 모든 항의 또는 선고한 출장 정지(실격)의 상세한 보고가 포함되고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이 부과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9. 심사위원회는 참가 선수, 오피셜의 KARA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2개 이상의 경기가 행하여지는 대회의 경우에는 경기마다 다른 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11. 심사위원장은 대회를 계획하고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투표에 있어서 동수가 되었을 경우 재결정권을 가진다.

제10.10조 심사위원의 권한

1. 심사위원회는 국제스포츠규정, 본 규정, 대회특별규정, 공식 프로그램의 시행에 최

고의 권한을 갖는다.

2. 경기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 결정을 내리며, 이런 결정은 항소의 대상이 된다.
3. 대회특별규정 위반의 경우 적용하는 벌칙을 결정한다.
4. 대회특별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5. 히트 경기의 경우 그 구성이나 경기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6. 동률의 경우 재스타트(new start)를 허가할 수 있다.
7. 선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8. 오피셜이 제출한 판정의 정정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9.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 제외 또는 실격처리를 할 수 있다.
11. 순위 변경을 할 수 있다.
12.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차량이나 선수는 경기 참가를 금지시킬 수 있다.
13. 참가할 자격이 없거나 부당, 부정 행위를 한 경기참가팀이나 선수를 한 경기 이상 제외시킬 수 있다.
14. 임무 수행중인 오피셜의 지시를 거부한 경기참가팀이나 선수를 코스 또는 일정구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나 국가보안상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16. 경기참가자와 대중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위원장이나 주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스타트라인, 결승선의 위치, 그 외의 모든 문제를 공식 프로그램에 변경을 지시 할 수 있다.
17. 레이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
18. 최종 순위와 결과를 발표 할 수 있다.
19. 기술 검차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0. 특별한 경우 대리의 심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21. 심사위원은 우선적으로 경기 결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받는 거래, 산업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심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으로 공인대회의 위상 및 심사위원회의 품위를 훼손 할 경우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제10.11조 경기심사위원회의 보고에 기준한 KARA의 권한

KARA는 경기심사위원회의 경기 결과에 대한 보고가 공정하고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항의나 항소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상황 및 관계자를 조사하여 시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10.12조 레이스 디렉터의 임무

1. 레이스 디렉터는 각 챔피언십, 컵,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전체 기간 동안에 걸쳐서 임명될 수 있다.
2. 레이스 디렉터가 임명될 경우 그 임무와 책임이 아래에 제시된 것과 다를 경우 대회 특별 규정에 명시한다.
3. 레이스 디렉터는 항상 경기위원장과 협의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4. 레이스 디렉터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며 경기위원장은 레이스 디렉터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5. 일정표를 준수하는 연습주행과 예선의 통제, 그리고 레이스 디렉터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면 국제스포츠규정과 대회특별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제청하여 일정표를 변경할 수 있다.
6.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때, 연습주행 또는 레이스의 중단, 이후 재시작 절차에 대한 진행 (사전에 심사위원회와 협의되어 있어야 하며 대회특별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7. 스타트의 진행
8. 세이프티 카의 사용

제10.13조 경기위원장의 임무

1. 경기위원장은 경기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있고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2. 여러 개의 경기를 포함하는 경우 각 경기마다 별개의 경기위원장을 둘 수 있다.
3. 경기위원장은 공식 프로그램에 따라 경기의 운영 책임을 진다.
4. 치안의 책임을 갖고 특히 공공안전을 위해 파견된 행정당국과 연락하여 경기장내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
5. 모든 오피셜이 각자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재자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6. 모든 오피셜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도록 한다.
7. 참가의 자격을 갖지 않는 경기참가팀 또는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8. 각각의 자동차가 프로그램에 명시된 식별번호를 부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9. 지명 받은 선수가 해당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자동차를 종목과 클래스에 따라 통제한다.
10. 자동차를 정해진 순서대로 스타트라인에 정렬하여 출발시킨다.
11.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프로그램 변경 제안과 경기참가자의 부정행위, 규정위반, 경기참가자의 이의신청의 제안을 행한다.
12.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경기심사위원회에 전달한다.
13. 기록위원, 기술위원, 코스위원의 보고서와 순위의 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14. 담당한 경기에 관하여 최종보고서의 기초자료를 작성하거나 경기 사무국장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경기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제10.14조 경기 사무국장의 임무

1. 경기 사무국장은 경기의 조직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오피셜을 모집하고 경기위원장과 협의하여 배치한다. 또한 오피셜에게 필요한 정보와 장비, 물자등의 제공을 담당한다.
3. 모든 오피셜이 각각의 임무에 정통하고 필요한 부대적 자료를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사무국장은 각 경기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때 경기위원장을 보좌하여야 하며 각 보고서에 정확한 서명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5. 참가 엔트리 및 모든 대회의 문서를 관리하며 대회결과를 게시하고 발표한다.
6. 경기 스케쥴을 작성하고 배포한다.
7. 시상식의 진행을 담당한다.
8. 경기에서 발생하는 벌금을 납부 받고, 벌금과 벌금내역을 5일 이내에 협회 사무국으로 전달한다.

제10.15조 기록위원장의 임무

기록위원장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의 개시와 함께 경기위원장의 필요한 지시를 부여 받는다.
2. 경기위원장에게 지시 받은 경우 스타트의 신호를 한다.
3. 계측은 KARA에 의하여 승인된 계측장치만을 사용하고 1000분의 1초까지의 계시를 필요로 한다.
4. 각 차량이 코스를 완주하여 얻은 기록을 확정한다.
5. 자기의 책임하에 기록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다른 모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경기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단, 기록챌린지 내지 테스트의 경우는 KARA에 제출한다.)
6. 기록위원장은 심사위원이나 KARA의 요구가 있으면 계측 기록 서류의 원본을 제출한다.
7. 심사위원과 경기위원장의 지시가 없는 한 심사위원과 경기위원장 이외의 사람에게 공식기록이나 성적을 통보하지 않는다.

제10.16조 기술위원장의 임무

기술위원장은 자동차의 기계장치에 관한 모든 검차를 담당한다. 기술위원장은 경기위원장과 함께 자동차의 중량과 차체, 부속품의 치수, 차량의 규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 안전장비, 경기참가팀, 선수의 서류(선수증, 운전면허증, 보험에 관한 서류 등)에 관한 모든 점검

을 담당한다.

1. KARA나 경기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경기 개시 전, 경기 개최 중, 종료 후 그 검사를 실시한다.
2. KARA에서 지정 또는 승인한 검차 장비를 사용한다.
3. 검차의 공식결과를 KARA, 조직위원회, 심사위원회, 경기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4. 기술위원장은 그 책임하에 검차보고서를 작성, 서명하여 3항에 명시된 자에게 제출한다.

제10.17조 피트위원장의 임무

1. 피트 위원은 경기 진행 중에 있어서 경기참가팀과 선수가 행하는 자동차의 관리 및 수리에 관한 모든 작업을 감독하고, 규정 및 대회특별규정의 해당 항목을 준수하게 하는 임무를 가진다.
2. 피트 위원장은 경기위원장의 지휘 하에 경기참가팀 또는 선수가 행한 모든 위반 행위를 즉시 경기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피트 위원장은 각 경기의 종료 후 주어진 지시에 따라 경기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보고서를 통하여 임무에 관한 보고를 행하여야 한다.

제10.18조 코스위원장과 트랙 마샬(코스요원)의 임무

1. 코스요원은 경기심사위원회 및 조직위원회에 의하여 정해진 코스상의 포스트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코스요원은 경기 개시 후 경기위원장의 지휘하에 각자의 포스트가 관찰하는 구역에 생기는 모든 정보를 무전, 보고서 등을 이용해서 곧바로 경기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코스요원은 코스 상에 깃발을 이용한 신호를 담당할 수 있다.
4. 각 경기 종료 후 코스요원은 자기가 확인한 사고에 대하여 문서로 코스위원장을 통해 경기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코스위원장은 트랙 마샬의 배치, 근무 환경, 무전에 대한 전체적 관리를 한다.

제10.19조 안전위원장의 임무

1. 안전위원장은 구난, 소방, 의료 팀에 대한 전체 책임과 총괄을 맡는다. 이는 각 팀의 조직, 장비 편성, 배치를 포함하며, 경기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각 대응 팀을 운영한다.
2. 경찰 및 소방 당국, 지정 병원을 비롯한 유관 협조 기관 관리 및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제10.20조 특별 오피셜의 지정

경기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병원, 소방서, 서킷에서 파견한 인력이나 선수 출신으로서 참가자의 주행에 관해 조언하는 인력(Driving Standard Adviser)을 특별 오피셜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 오피셜은 레이스 디렉터 또는 경기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21조 사실 판단관

경기 중에 선수가 주행 라인을 밟았거나 넘었는지를 확인하고, 대회특별규정 또는 특별규칙에 의해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판단하는 사실 판단관을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사실 판단관은 심사위원회의 지명하에 트랙 오피셜 또는 그리드 오피셜 또는 스타트/피니시 라인 오피셜을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지명될 수 있다.

제11조 벌칙

제11.1조 규정위반

본 규정에 명시된 모든 반칙과 함께 다음 행위도 본 규정의 위반이 된다.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1. 경기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거나 받은 행위 및 이와 관련된 미수 행위
2. 해당 경기에 참가자격이 없는 선수이거나 부적당한 차량으로 경기에 참가한 행위

3. 경기나 모터스포츠 일반에 관련한 부정행위

4. KARA나 모터스포츠 일반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제11.2조 벌칙

1. 주최자, 경기참가팀, 선수, 탑승자, 미캐닉, 팀 관계자, 오피셜 그 외의 라이선스를 소지한 누구라도 본 규정과 부칙, 경기 특별규정과 고시, 경기 공인 등을 위반할 때에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

2. 벌칙은 경기심사위원회 및 KARA의 상벌위원회에 의해 제11.3조에 의거하여 부과될 수 있다.

3. 심사 위원회의 결정이 안전 혹은 경기참가팀과 선수의 부정참가에 관한 경우 또는 동일경기 가팀과 선수가 동일 경기 중에 추가 위반함에 의해 실격 처분이 처해져야 할 경우에는 즉시 제외시킬 수 있다.

4. 단, 경기참가팀과 선수가 상기 이외의 결정에 대해서 항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구제조치로서 제재의 적용은 일시적으로 유보한다. 특히, 해당 경기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한 이후의 경기 참가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핸디 캡 규정의 적용 결정은 유보된다.

5. 항소에 대한 유예효과는 그 경기참가팀과 선수가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않으며 공식 순위에도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6. 항소 대상이 될 수 없는 페널티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스톱 앤 고(stop and go) 페널티 등 스포츠 규정에 명시된 페널티는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7. 세계 도핑 방지 운동 추진으로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A에 정하는 FIA 안티 도핑 규정 내에서 관련된 벌칙을 적용한다.

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48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의거 「금지목록」을 개정·고시한다.

제11.3조 벌칙의 종류

1. 경고
2. 벌금
3. 공익 업무 수행 의무
4. 기록 삭제
5. 그리드 순위 강등
6. 강제적 피트 스타트 (start a race from the pit lane)
7. 타임 페널티 (time penalty or penalty lap)
8.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drive-through penalty)
9. 스톱 앤 고 (stop and go)
10. 제외 및 실격
11. 출장정지
12. 자격상실

심사위원회나 KARA가 지정한 인원 및 단체는 조사를 진행하고 벌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외 및 실격, 출장정지,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를 소환해서 변론의 기회를 준다.

제11.4조 벌금

벌금은 국제스포츠규정, 본 규정 및 대회특별규정을 위반하거나 경기위원회의 명령이 없이 행동한 경기 참가팀, 선수, 탑승자 또는 팀 관계자에게 KARA 상벌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11.5조 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

국제스포츠규정이나 FIA의 공식 공고에 의해 새롭게 통지 될 때까지 최고 벌금액은 250,000 유로로 한다.

제11.6조 벌금의 납부 책임

경기참가팀은 KARA, 경기심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 선수, 탑승자, 팀 관계자 등에게 부과되는 벌금 납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11.7조 벌금의 지불기한

1. 벌금은 통보를 받은 지 5일 이내에 대회사무국을 통해 KARA에 지불하여야 한다.
2. 지불이 늦어지는 경우는 벌금미납 기간 중 출장 정지 처분이 따른다.
3. 벌금은 KARA에 의해 모터스포츠 발전에 사용한다.

제11.8조 제외 및 실격 (Exclusion)

1. 제외 및 실격의 선고는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 제외는 그 대상이 된 자가 1경기 이상 참가가 금지되는 것이다.

   2) 실격은 그 대상이 된 자가 참가한 1경기 이상의 결과가 취소되는 것이다.
2. 제외 및 실격을 받으면 이미 지불되어 있는 참가비는 주최자에 몰수된다.

제11.9조 출장정지 (Suspension)

1. 출장정지는 중대한 반칙에 대하여 KARA와 FIA만 선고할 수 있다.
2. 출장정지는 그 대상이 된 자에 대하여 모든 경기에 참가하는 권리를(벌칙의 적용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KARA의 관할 영역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대상으로 국내적 경우와, FIA 총괄 아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대상으로 국제적 경우가 있다.
3. 출장정지가 내려지면 그 기간 동안 경기에 대하여 이미 참가 등록한 것은 무효가 되고 지불한 참가비는 주최자에 몰수된다.

제11.10조 라이선스의 회수

1. 국내출장정지 (National Suspension)

   국내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 참가자 또는 경기 운전자는 자신의 라이선스를

KARA에 반납하여야 한다. KARA는 국내출장정지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새로운 라이선스를 발급 및 발송한다.

2. 국제출장정지 (International Suspension)

국제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 참가자 또는 경기 운전자는 자신의 라이선스를 KARA에 반납하여야 한다. KARA는 국제출장정지 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는 해당 라이선스를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상기의 조항에 있어서 KARA에 대한 라이선스의 반납이 지연했을 때는 출장정지의 기간은 그 지연기간 동안 연장된다.

제11.11조 출장정지의 효력

KARA에 의해 선고된 출장정지 처분에 대해서 그 효력은 KARA의 관할 영역 내에 한정된다. 단, KARA가 그 벌칙을 국제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 KARA는 FIA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FIA는 그 취지를 다른 모든 ASN에 대하여 통지 한다. 각각의 ASN은 즉시 그 출장정지를 등록하며 이를 통하여 해당국 이외 에서의 출장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제11.12조 자격상실 (Disqualification)

자격상실은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자격상실은 지극히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KARA에 의해 선고될 수 있다. 자격상실의 처분은 그 결과로 이미 한 참가 등록은 무효가 되고 참가비는 몰수된다.

제11.13조 자격상실의 효력

자격상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적인 효력을 가진다. 자격상실은 모든 ASN에 통지된다.

제11.14조 FIA에 대한 벌칙처분의 통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정지 및 자격 상실의 처분은 FIA가 선고한 벌칙을 상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각 ASN에게 통보되며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기 ASN에서 FIA에 통보된 자격정지 또는 자격 상실에 대해서도 FIA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15조 자격상실 사유에 관한 통지

KARA는 자격상실의 대상자를 FIA에 그 처벌을 행한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제11.16조 자동차의 자격상실, 출장정지 또는 제외

특정자동차나 특정 모델의 자동차를 이용한 경기 참가는 금지 될 수 있다.

제11.17조 수상 권리의 상실

경기 출장정지, 자격상실, 제외 처분을 받은 경기참가팀 및 선수는 그 경기에서 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제11.18조 순위 및 상의 변경

제11.17조가 적용된 경우 심사위원회는 순위와 상에 관한 성적의 변경을 발표하고 다른 선수의 순위의 변동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11.19조 벌칙의 공표

FIA나 KARA는 개인, 팀, 자동차 등에 내려진 처벌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발표 또는 발표시킬 권한을 가진다. 처벌이 발표된 개인이나 단체는 FIA, KARA, 그 공시를 발표한 자에 대해 반대행동(소송)등을 취할 수 없다. 만약 반대행동을 취할 경우에는 회원 및 회원단체의 자격상실 사유가 되지만 항소권은 보장된다.

제11.20조 벌칙의 사면

KARA는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규정에 기준하여 부과한 자격상실처분의 기간을 경감, 자격 상실처분의 면제를 할 수 있다.

제12조 항의

제12.1조 항의권

1. 경기참가자가 주최자, 임원, 다른 경기참가자나 선수, 경기관계자의 결정, 행위, 과오에 의해 자신이 부당하게 처우됐다고 판단할 경우는 항의할 권리를 갖는다.
2. 임무 수행중인 오피셜은 항의가 제출된 경우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3. 두 명 이상의 복수의 경기 참가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관계된 경기참가자 전원에 대해 각각 항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 항의의 대상과 항의서 제출

12.2.1 항의의 대상

1.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
   -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
   - 코스의 길이
   - 핸디캡
   - 히트 또는 결승의 구성
   - 경기 중 발생하는 오류, 부정 또는 규정 위반
   - 경기 종료 후 순위

12.2.2 항의서 제출

경기에 관한 항의는 사무국을 통해 경기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경기위원장의 부재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된다.

1. 항의는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관련 규정
   - 항의 당사자와의 관련 내용
   - 항의 대상과 발생 시간, 장소

다수의 참가자들과 관계된 경우, 참가자 각각에게 별도의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한 드라이버가 다수의 차량들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 대하여 별도의 항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 항의 기한

항의	시간 제한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	차량의 사전 검차가 끝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전까지
코스의 길이	
핸디캡	경기 시작 1시간 전까지 또는 스포팅 규정 또는 대회특별규정에 정의된 규정 적용
히트 또는 결승의 구성	스포팅 규정 또는 대회특별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히트 또는 결승 구성 발표 후 30분 전까지
경기 중 발생하는 의심되는 오류나 부정, 경기 규정 위반	30분 이내에 항의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거나 예외적으로 스포팅 규정 또는 대회특별규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 결과 발표 후 30분 이내
차량규정위반에 대한 의심되는 항의	
경기 종료 후 확정된 결과	

제12.4조 항의의 심문

1. 항의자 및 항의 대상인 자의 심리는 그 항의의 제출 후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2. 당사자는 소환되어야 하며 증인을 동행시킬 수 있다.
3. 심사 위원회는 당사자 모두가 직접 소환을 받도록 해야 한다.
4.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이 결석한 경우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5. 당사자 대상 심리 후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는 추후 결정을 하며, 그 장소와 시간을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5조 접수할 수 없는 항의

1. 사실판단관(Judges of fact)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이 판단은 심사위원회에서 번복하지 않는 한 최종결정이지만, 해당 선수가 어떤 조건

에서 코스를 완주했는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정만으로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두 명 이상의 경기 참가자를 상대로 한 단일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여러 경기 참가자가 공동으로 제기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12.6조 포상과 시상의 발표

1. 항의 제기 대상이 된 경기 참가자가 획득한 포상은 그 항의에 대한 결정이 내려 질 때까지 보류한다.
2. 경기의 순위를 바꿀 수 있는 항의가 제기된 경우 주최자는 잠정 순위 결과로 시상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든 포상은 그 항의(항소를 포함하여)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보류한다.
3. 그러나 항의가 순위의 일부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에는 항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포상이 수여될 수 있다.

제12.7조 재경기

경기심사위원회, KARA는 재경기를 지시할 수 없다.

제12.8조 항의의 무효

1. 항의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 항의보증금은 몰수된다.
2. 항의가 부분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납부되어 있는 항의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며 항의가 완전히 인정을 받았을 경우 전액 반환될 수 있다.
3. 정당하지 않은 의도로 항의를 제출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본 규정에서 명시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 항소

제13.1조 권한의 범위

KARA는 국내 항소 제도를 마련하고 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경기참가자의 항소권을 보장한다.

제13.2조 국내 항소 기관

KARA는 KARA 회원 또는 비회원들로 항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상황에 따라 3인에서 5인(법적 자문단 제외)으로 구성된다. 다만, 해당 경기의 경기참여자, 선수, 오피셜과 연관이 있는 자거나 항소 안건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거나 연관 있는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13.3조 국내 항소 절차

1. 모든 경기 참가자는 그 국적에 관계 없이 심사위원회가 선고한 벌칙 또는 결정에 대하여, KARA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 발표 후 1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대회 사무국 또는 심사위원회에 항소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을 통보해야 하고 항소 보증금 일부(50만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항소의사는 이 시점부터 96시간 동안 유효하다. 항소 의사 통보 후 항소를 취하하였을 경우 미리 지불한 항소 보증금 일부(50만원)는 몰수된다.

2. 잔여 항소보증금(300만원)은 심사위원회가 항소할 뜻을 통보 받은 지 96시간 안에 지불되어야 한다. 의사를 전달하고 항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항소 보증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항소보증금은 매년 KARA가 별도로 정한다.

3. 항소가 기각되거나 제기된 뒤 철회되었다면, 항의 보증금은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4. 일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며, 항소가 인정되면 전체를 반환한다.

5. KARA는 최대 30일 이내에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3.4조 판결

1. 항소위원회는 벌칙 또는 다른 결정을 내리거나 이미 내린 벌칙의 경감, 가중을 결정할 수 있으나 경기를 다시 치르도록 할 권한은 없다.

2. 항소위원회의 판결은 명확하고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

제14조 규정의 시행

제14.1조 규정의 해석

KARA는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터스포츠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제14.2조 규정의 변경

KARA는 필요시 본 규정이나 동부칙의 변경을 이사회에 제안할 권한을 가진다.

제14.3조 그 외의 규정

그 외의 서술 되어 있지 않은 규정 내용은 국제스포츠규정과 그 부칙에 의거한다.

제14.4조 본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장
대회주최자 등록규정

제정	199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1월 1일
개정	1998년 1월 1일	개정	2011년 1월 1일
개정	1999년 1월 1일	개정	2012년 1월 1일
개정	2000년 1월 1일	개정	2013년 1월 1일
개정	2001년 1월 1일	개정	2014년 1월 1일
개정	2002년 1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03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2005년 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06년 1월 1일	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21년 1월 1일
개정	2009년 1월 1일		

제1조 대회주최자 등록

1.1 자동차경기를 개최하려고 하는 대회주최자는 국제자동차연맹(이하 FIA라 한다)의 국제스포츠규정과 그에 기초한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라 한다)의 국내스포츠규정 및 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KARA 에 등록하여야 한다.

1.2 등록은 본 규정 제3조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KARA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무국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본 규정의 각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무국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조 대회주최자의 분류와 대회 공인비

대회주최자는 대회주최자 A, 대회주최자 B, 대회주최자 C로 분류되고, KARA의 권한 부여에 의거하여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1 대회주최자 A는,

2.1.1 FIA Championship, International 또는 ASIA Zone 등급 이하의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2 대회주최자 B는,

2.2.1 컵, 트로피, 챌린지 등 2개 클래스 이상으로 구성된 국내 경기를 주최 할 수 있다.

2.2.2 대회주최자 B가 주최하는 경기는 선수 라이선스 B, C 소지자 만이 참가하는 경기로 한정 한다.

2.2.3 챔피언십 대회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고 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없다.

2.3 대회주최자 C는,

2.3.1 서킷 레이스 중 1개 클래스로만 이루어진 국내 경기를 주최할 수 있으며, 카트, 드리프트, 드래그, 짐카나 경기 등 단일 종목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3.2 복수의 클래스가 포함된 경기를 주최하고자 할 때에는 KARA 사무국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며, 모터스포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종목이어야 한다.

2.3.3 챔피언십 대회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고 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없다.

2.4 타 ASN에 의해 경기 시리즈가 승인된 국제대회의 한국 개최시 공인신청자는 필요한 서류와 보증금을 대회개최 9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대회 완료 후 반환되거나 경기 취소, 일자 및 장소 변경 등으로 FIA 및 KARA에 의한 페널티 발생시 일부 또는 전액 반환되지 않는다.
만약, 페널티 금액이 보증금 보다 많을 경우 추가적으로 페널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5 대회 주최자 등급별 개최 가능 대회

등급	해당대회
A	FIA Championship 또는 FIA Cup 대회, International 또는 Zone 대회, 국내 챔피언십 대회(서킷)
B	컵, 트로피, 챌린지 등 국내 대회
C	서킷 레이스 1개 클래스, 카트, 드리프트, 드래그, 짐카나 등 서킷 외 단일 종목 대회

2.5 대회공인의 신청시 대회공인비는 KARA가 별도로 정한다. 단, 대회 공인 취소에 대해 국가보안상 혹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이유를 제외하고 공인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3조 대회주최자의 신청자격

3.1 모터스포츠에 공헌하는 사업목적을 갖는 법인

3.2 공인대회를 주최하기 위해서는 KARA의 제반 규정에 정통해야 한다.

3.3 공인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당해 연도 대회운영에 필요한 30%에 상당하는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4 KARA가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

제4조 신청서류

대회주최자로 KARA에 등록을 희망하는 단체, 기업, 개인은 아래의 서류를 국제대회는 3개월 전, 국내대회는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4.1 대회주최자 등록신청서.

4.2 사업자 등록증(법인, 일반 사업자).

4.3 당해 연도 대회운영계획서.

4.4 대표자 인감증명 1부.

4.5 대표자 사진 1매.

제5조 대회주최자의 승인

5.1 대회주최자의 승인은 KARA 사무국과 이사 5인 이상 심의 후 과반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

5.2 등록신청서는 KARA 사무국에 직접 제출한다.

5.3 KARA로부터 승인 받은 대회주최자의 소유권을 2019년 1월 1일부터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기존 대회주최자 포함).

5.4 FIA 또는 KARA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경기장에서 대회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대회주최자의 자격 심사

KARA는 사무국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6.1 대회 주최능력과 운영능력.

6.2 제반 규정의 준수와 의무 이행의 실행 능력.

6.3 기타 KARA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대회주최자의 자격 제한

KARA는 등록을 신청한 대회주최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대회의 횟수, 대회의 명칭, 종류, 대회 카테고리, 대회클래스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등록비

대회주최자 등록을 신청한 자는 KARA가 등록을 허가함과 동시에 KARA가 정

한 등록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대회주최자 A : 50,000,000원
- 대회주최자 B : 5,000,000원 / 연간 갱신비 : 1,000,000원
- 대회주최자 C : 500,000원 / 연간 갱신비 : 500,000원

본 대회주최자 등록비는 대회주최자 자격 상실 및 취소 시 반환되지 않는다.

제9조 유효기간 및 연장

9.1 KARA로부터 등록을 허가 받은 대회주최자 A, B, C의 자격 유효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1회 이상의 공인대회를 개최했을 시 자동 연장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공인대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 KARA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자격이 정지 및 상실될 수 있다.

제10조 대회주최자 자격의 상실

대회주최자 자격을 인정 받은 자에게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KARA는 대회주최자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다.

10.1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KARA가 요청한 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10.2 정당한 이유 없이 개최하고자 한 대회를 취소하였을 때.

10.3 정당한 이유 없이 매년 한 대회도 개최하지 않았을 때.

10.4 정당한 이유 없이 대회주최자로서의 활동이 전혀 없었을 때.

10.5 타 대회주최자의 업무 및 대회 개최에 피해를 가할 경우.

10.6 대회의 준비 또는 대회 후 처리 및 해당 대회의 공인을 이용하여 지역 및 일반인에게 인적, 물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10.7 KARA 및 FIA의 명예나 권위를 실추하거나 이익을 저해하였을 경우.

10.8 모터스포츠 일반의 이익을 저해하였을 경우.

10.9 기타 KARA 사무국과 KARA가 지정한 협의체에서 대회주최자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10.10 대회주최자 B, C의 경우 해당 연도 갱신비 납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10.11 대회주최자가 라운드 대회공인비를 60일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 상실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0.12 KARA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회를 개최할 경우 벌칙이 부여될 수 있다.

제11조 변동사항의 보고 의무

대회주최자로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등록신청서에 기재, 첨부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 사유를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서 KARA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회주최자의 특전

12.1 공인대회를 주최할 자격을 갖는다. 단, KARA 사무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12.2 KARA의 국내스포츠캘린더에 기재, 등록될 수 있다.

12.3 대회주최자 A가 국제대회 개최 시 FIA 국제스포츠캘린더 등록 신청 자격을 갖는다.

12.4 KARA로부터 모터스포츠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12.5 라이선스 발급은 KARA가 별도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실시된다.

12.6 공인대회의 개최에 관하여 등록 팀, 단체, 대회주최자 상호 간의 협조를 하도록 한다.

제13조 벌칙

대회주최자는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국내스포츠규정, 동 부칙, 대회 특별규정, KARA의 기관지나 KARA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포하거나 개정하는 KARA의 고시, 대회 주최허가, 부대조건, 공식통지, 특별규정, 부적절한 대회일정 및 장소 변경 중 어떠한 것이든 위반할 때에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

제14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장
팀 등록규정

제정	199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1월 1일
개정	1998년 1월 1일	개정	2011년 1월 1일
개정	1999년 1월 1일	개정	2012년 1월 1일
개정	2000년 1월 1일	개정	2013년 1월 1일
개정	2001년 1월 1일	개정	2014년 1월 1일
개정	2002년 1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03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2005년 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06년 1월 1일	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21년 1월 1일
개정	2009년 1월 1일		

제1조 총칙

본 규정은 국제자동차연맹(이하 FIA라 한다)과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라 한다)의 공인 하에 행하여지는 자동차 경기에 참가하려는 팀 등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팀의 등록

2.1 KARA 공인 자동차 경기에 참가하려는 팀은 FIA의 국제스포츠규정(ISC규정) 및 부칙과 이에 기초한 KARA의 국내스포츠규정과 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반드시 KARA에 등록하여야 한다.

2.2 등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KARA에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단 KARA가 지정한 협의체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등록을 거부 및 취소할 수 있다.

2.3 팀 구분과 참가 가능 대회

팀	챔피언십대회	컵, 트로피, 챌린지, 기타대회	비고
영구팀	O	O	선수 B등급 이하 라이선스 추천 가능
단기팀	O	O	선수 C 라이선스 이하 추천 가능
연간팀	O	O	선수 라이선스 추천 불가 ※ 짐카나, 카트, 드리프트, 입문 포뮬러 등 기초 종목의 경우 챔피언십 대회 참가 가능
아마추어팀	X	O	

제3조 팀의 신청 자격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인 팀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3.1 모터스포츠에 공헌하는 사업목적을 갖는 법인

3.2 공인 경기에 팀으로 참가하거나 할 계획이 있을 것.

3.3 자동차 경기의 제반 규칙에 정통한 자가 KARA의 라이선스회원으로 최소한 5명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 단, 아마추어팀은 이에 미달했을 경우 사유에 대한 사무국 심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결정한다.

제4조 신청서류

팀으로 KARA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팀도 매년 갱신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의 서류와 비용을 제출한다.

4.1 KARA 소정의 신청 양식.

4.2 등록규정에 해당하는 비용.

제5조 팀의 신청

5.1 등록 신청서는 해당년도 공인경기 참가 전 우편, 전자 수단을 통해 KARA에 제출하여야 한다.

5.2 KARA는 등록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5.3 팀 등록이 거부 될 경우에 비용은 반환된다.

제6조 심사

접수된 등록 신청서는 KARA 사무국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심사한다.

6.1 경기 참가능력과 팀 운영능력.

6.2 제반 규칙의 준수와 의무의 실행 능력.

6.3 기타 KARA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자격의 제한

7.1 KARA 사무국은 등록을 신청한 팀의 자격을 심사, KARA가정한 팀등록에 따른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7.2 KARA로부터 승인 받은 영구등록팀의 소유권을 2019년 1월 1일부터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

제8조 비용

비용은 별도로 정한 표를 따른다.

제9조 인증서

팀 등록을 완료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팀은 KARA가 발부하는 인증서를 받는 때부터 자격이 인정된다.

제10조 팀 자격의 상실

팀 자격을 인정받은 팀에게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KARA는 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0.1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

10.2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 신청한 경기에 불참할 때.

10.3 KARA의 사무국에서 등록 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10.4 단기 등록팀의 경우 2년 이상 공식 경기 참가 기록이 없는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

10.5 단기등록과 연간등록팀, 아마추어팀의 경우 해당연도 갱신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팀 자격이 상실된다.

10.6 민·형사상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10.7 10.4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팀이 재등록을 할 때는 등록비를 다시 내야 한다.

10.8 KARA가 금지한 대회 및 비공인대회에 참가하였을 때 자격상실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10.9 팀의 권리와 명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하였을 경우

제11조 변동사항의 보고 의무

팀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단체는 등록 신청서에 기재(팀명 등), 첨부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사유를 7일 이내에 문서로서 KARA에 보고하여야 하며, KARA로부터 인정받기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권한

공인팀으로 등록한 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2.1 공인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팀으로서의 기록이 인정된다.

12.2 공인 팀으로서의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2.3 영구등록팀은 선수 레이스 라이선스 국내 B 이하의 유자격자를 추천할 수 있다. 레이스 B 라이선스 등급 추천의 경우 대상자가 반드시 레이스 C 라이선스 소지자여야 한다.

단기등록팀은 선수 레이스 라이선스 국내 C 이하의 유자격자를 추천할수 있다 (모든 추천은 훈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드래그 및 드리프트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팀의 추천에 의해 라이선스 발급이 된 선수가 1년 이내에 경기 운영능력부족으로 중대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여 페널티를 받은 경우 해당 팀은 3년간 추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2.4 프로그램 북 등 공식적인 팀 명 노출이 가능하다.

제13조 벌칙

KARA의 등록팀은 FIA의 국제스포츠규정, KARA의 국내스포츠규정, 동 부칙, 경기 특별규칙, KARA의 기관지나 KARA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포하거나 개정하는 KARA의 고시, 경기 주최허가, 부대조건, 공식통지, 트랙의 특별규정 중 어떠한 것이든 위반할 때에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

제14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장
선수 등록규정

제정	199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1월 1일
개정	1998년 1월 1일	개정	2011년 1월 1일
개정	1999년 1월 1일	개정	2012년 1월 1일
개정	2000년 1월 1일	개정	2013년 1월 1일
개정	2001년 1월 1일	개정	2014년 1월 1일
개정	2002년 1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03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2005년 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06년 1월 1일	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21년 1월 1일
개정	2009년 1월 1일		

제1조 총칙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라 한다)는 KARA 공인 자동차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경기참가자들을 위하여 국제자동차연맹(이하 FIA라 한다)의 국제스포츠규정과 KARA의 국내스포츠규정을 준수하여 선수 라이선스를 등록 및 발급한다.

제2조 선수 라이선스

선수 라이선스를 발급 받은 자는 KARA 회원으로서 FIA 국제스포츠규정 및 KARA 국내스포츠규정을 준수한다.

제2.1조 선수 라이선스의 분류와 유효한 경기

2.1.1 KARA가 발급하는 선수 라이선스는 국내 라이선스와 국제 라이선스로 구분하며,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다. 상위 라이선스는 하위 라이선스를 대신할 수 있다.

2.1.1.a 국내 선수 라이선스

국내 선수 라이선스는 레이스, 카트, 드래그, 드리프트, 짐카나 종목으로 분류되고, 등급별로 구분된다.

KARA 라이선스의 경기별 참가등급은 KARA 공인 대회주최자로부터 제출받은 대회특별규정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2.1.1.b 국제 선수 라이선스

국제 선수 라이선스는 국제대회에 참가를 목적으로 FIA ISC Appendix'L'항 및 CIK-FIA 국제카트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FIA 또는 KARA가 발급한다.

제2.2조 국내 레이스 선수 라이선스

2.2.1 레이스 선수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자는 국내의 도로교통법에 의한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국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소지자이어야 한다. (단, 등록 말소된 차량 및 포뮬러 등 경주전용차량으로 시합하는 클래스 참가에 한해 운전면허증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이 조건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는 번호판이 있는 등록 차량으로 진행되는 경기에 출전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제출한다.)
※ 운전면허증 제출 면제 조건은 J 라이선스 발급에 한함.

[표-1 레이스 라이선스 등급별 취득 점수]

구분	국내/국제	등급	해당 라이선스 취득 가능 점수
레이스	국제	A, B	FIA국제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발급
		C	-
	국내	A	100
		B	70
		C	10
		D	-
		J	-

[표-2 신규 국내 C 레이스 라이선스 취득 점수표]

내용	점수	비고
공인 레이싱 스쿨 수료자	20	4가지 중 택일 1회 한정 점수 취득 가능
공인 레이싱팀 교육 이수자 (서킷 주행 5타임 이상 기록 제출)	10	
공인 짐카나 대회 참가자(기록 인정시)	10	
KARA의 신규 드라이버 교육 이수자	10	

* 국내 B 라이선스 신청 시 점수 반영(신규 라이선스 취득 시 인정된 점수)

[표-3 국내 레이스 라이선스 승급 점수표]

내용	점수	비고
KARA 소양 교육 이수자	10	승급교육
공인 서킷 스포츠 주행 이수자 (서킷 주행 1타임)	2	공인등록팀 해당, 최대 20점 취득 가능
C 라이선스 요구 대회 출전 횟수(라운드 당)	10	짐카나, 타임트라이얼 경기 한정 최대 20점
B 라이선스 요구 대회 출전 횟수(라운드 당)	15	
A 라이선스 요구 대회 출전 횟수(라운드 당)	20	

* 등급 변경 시 기존 누적 점수는 소멸됨.

2.2.2 레이스 국내 J(Junior) 선수 라이선스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자동차경주를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 출전하는 대회에 한해 KARA가 심의를 통해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만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규정에 따라 레이스 국내 C 라이선스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2.2.2.a 카트 국내 B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

2.2.2.b 만 14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인 자

2.2.2.c 공인 레이싱 스쿨 교육 수료증과 레이싱팀 추천서(보증서)를 제출한 자

2.2.2.d KARA 신규드라이버 교육 이수자

2.2.2.e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한 자

2.2.2.f J 라이선스 소지 후 대회참가 경력 5회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 후 레이스 B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2.2.3 레이스 국내 D 선수 라이선스

타임 트라이얼, 타임 타겟 대회 참가에 필요한 라이선스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발급할 수 있다.

2.2.3.a KARA 공인 서킷 유효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자.

2.2.3.b KARA 온라인 교육 과정 수료 후 테스트를 통과한 자.

2.2.3.c 레이스 D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자에게 1회 발행되고,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한다.

2.2.4 레이스 국내 C 선수 라이선스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2.2.4.a KARA 공인 레이싱 스쿨 수료자.

2.2.4.b KARA 공인 짐카나 대회에 1회 이상 참가 후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자.

2.2.4.c KARA 신규 드라이버 라이선스 교육 이수자.

2.2.4.d KARA 공인 레이싱 팀 (영구등록팀과 단기등록팀)의 교육을 이수한 자.

2.2.5 레이스 국내 B 선수 라이선스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2.2.5.a 표-2 신규 라이선스 취득 점수표, 표-3 라이선스 승급 점수표를 기준으로 취득 가능 점수 70점을 충족한 자.

2.2.5.b 카트 국내 A 라이선스 이상 소지자 중 국내 공인 카트대회에서 상위 3위 이상 입상자. (표-3 레이스 라이선스 승급 점수표 참고)

2.2.6 레이스 국내 A 선수 라이선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2.2.6.a 표-3 라이선스 승급 점수표를 기준으로 취득 가능 점수 100점을 충족한 자 중 KARA가 실시한 드라이버 의무 교육 수료자.

2.2.7 레이스 선수 라이선스의 연령 제한은 만 18세 이상으로 한다. 18세 미만의 경우 KARA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KARA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8 해외 ASN 라이선스 취득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라이선스 사본과 경기경력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한 뒤 KARA 사무국의 승인에 따라 국내 라이선스 또는 국제 라이선스의 등급이 결정된다.

제2.3조 레이스 국제 선수 라이선스

2.3.1 레이스 국제 C 선수 라이선스

2.3.1.a 국내 대회 주최자가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레이스 국제 C 라이선스의 신청은 레이스 국내 A라이선스 취득자가 신청할 수 있고, 라이선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국외대회 주최자가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급한다. 심의를 통과한 자는 FIA ISC Appendix 'L'의 드라이버 메디컬 검사 항목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의 의료기관에서 받은 메디컬 검사 결과서를 KARA에 제출하여야 한다.

2.3.1.b 레이스 국내 Junior 라이선스 소지자가 포뮬러 등의 국제대회 참가시 제한적으로 레이스 국제C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3.1.c 카트 국제 B 라이선스 소지자. 예외 조항은 FIA ISC Appendix 'L'을 따른다.

2.3.1.d 자동차 및 경주차의 연구개발, 국제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한 경우 KARA가 별도 심의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2.3.2 레이스 국제 B 선수 라이선스

2.3.2.a 레이스 국제 C 소지자 중

2.3.2.a.i 국내 챔피언십이나 국제 대회에 7회 이상 참가한 경험이 있는 자.

2.3.2.b 레이스 국제 C 미소지자 중

2.3.2.b.i 만 18세 이상인 자 중 신청 전 24개월 이내에 국내 또는 국제 공인 서킷 레이스 경기를 10회 이상 참가한 자.

2.3.2.b.ii 만 18세 이상인 자 중 신청 전 24개월 이내에 KARA가 공인한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자.

2.3.2.b.iii CIK-FIA 월드 챔피언십 또는 월드컵 경기에서 상위 3위 입상자.

2.3.3 레이스 국제 A 선수 라이선스

2.3.3.a 레이스 국제 B 승급요건을 갖춘 자 중 아래 조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2.3.3.a.i 승급 신청 전 24개월 이내에 레이스 국제 B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대회에서 5회 이상 5위 안에 입상한 자.

2.3.3.a.ii 당해 년, 혹은 전년도에 레이스 국제 B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챔피언십 대회에서 최종 5위 안에 입상한 경험이 있는 자.

2.3.4 레이스 국제 A와 B의 등급의 유지

2.3.4.a 12개월 이내에 국제대회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전제로 KARA의 라이선스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라이선스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2.3.5 슈퍼라이선스 신청은 FIA 규정에 따른다.

2.3.6 국제대회 참가 필요 서류

2.3.6.a 국제대회 참가에 필요한 서류는 '국제선수 라이선스', '메디컬 카드', '선수비자'이다. 모든 서류는 KARA에서 발급한다.

2.3.6.b 대회 참가 2주전까지 KARA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참가 대회 규정을 함께 제출한다.

2.3.6.c 대회종료 후 2주 이내 참가 기록을 제출한다. (이메일 접수, kara@kara.or.kr)

2.3.6.d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2.4조 카트 선수 라이선스

2.4.1 국내, 국제 선수 라이선스는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CIK-FIA 국제카트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KARA가 발급한다.

카트 선수 라이선스는 만 7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미성년자는 법정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나이에 따라 라이선스 신청과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표-4 카트 라이선스 등급별 취득 조건]

<table>
<tr><th>구분</th><th>국내/국제</th><th>등급</th><th>취득연령
(라이선스 신청 해 기준)</th><th>해당 라이선스 취득 가능 내용</th></tr>
<tr><td rowspan="9">카트</td><td rowspan="5">국제</td><td>A</td><td rowspan="2">만 15세 이상</td><td rowspan="2">예외-CIK FIA 국제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발급</td></tr>
<tr><td>B</td></tr>
<tr><td>C</td><td>만 14세 이상</td><td rowspan="3">국내 카트 라이선스 소지자로서
카트 팀장 추천서를 받은 자.</td></tr>
<tr><td>C-Junior</td><td>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td></tr>
<tr><td>D</td><td>만 12세 이상</td></tr>
<tr><td rowspan="4">국내</td><td>A</td><td rowspan="3">만 11세 이상</td><td>카트 B 소지자로 24개월 내 3회 이상
공식기록을 인정 받은 자 또는
상위 33% 이상 기록 보유자</td></tr>
<tr><td>B</td><td>카트 C 소지자로 24개월 내 3회 이상
공식기록을 인정 받은 자</td></tr>
<tr><td>C</td><td rowspan="2">KARA 카트 교육 수료자 또는
카트 공인 팀 교육 수료자</td></tr>
<tr><td>D</td><td>만 7세 이상</td></tr>
</table>

2.4.2 카트 국내 D 선수 라이선스

2.4.2.a 카트 국내 D의 신청은 만 7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승급은 만 11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2.4.3 카트 국내 C 선수 라이선스

2.4.3.a 카트 국내 C의 신청은 만 11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2.4.3.b 레이스 국내 C 라이선스 이상 소지자는 카트 국내 C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2.4.3.c 카트 국내 C 신규 신청의 경우 KARA의 카트 교육을 수료하였거나 KARA에 등록된 카트 팀에서 교육을 받았을 경우 수료증과 라이선스 신청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한다.

2.4.4 카트 국내 B 선수 라이선스

2.4.4.a 카트 국내 C 소지자로 승급 신청 전 24개월 내에 KARA가 공인한 경기(카트 국내 C 소지 경기)에서 3회 이상 출전하여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자.

2.4.5 카트 국내 A 선수 라이선스

2.4.5.a 카트 국내 B의 소지자로 승급 신청 전 24개월 내에 KARA가 공인한 경기(카트 국내 B 소지 경기)에서 3회 이상 출전하여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자 또는 해당기간 참가대회에서 상위 33% 이상을 기록한자.

2.4.5.b 레이스 국내 B 라이선스 이상(국제 라이선스 포함)소지자는 카트 국내 A 라이선스 이하를 신청할 수 있다.

2.4.6 카트 국제 D 선수 라이선스

2.4.6.a 만 12세 이상인 자.

2.4.7 카트 국제 C 선수 라이선스

2.4.7.a C-Junior
만12세 ~ 만14세인자.

2.4.7.b C-Restricted
만 14세이상인 자.

2.4.7.c C-Senior

만 14세 이상인자.

2.4.8 카트 국제 B 선수 라이선스

2.4.8.a 만 15세 이상인 자로써 승급 신청 전 24개월 동안 3개의 국내 또는 국제 대회에서 상위 10위 이상인자. 단, 3경기 중 적어도 1경기는 국내 챔피언십 또는 국제 경기여야 한다.

2.4.9 카트 국제 A 선수 라이선스

2.4.9.a 만 15세 이상인 자 중 승급 신청 전 24개월 동안 챔피언십 또는 대회의 단일 경기(Single Competition)로 진행되는 CIK-FIA 챔피언십, 트로피, 컵에서 상위 33% 성적 보유자(챔피언십 결승 결과 상위 33%가 34명이 넘을 경우, 나머지 선수들은 잠정적 A 취득 가능자로 예선히트 이후 중간 순위를 바탕으로 결정) 또는 시리즈(more than one competition)로 진행되는 CIK-FIA 챔피언십, 트로피, 컵에서 점수 포인트(Scored Point)를 획득한 자. 또는 국제 B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3개의 국제 경기에서 상위 33% 성적 보유자.

2.4.10 카트 국제 라이선스 승급은 1년에 1회만 가능하다.

2.4.11 슈퍼 카트 라이선스는 만 18세 이상인 자만 신청 및 발급 가능하다.

2.4.12 카트 국제 라이선스 등급유지에 관한 사항은 국제 카트 위원회(CIK-FIA)의 규정에 따른다.

2.4.13 추천에 의한 신청: KARA에 가입한 공인 카트팀 또는 공인단체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별도 규정된 훈련 주행 실적을 함께 제출한 자 중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자.

2.4.14 해외 ASN 카트 라이선스 취득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라이선스 사본과 경기경력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한 뒤 KARA 사무국의 승인에 따라 국내 카트 라이선스 및 국제 카트 라이선스의 등급이 결정된다.

제2.5조 드리프트 선수 라이선스

2.5.1 국내, 국제 선수 라이선스는 국내규정과 국제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KARA가 발급한다.
드리프트 선수 라이선스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표-5 드리프트 라이선스 등급별 취득 조건]

구분	국내/국제	등급	해당 라이선스 취득 가능 내용
드리프트	국제	-	FIA국제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발급
	국내	D1	국내 D2 소지자로 36개월 내 시리즈 3위 입상자 또는 5회 우승자
		D2	국내 D3 소지자로 24개월 내 본선 상위 50%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자
		D3	KARA에 등록된 드리프트 팀 또는 드리프트 스쿨 실습 교육 수료증 제출자
		D4	KARA에 등록된 드리프트 팀 또는 드리프트 스쿨 이론 교육 수료증 제출자

2.5.2 드리프트 국내 D4 선수 라이선스

2.5.2.a 신규 신청의 경우 KARA에 등록된 드리프트 팀, 드리프트 스쿨에서 발급한 이론 교육 수료증과 라이선스 신청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한다.

2.5.3 드리프트 국내 D3 선수 라이선스

2.5.3.a 드리프트 국내 D3 신규 신청의 경우 KARA에 등록된 드리프트팀, 드리프트 스쿨에서 발급한 이론 및 실습 교육 수료증과 라이선스 신청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한다.

2.5.4 드리프트 국내 D2 선수 라이선스

2.5.4.a 드리프트 국내 D3 소지자로 라이선스 신청 전 24개월내에 KARA가 공인한 경기(D3 라이선스 요구)에 참가하여 해당 대회 클래스의 본선 상위 50%의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자.

본선 상위 50% 정의는 아래의 예와 같다. 드리프트 대회는 해당 대회특별규정과 참가자 수에 따라 본선 진출이 16강, 8강, 4강 등 상이하게 운영되므로 16강으로 본선이 진행되는 경기에서 8강진출자가 상위 50%의 공식기록을 인정받게 된다. 8강으로 진행되는 경기에서는 4강 진출자가 공식기록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한다.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

2.5.5 드리프트 국내 D1 선수 라이선스

2.5.5.a 드리프트 국내 D2 소지자로 신청 전 36개월 내에 KARA 공인경기(드리프트 국내 D2 소지 경기)에서 시리즈 3위 이상 입상자.

2.5.5.b 드리프트 국내 D2 소지자로 신청 전 36개월 내에 KARA 공인경기(드리프트 국내 D2 조지 경기)에서 5회 우승자.

2.5.6 드리프트 국제 선수 라이선스

2.5.6.a 드리프트 국제 라이선스는 FIA 규정에 준한다.

제2.6조 드래그 선수 라이선스

2.6.1 국내, 국제 선수 라이선스는 국내규정과 국제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KARA가 발급한다.

2.6.2 국내 드래그 선수 라이선스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표-6 드래그 라이선스 등급별 취득 조건]

구분	국내/국제	등급	해당 라이선스 취득 가능 내용
드래그	국제	-	예외-FIA국제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발급
	국내	드래그 A	B 라이선스 소지자로 24개월 내 5회 이상 공식기록을 인정 받은 자 또는 상위 33% 이상 기록 보유자
		드래그 B	C 라이선스 소지자로 24개월 내 5회 이상 공식기록을 인정 받은 자 또는 상위 33% 이상 기록 보유자
		드래그 C	D 라이선스 소지자로 24개월 내 1회 이상 공식기록을 인정 받은 자 또는 상위 33% 이상 기록 보유자
		드래그 D	KARA 이론 교육 이수자 및 시험 합격자

2.6.3 드래그 국내 D선수 라이선스

2.6.3.a 국내 드래그 D 라이선스 신청의 경우 KARA가 진행하는 교육과 시험 합격자가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2.6.4 드래그 국내 C 선수 라이선스

2.6.4.a KARA 국내 드래그 D소지자로 승급 신청 전 24개월 내에 KARA가 공인한 경

기에서 1회 이상 출전하여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자.

2.6.5 드래그 국내 B 선수 라이선스

2.6.5.a KARA 드래그 국내 C 소지자로 승급 신청 전 24개월 내에 KARA가 공인한 경기에서 5회 이상 출전하여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자 또는 해당 기간 참가대회에서 상위 33% 이상을 기록한 자.

2.6.6 드래그 국내 A 선수 라이선스

2.6.6.a KARA 드래그 국내 B 소지자로 승급 신청 전 24개월 내에 KARA가 공인한 경기에서 5회 이상 출전하여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자 또는 해당 기간 참가대회에서 상위 33% 이상을 기록한 자.

2.6.7 드래그 국제 선수 라이선스

2.6.7.a 드래그 국제 선수 라이선스는 FIA 규정에 준한다.

제2.7조 짐카나 선수 라이선스

2.7.1 짐카나 선수 라이선스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2.7.1.a 짐카나 대회 참가에 필요한 라이선스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2.7.1.b KARA 공인 서킷 유효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자.

2.7.1.c KARA 온라인 교육 과정 수료 후 테스트를 통과한 자.

제2.8조 국제 R 선수 라이선스

국제 R 선수 라이선스는 국내 레이스 A 라이선스 소지자 중 국제 로드 경기(랠리, 크로스컨트리 랠리, 힐 클라임등) 출전시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제2.9조 기타 경기에 대한 선수 라이선스

국제 자동차 경주 카테고리에 등재되어 있는 기타 경기 (히스토릭, 트럭 레이싱, 스피드 기록 도전 경기 등)에 대하여서는 FIA ISC Appendix 'L'에 의거하여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다.

제2.10조 선수 라이선스의 신청 서류

2.10.1 선수 라이선스의 신청자는 전산시스템(info.kara.or.kr)에 회원 가입과 라이선스 신청에 필요한 내용 기입과 서류를 첨부하여 라이선스를 신청한다.

2.10.2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KARA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0.3 해외 ASN의 라이선스 소지 경험이 있거나 해외 레이싱 스쿨을 수료한 사람이 KARA 선수 라이선스의 취득을 원할 경우 자신이 활동한 경력증명서 또는 해외ASN 라이선스 사본이나 해외 레이싱 스쿨 수료증 등 해당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10.4 선수 라이선스의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 수수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10.5 상기 신청접수 및 방법은 KARA가 지정한 전산 등록망(KISS)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필요 시 KARA 사무국이 이를 의무화 할 수 있다.

제2.11조 선수 라이선스의 유효기간과 연도 갱신신청

2.11.1 국내 선수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라이선스 갱신은 전산시스템(infor.kara.or.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11.2 국제 선수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이며, 라이선스 갱신은 전산시스템(infor.kara.or.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12조 선수 라이선스의 의무 사항

2.12.1 모든 선수 라이선스 소지자는 국내스포츠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선수 라이선스를 즉시 KARA에 반납하여야 한다.

2.12.2 음주운전이나 기타 사항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선수 라이선스는 자격 취소를 포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자격 취소 처분의 경우 라이선스를 KARA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12.3 KARA가 발급한 선수 라이선스의 소지자는 외국 경기에 참가할 경우 반드시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4 타 ASN의선수 라이선스 소지한 자가 KARA 선수 라이선스를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ASN에서 라이선스 발급 협조 문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하여 선수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국제스포츠규정 제9.3조 라이선스 발급 권한 참조)

2.12.5 드라이버의 가명 사용

2.12.5.a 라이선스를 가명으로 등록하려면 KARA에 특별신청을 해야 한다.

2.12.5.b 라이선스는 가명으로 발급될 수 있으나, 한 사람이 두 개의 가명을 사용할 수 없다.

2.12.5.c 이 경우 승인되었다면 라이선스는 그 가명으로 발급된다.

2.12.5.d 가명으로 등록된 라이선스 보유자는 모든 경기에서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참가해서는 안 된다.

2.12.5.e 가명을 바꾸려면 원래의 이름을 바꿀 때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2.12.5.f 가명으로 등록된 사람은 본명 또는 다른 가명으로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을 때까지 변경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제2.13조 선수 라이선스 심의

2.13.1 KARA는 적합한 이유와 함께 선수 라이선스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2.13.2 KARA는 라이선스 발급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외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4조 휴면 라이선스 보유자

2.14.1 KARA 공인대회 30회 이상 참가자는 최종 취득한 라이선스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

2.14.2 KARA 공인대회 30회 미만 참가자는 표-3 라이선스 승급점수표를 기준으로 라이선스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제3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장
오피셜 등록규정

제정	199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1월 1일
개정	1998년 1월 1일	개정	2011년 1월 1일
개정	1999년 1월 1일	개정	2012년 1월 1일
개정	2000년 1월 1일	개정	2013년 1월 1일
개정	2001년 1월 1일	개정	2014년 1월 1일
개정	2002년 1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03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2005년 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06년 1월 1일	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21년 1월 1일
개정	2009년 1월 1일		

제1조 총칙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라 한다)는 KARA 공인 자동차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오피셜들에게 국제자동차연맹(이하 FIA라 한다)의 국제스포츠규정과 KARA의 오피셜 등록규정에 따라 오피셜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하며 본 규정과 국제스포츠규정 및 국내스포츠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오피셜 라이선스

제2.1조 오피셜

KARA가 공인하는 대회에 심판원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오피셜은 KARA 국내스포츠규정과 FIA 국제스포츠규정에 의해 책임과 권한, 임무가 정해지며 그 승급이나 자격이 주어진다.

제2.2조 오피셜의 구성

2.2.1 '오피셜'이란 다음 사람들로 구분되며 이들은 보조 인원을 둘 수 있다.

- 심사위원 (the stewards)
- 경기위원장 (the clerk of Course)
- 레이스 디렉터 (the race director)
- 사무국장 및 요원 (the secretary of the Event)
- 기록위원장 및 요원 (timekeepers)
- 기술위원장 및 요원 (scrutineers)
- 피트위원장 및 요원 (pit marshals)
- 패독위원장 및 요원 (paddock marshals)
- 코스위원장 및 요원 (track or road marshals)
- 안전위원장 및 요원 (emergency coordinator)
- 의료위원장 및 구급대원 (medical)
- 사실판단관 (judge of fact)

제2.3조 오피셜 라이선스 등급

KARA의 국내심판원 라이선스 등급은 아래와 같다.

등급	구분
S+	심사위원
S1	
S2	
A+	
A1	위원장급
A2	
B1	선임급
B2	
C1	일반요원
C2 / D	
E	소방, 의료, 기타 특수직

제2.4조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2.4.1 오피셜 라이선스는 KARA가 지정한 전산 등록망 (KISS)을 통하여 입력 항목을 빠짐 없이 기재한 후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2.4.2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및 승급 자격을 갖추었거나 KARA에 등록된 대회주최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대상자가 된다.

2.4.3 만 19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2.4.4 해외에서 활동한 경우 활동한 국가의 경력증명서나 해당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4.5 외국인의 경우 신청 승인 여부에 대한 KARA 사무국의 심사에서 한국어 능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

2.4.6 심판원 라이선스의 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 이외의 신청자는 KARA 사무국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2.4.7 KARA는 접수된 오피셜 신청이 받아들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그 이유를 밝혀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이미 수수료가 납부되었다면 이를 환불한다.

제2.5조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자격

2.5.1 국내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자격

2.5.1.a **국내 C2, D**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2.5.1.a.i KARA 온라인 교육 과정 수료 후 온라인 시험 결과가 60점 이상인 자.

2.5.1.a.ii KARA가 실시하거나 인정한 신규 또는 일반교육 수료자 중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자.

2.5.1.a.iii 대회 현장에서 A1 또는 A2 오피셜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오피셜 교육을 받은 자. 국내 D 라이선스는 공인대회 2회에 한해 참가할 수 있으며, 취득 후 36개월 이내 C2 라이선스 신청 시 별도의 절차 없이 C2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하다.

2.5.1.a.iv C2이상의 오피셜 라이선스 소지자는 D등급을 신청 할 수 없다.

2.5.1.b **국내 S2**
국내 대회 주최자, 조직위원회 혹은 공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 KARA의 심사위원 수련과정교육을 이수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5.1.c **국내 E**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직 종사자 중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자.

제2.6조 오피셜 라이선스 승급

2.6.1 국내 A1에서 A+로의 신청

2.6.1.a A1 오피셜 라이선스 취득 후 심사위원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KARA심사세미나 1회 이상 의무 참석하여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6.2 국내 A2에서 A1으로의 신청

2.6.2.a A2 오피셜 라이선스 취득 후 24개월 이내에 10회 이상의 공인대회에서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파트 오피셜로 활동한 자.

2.6.2.b KARA는 상황에 따라 관련 위원회 및 별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특별 승급을 할 수 있다.

2.6.3 국내 B1에서 A2로의 신청

B1 라이선스 취득 후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KARA의 승급시험을 통과한 자.

2.6.3.a 36개월 이내에 5회 이상의 공인 대회에서 2개 이상의 파트에 참가한 자. 단, 1개의 파트 참가는 최소 2회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

A2 라이선스 신청은 B1 라이선스 취득 후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2.6.4 국내 B2에서 B1으로의 신청

B2 라이선스 취득 후 다음 2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2.6.4.a 36개월 이내 공인 대회 5회 이상 참가한 자.

2.6.4.b 36개월 이내 공인 대회에 3회 이상 참가하고 KARA가 실시하거나 인정한 시니어(엘리트) 교육을 이수한 자 중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6.5 국내 C1에서 B2으로의 신청

C1 라이선스 취득 후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KARA의 승급시험을 통과한 자.
단, B2 라이선스 신청은 C1 라이선스 취득 후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2.6.5.a 36개월 이내 공인 대회 5회 이상 참가한 자.

2.6.5.b 혹은 36개월 이내 공인 대회 3회 이상 참가한 자 중 KARA가 인정한 A2 라이선스 이상 파트위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고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6.5.b.i 또는 KARA가 실시하거나 인정한 시니어(엘리트) 교육을 이수한 자 중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6.6 국내 C2에서 국내 C1으로의 신청

C2 라이선스 취득 후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2.6.6.a 36개월 이내 공인 대회 5회 이상 참가한 자.

2.6.6.b 혹은, 24개월 이내 3회 이상 참가한 자 중

2.6.6.b.i KARA가 실시한 현장 교육을 수료했거나

2.6.6.b.ii A2 라이선스 이상 파트위원장의 추천서를 받아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6.7 국내 S1에서 S+로의 신청

2.6.7.a S1 오피셜 라이선스 취득 후 15회 이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자 중 KARA의 교육을 의무 참석하고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6.8 국내 S1

다음 2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2.6.8.a 국내 S2 자격을 갖춘 자 중 경력사항을 고려하여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6.8.b 국내 S2 취득 후 60개월 이내 공인 대회에서 15회 이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자.

제2.7조 오피셜 라이선스 등급 유지

오피셜 라이선스 등급 유지 조건 미충족 시 1단계 라이선스 강등이 이루어진다. 단, A2, A1라이선스는 등급 유지조건 미충족 시 관련 위원회 심의로 자격유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격 유지 또는 1단계 라이선스 강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피셜은 KARA가 주최하는 교육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며 상황에 따라 의무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2.7.1 국내 A2, A1

매년 라이선스 갱신과 36개월 이내 공인대회 3회 이상 참가

2.7.2 국내 B2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대회 1회 이상 참가

2.7.3 국내 B1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대회 1회 이상 참가

2.7.4 국내 C1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대회 1회 이상 참가

2.7.5 국내 C2

24개월 이내에 공인대회 1회 이상 참가

제2.8조 KARA 오피셜 교육 및 세미나 참가의 인정

KARA가 실시하거나 인정한 교육 및 세미나 등의 참가는 공인 대회 1회의 참가로 인정하며 이는 오피셜 라이선스 승급 및 등급 유지 자격에 적용될 수 있다.

제2.9조 오피셜 라이선스의 유효기간

오피셜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10조 오피셜 교육

2.10.1 KARA는 오피셜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10.2 KARA는 라이선스 등급 및 자격 유지를 위해 특정 교육 이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2.11조 오피셜 교육의 의무

2.11.1 KARA의 오피셜 교육은 오피셜 등록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되며, 오피셜은 라이선스 등급 유지와 승급을 위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11.2 등급별 모든 오피셜은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에 의무 참가(심사위원 포함) 해야 한다.

제3조 규정의 적용 및 시행

제3.1조 벌칙

3.1.1 오피셜은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KARA 국내스포츠규정 등 KARA가 수시로 공표하거나 개정하는 KARA의 고시, 대회 주최허가, 부대조건, 공식통지, 트랙의 특별규정 중 어떠한 것이든 위반할 때에는 벌칙의 대상이 되고, 벌칙은 다음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3.1.1.a 경고

이 벌칙을 받을 오피셜에게 KARA는 서면으로 경고 이유와 내용을 통고한다.

3.1.1.b 등급 강등

이 처분을 받은 오피셜의 라이선스 등급은 1단계 하향된다. 이 벌칙은 심사위원 라이선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1.1.c 자격 정지

이 처분을 받은 오피셜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오피셜 라이선스에 따르는 모든 자격과 권한이 정지되며 KARA 공인 대회의 오피셜로 활동할 수 없다. 단, 정지 기한 안에 라이선스가 만료되면 라이선스 갱신은 정지 기간 만료 후에 가능하며, 제 1.6조의 등급 유지자격을 심의할 때 정지기간도 포함된다.

3.1.1.d 라이선스 취소

이 처분을 받은 오피셜은 라이선스가 무효가 되며 처분과 함께 부과된 경과 기간 중에는 라이선스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KARA에서 정한 경과 기간이 지나면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하나 취득 가능한 라이선스 등급은 KARA의 재량에 속한다.

3.1.1.e 제명

이 처분을 받은 오피셜은 라이선스가 무효가 되며 라이선스 신청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3.1.2 비공인 대회에 참가하였을 경우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제3.2조 규정의 변경

KARA는 필요 시 본 규정을 변경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3.3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장
대회 등록규정

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21년 1월 1일

제1조 목적

국내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대회(경기)의 신청과 등록 및 공인을 위한 제반 규정과 세부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회(경기) 총괄

2.1 KARA(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는 국내 자동차 대회 총괄, 경기 등급 표시, 명칭 사용과 대회 참가 자격 및 대회결과의 인증을 총괄한다.

2.2 FIA(국제자동차연맹)는 국제 자동차 대회 총괄, 경기 등급 표시, 명칭 사용과 대회 참가 자격 및 대회결과 인증에 대하여 총괄한다.

제3조 대회(경기) 명칭 사용

3.1 국내에서 조직되는 국내 대회의 챔피언십(Championship), 컵(Cup), 트로피(Trophy), 챌린지(Challenge), 한국(Korea), 전국의 명칭은 KARA에서 관리되고,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2 국제(International) Championship, Cup, Trophy, Challenge의 명칭은 FIA에서 관리되고,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3 상기의 명칭은 영어 또는 그 외의 외국어의 명칭 그리고 동의어, 약칭에 대해서 허가를 필요로 한다.

제4조 국제대회와 국내대회

4.1 국제 대회: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2조 13항에 정의된 대회

4.2 국내 대회: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2조 14항에 정의된 대회

제5조 대회(경기) 주최, 주관, 후원의 정의

대회 개최의 주체는 주최, 주관, 후원으로 구분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5.1 '주최'라 함은 대회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로 정의한다.

5.2 '주관'이라 함은 대회 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자로 정의한다.

5.3 '후원'이라 함은 대회에 공공성, 공익성, 신뢰성 등을 위해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5.4 '협찬'이라 함은 대회에 필요한 재정,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6조 대회(경기) 공인

FIA의 ISC(International Sporting Code)와 KARA 국내스포츠 규정에 자동차 경기로 정의되는 대회는 모두 KARA의 공인 허가를 필요로 한다.

6.1 대회 (Event)

주최자 A, B에 의해 개최되는 단일 대회 또는 시리즈 대회로서 동일 주최자가 운영하는 메인 클래스 또는 하위 클래스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주최자는 대회 공인신청서에 직접 관리하는 모든 클래스의 주요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대회 기록은 주최자가 개최하는 대회 명칭 안에 하위 경기까지 협회 전산시스템(KSM)에 관리된다.

6.2 챔피언십 (Championship)

챔피언십은 시리즈 경기이거나 단독 경기일 수 있다. 오직 FIA만이 국제 관련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시리즈를 인가할 수 있으며, KARA만이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및 시리즈를 인가할 수 있다.

국내 챔피언십 대회는 최상위 클래스의 평균 엔트리 숫자가 6대 이상 가능한 규모여야 한다.만일 평균 엔트리 숫자가 6대 미만일 경우 챔피언십 대회 자격 유지 여부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

6.3 서포트 레이스 (Support Race)

주최자 A, B 또는 C에 의해 개최되는 단일 클래스의 경기로서 메인 대회의 주최자와는 별도로 협회에 등록된 주최자가 경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서포트레이스 주최자는 메인 대회의 주최자가 구성한 조직(경기위원회, 심사위원회, 사무국)을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메인 대회의 주최자와 협의 하에 별개의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경기위원회는 메인 대회의 조직을 활용하여

야 하며, 별도의 레이스 디렉터를 두어 경기위원장과 협의하여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서포트레이스의 기록은 메인대회의 기록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협회 전산시스템(KSM)에 등록되어 관리된다.

6.4 지역 대회 또는 경기 (Zone Event/Competition)

FIA가 인정하는 Zone에 속해 있거나 해당 ASN이 인정한 라이선스 보유자가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말한다.
* Zone: FIA가 지정/규정한 국가별 지역 구분을 뜻하며 KARA는 ASIA Zone에 속한다.

6.5 국제대회

FIA 국제스포츠규정(FIA ISC)과 부칙 안에서 FIA가 결정한 요건에 따른 기준(신청양식 제출)을 충족하는 대회를 말하며, Zone에 상관없이 국제 라이선스 보유자가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말한다.

제7조 자동차 대회 공인 범위

7.1 대회특별규정(스포츠 및 기술 규정)의 승인

7.2 대회 주최자, 팀, 드라이버 그리고 대회운영 심판원에 대한 인증

7.3 대회용 차량 및 선수 안전 장비의 인증

7.4 경기장의 인증, 안전시설 및 안전 대책에 대한 검수

7.5 대회 참가자 및 드라이버의 공식 기록 인증

제8조 공인 대회의 혜택

8.1 FIA의 ISC와 KARA 국내 스포츠규정을 사용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대회 운영을 할 수 있다.

8.2 대회 기록을 영구히 인정받고 국내뿐만 아니라 타 ASN에서 기록을 인정 받을 수 있다.

8.3 KARA 파견 심사 및 감독관 파견을 통해 지속적인 대회의 평가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다.

8.4 분쟁 및 의견 충돌 시 KARA는 분쟁을 조정 받을 수 있다.

8.5 KARA에 의해 선수, 팀, 회원 단체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제9조 KARA의 의무

9.1 국내자동차경기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선수, 오피셜의 자격을 부여한다.

9.2 KARA는 대회 주최자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이를 신청할 경우 대회 공인을 승인하고, 관리·감독한다.

9.3 KARA는 대회 주최자가 원활한 대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9.4 KARA는 대회 주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오피셜 인력 및 보유한 장비를 지원한다. 단,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대회 주최자"가 부담한다.

9.5 KARA는 선수, 팀, 회원 단체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선다.

제10조 대회 주최자의 의무

10.1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FIA 규정과 KARA의 국내 스포츠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2 대회 운영을 책임질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

10.3 조직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대회사무국, 심사위원회, 경기위원회로 구성한다.

10.4 대회 운영에 대한 책임은 주최자 또는 조직위원회에 있다.

10.5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만일의 응급 사고를 대비하여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0.6 대회 참가자, 오피셜, 관중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0.7 주최자는 대회 기록 발표시 KARA의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협회의 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10.8 대회의 승인을 위한 제반 서류와 공인비를 지정된 기간에 KARA에 제출하여야

한다.

10.9 주최자는 대회가 진행되는 서킷이나 코스의 일부 혹은 전체가 공공도로 또는 일반도로를 포함하고 있을 시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10 대회 주최자는 대회장내에 협회 직원과 감독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을 배정하여야 하며 대회에서 생성되는 제반 문서를 당일 경기장 내 협회 사무실에 전달하여야 한다.

10.11 대회 주최자는 대회의 승인을 위하여 공인비를 납부하고 대회에서 수집된 벌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회 주최자의 권리

11.1 대회 주최자는 KARA의 허가 조건으로 KARA, FIA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11.2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방송중계권판매, 광고판매, 후원사 선정, 입장료 등은 모든 상업적인 권리는 주최자에게 있다.

11.3 주최, 주관, 후원자는 상업적 권리문제에 대해 상호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1.4 대회 주최자는 경기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의견 충돌 시 KARA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대회 공인 신청

12.1 대회주최자는 대회 시리즈 등록과 매 대회 마다 공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시리즈 등록은 당해 연도 전체 일정 공식화를 위한 목적이며 매 대회 마다 공인신청서를 제출하여 KARA의 승인 하에 경기 공인접수가 완료된다.

12.3 메인 대회 시리즈 또는 특정 라운드에서 서포트 레이스가 함께 개최될 경우 '서포트 레이스 대회주최자'는 '대회주최자 등록', '대회 시리즈 등록', 또는 '대회 공인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하여야 한다.

12.4 대회 주최자는 대회 공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접수 기한을 지켜 제출하여야 한다.

□ 국내 대회 공인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접수기한

제출 서류	접수 기한
1) 시리즈 등록 신청서 [별지1. 양식 참조]	대회 공식스케줄 시작일 2개월 전 까지
2) 대회특별규정 (스포츠,기술)	
3) 대회 공인비	대회 공식스케줄 시작일 14일 전 까지
4) 대회 공인허가 신청서 [별지2. 양식 참조]	대회 공식스케줄 시작일 5일 전 까지
5) 대회 특별규칙 (공지사항이 있을 경우)	
6) 대회 조직도	
7) 운영계획안 (공간구성, 피트배치도, 검차계획 등)	
8) 대회 타임 테이블 (잠정)	
9) 드라이버 명단 (KARA 지정 양식 제출)	대회 공식스케줄 시작일 3일 전 까지
10) 오피셜 명단 (KARA 지정 양식 제출)	
11) 보험 가입 증서 (드라이버,오피셜,대회참가자,관중)	
12) 응급 대책(Risk Management Plan)	

□ 국제 대회 공인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접수 기한

제출 서류	접수 기한
1) 국제 대회 주최자 정보	연 초 또는 대회 공식스케줄 시작일 3개월 전 까지
2) 국제 대회 주최자 대회 승인서 (대회주최자 발급)	
3) 국제 대회 스포츠/기술 규정 ① 대회특별규정 및 특별규칙 (국문/영문 각1부) ② FIA International Series – Sporting Regulations form [*양식별도문의] ③ FIA International Series – Technical Regulations form [*양식별도문의]	
4) FIA Commercial brand authorization form [*양식별도문의]	
5) 대회 로고	
6) 대회 공인비	대회 공식스케줄 시작일 3주 전 까지
7) 대회 조직도	

8) 운영계획안	대회 공식스케줄 시작일 7일 전 까지
9) 대회 타임테이블	
10) 드라이버 명단(KARA 지정 양식) (국제 라이선스 사본, 대회 참가 비자레터, 메디컬 증명서)	
11) 오피셜 명단(KARA 지정 양식)	
12) 보험 가입 증서 (드라이버, 오피셜, 대회참가자, 관중)	
13) 응급 대책(Risk Management Plan)	

□ Asia-Zone 대회(Competition/Event) 공인 신청

제출 서류	접수 기한
1) 대회 주최자 정보	연 초 또는 대회 3개월 전 까지
2) 대회 주최자 대회 승인서 (대회주최자 발급)	
3) 대회 스포츠/기술 규정 ① 대회특별규정 및 특별규칙 (국문/영문 각1부) ② FIA – Sporting Regulations form [*양식별도문의] ③ FIA – Technical Regulations form [*양식별도문의]	
4) FIA Commercial brand authorization form [*양식별도문의]	
5) 대회 로고	
6) 대회 공인비	대회 3주 전 까지
7) 대회 조직도	
8) 운영계획안	대회 7일 전 까지
9) 대회 타임테이블	
10) 드라이버 명단 (KARA 지정 양식) (국제 라이선스 사본, 대회 참가 비자레터, 메디컬 증명서)	
11) 오피셜 명단 (KARA 지정 양식)	
12) 보험 가입 증서 (드라이버, 오피셜, 대회참가자, 관중)	
13) 응급 대책(Risk Management Plan)	

12.4 대회 후 주최자의 제출 서류

대회주최자는 대회 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대회 진행 관련 서류	접수 및 기한
최종 경기 결과 기록(excel 파일)	경기 종료 후 3일 이내 까지
관제 일지	
벌칙 통보서	
포스트 보고서	
검차 보고서	
심사 보고서	경기 종료 후 5일 이내 까지
기타 보고서	
벌금*	

*벌금 납부: 농협 0890 - 1293 - 978,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제13조 모터스포츠 캘린더 등록

13.1 캘린더 등록신청은 KARA가 지정하는 일시까지 소정의 방법으로 KARA에 제출 한다.

13.2 국제대회는 상기 사항과 함께 FIA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등록하여야 하고, 해당 국제대회 주최자의 대회 승인 서류를 KARA에 제출하여야 한다.

13.3 캘린더 일정 및 장소 변경

국내 각 대회주최자가 개최하는 대회 일정, 장소, 클래스, 주최자, 대회 명칭 등의 변경은 대회 개최 30일 전까지 KARA에 신청을 한다.

13.4 국제대회의 경우 FIA ISC 및 부칙, 해당 국제대회 규정에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경기의 국제대회 주최자의 승인 서류를 첨부하여 KARA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변경 수수료가 부과된다.

제14조 대회 공인비

대회주최자는 KARA가 정한 대회공인비를 대회공인 허가신청서와 함께 납부한다.

14.1 국내대회 : 대회 개최 14일 전까지

14.2 국제대회 : KARA가 지정한 납부일 준수

제15조 대회 공인 허가 전 대회 특별 규칙서 공표 금지

대회주최자는 대회특별규칙서의 초안을 KARA에 제출하여 승인이 있을 때 까지 내용을 공표하거나 참가자의 신청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인된 대회는 KARA의 국내스포츠규칙 및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대회 특별규정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제16조 대회(경기) 특별규정

16.1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차량이 참가하여 어떤 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사항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회 주최자는 대회의 종류와 성격, 참가자격, 대회 방식등을 정의하는 대회특별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6.2 FIA는 전세계 모든 모터스포츠 대회가 준수 해야하는 기본규칙으로 '국제스포츠규칙'(ISC International Sporting Code)을 정하여 중요 개념과 용어 방식, 조직의 구성 등의 내용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주최자는 '국제스포츠규칙'을 기반으로 KARA가 제정한 '스포츠규정'을 준수하여 대회특별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아래의 그림으로 도식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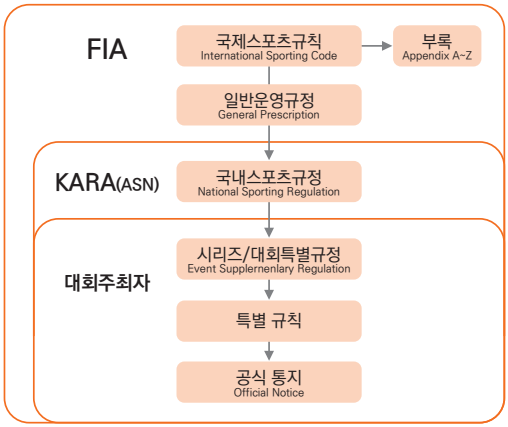

〈모터스포츠 규정 단계 및 절차〉

16.3 대회 주최자의 대회특별규정과 대회특별규칙은 KARA 자동차경기 국내규정집 보다 우선 적용된다.

16.4 대회 주최자의 대회특별규정과 대회특별규칙에 내용이 없을 시 KARA 자동차경기 국내규정집과 FIA ISC에 의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때 FIA ISC는 최상위의 규정으로 적용한다.

16.5 아래 표는 국제스포츠규칙에서부터 공식통지까지 각 규정의 제정 및 변경의 주체와 해당 규정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표로 나타내었다.

규정의 종류	제정/변경의 주체	규정하는 내용
국제스포츠규정	FIA	모든 모터스포츠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모든 규정을 만들 때 그 바탕이 되는 원칙.
일반 규정	FIA	서킷에서 열리는 대회와 서킷이 아닌 장소에서 열리는 대회 각각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
국내 규정	FIA/ASN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
챔피언십/시리즈/대회특별규정	주최자	각 챔피언십 또는 시리즈와 그에 속하는 대회, 또는 챔피언십이나 시리즈에 속하지 않는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특별 규칙	주최자, 심사위원회	챔피언십/시리즈에 속한 특정한 대회에 적용할 변경/추가 사항이나 챔피언십/시리즈가 진행되는 도중에 규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
공식 통지	주최자, 레이스 디렉터, 심사위원회	• 규정으로 제정할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자세한 내용. • 규정의 내용 가운데 더 명확하게 해서 공식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사람. • 대회 진행 도중에 변화하는 상황이나 대회 중 주최자와 팀, 선수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경기 운영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

〈모터스포츠 규정의 종류 및 내용〉

제17조 대회(경기) 취소

17.1 대회 주최자가 계획한 국내 대회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대회 개최 15일 전까지 KARA에 공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7.2 국제 대회의 경우 해당 국제 대회 규정 및 FIA ISC 규칙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취소와 연기를 해야 하며 대회 취소 시 취소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제18조 공인 취소

KARA는 대회 시작 전, 대회 진행 중, 대회 후 해당 대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시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18.1 대회의 일방적인 취소 또는 변경, 대회 운영 미숙, 안전 조치 미이행, 기타 사업적 권리의 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

18.2 대회 준비 또는 대회 후 처리 및 해당 대회의 공인을 이용하여 대회 참가자 및 드라이버, 심판원, 관계자 등에 대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18.3 대회의 준비 또는 대회 후 처리 및 해당 대회의 공인을 이용하여 지역 및 일반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18.4 KARA 및 FIA의 명예나 권위를 실추하거나 이익을 저해하였을 경우

18.5 모터스포츠 일반의 이익을 저해하였을 경우

18.6 공인 취소의 경우 공인 인증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19조 대회 공인비의 반환

대회 주최자가 계획한 대회를 취소하고자 할 때 KARA는 다음의 경우에서 대회 공인비를 반환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대회 공인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19.1 천재지변으로 대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때

19.2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제20조 대회주최자에 대한 제재

KARA로부터 공인 받은 대회의 주최자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대회 개최를 포기할 경우 해당 대회 주최자는 당해 연도 대회주최 자격은 물론 차기 연도 대회 주최자 자격 또한 상실할 수 있다.

제21조 국제대회의 취소 및 변경, 연기에 대한 수수료

21.1 국제대회는 FIA 국제스포츠 캘린더에 등록되며 해당 대회가 변경 및 연기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한다.

21.2 취소 및 변경, 연기에 대한 수수료는 KARA가 지정한 금액을 지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21.3 지정한 기한 내에 미입금 시에는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22조 상업적 권리

대회의 상업적 권리는 KARA가 직접 주최, 주관, 경제적 후원 및 참여를 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경우 대회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경비의 부담

23.1 대회 주최자는 대회 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23.2 대회 주최자는 주관, 후원, 협찬 자와 함께 경비의 분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24조 손해의 책임

대회 주최자는 대회 준비, 대회 운영, 대회 사후 처리 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KARA는 KARA가 직접 주최 혹은 주관하지 않는 한 공인 대회의 경비 및 제반 비용과 손해에 대하여 일체 법적, 물적, 재산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 공인 명칭의 사용

KARA의 공인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공인 명칭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만약 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 명칭 사용 시 공인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벌칙을 가할 수 있다.

또한 KARA는 허가 받지 않은 공인 명칭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보험

국내대회(경기) 주최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KARA 사무국에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6.1 관중에 대한 보험

주최자(또는 시설 소유자)는 대회 개최 기간 중 관중에 대해 대회 중 사고에 의한 사망 또는 상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26.2 대회 참가자 및 드라이버, 오피셜, 관계자에 대한 보험

대회주최자는 대회 참가자 및 드라이버, 오피셜(심판원), 관계자에 대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제대회의 경우 FIA ISC 및 부칙, 해당 대회특별규정에서 요구하는 보험 가입 규정을 따라야 하며 규정에서 해당하는 합당한 보험증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인대회(경기)의 심판원(오피셜) 및 감독관

27.1 공인대회 운영은 KARA의 심판원 라이선스를 소지한 자 만이 운영할 수 있다. 위반 시 대회주최자에게 벌칙이 부여된다.

27.2 KARA는 공인된 대회에 1인 이상의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 대회(경기)의 심사

공인대회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3명 이상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KARA는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파견 할 수 있으며, 대회주최자는 KARA에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28.1 심사위원의 자격은 KARA에 심판원 A+ 혹은 S로 등록된 자.

28.2 FIA 또는 타 ASN 심판원 등록자로서 KARA가 특별히 인정한 자.

28.3 심사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은 제2장 국내스포츠규정 제10.9조, 제10.10조를 따른다.

제29조 대회(경기) 임원의 임명

대회주최자는 경기임원(레이스 디렉터, 경기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책임과 권한은 국내스포츠규정을 따른다.

제30조 응급 또는 비상 대책

대회 주최자는 안전한 대회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0.1 보험증서(대회참가자, 관중 보험)

30.2 대회 운영 계획서

a 오피셜배치도(코스, 피트, 안전, 의사)

b 차량배치도(엠뷸런스,구난차량, 코스카, 페이스카, 견인차)

c 의료대책 의사와 응급구조사, 앰블런스(운전자포함)가 포함된 3인 이상 응급팀이 최소 1팀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응급팀 수는 대회 규모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대회장 또는 주최자가 지정한 종합병원의 응급 담당자의 연락처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긴급환자 발생시 후송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0.3 의사는 응급의학과 또는 외과의사(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가 배치되어야 하며 대회장내에서 초록색의 오버올을 착용(Doctor 표시)하거나 의사의 신분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30.4 앰뷸런스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허가필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호흡기 및 심혈관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0.5 메디컬 체크는 의사 1명과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30.6 사고대비 유관기관 연락처(지정병원, 소방서, 경찰서)

30.7 국제 대회의 경우 Extrication 연습 및 일정제출

30.8 국제 대회의 경우 메디컬 센터 운영 계획서와 다음의 차량 배치를 권고 한다.

a. 소방지원차량(80리터 이상 소화액(물, 폼 소화액 등)이 들어 있는 탱크와 분사기 장착)

b. 특수 구조차(유압 커터, 전기톱, 크로우바, 플라이어 등)

대회주최자는 FIA ISC 부칙 H 및 표1의 대회종류별 응급팀 구성을 참고하여 응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회 종류별 응급팀 구성〉

대회종류	응급팀 구성
FIA 챔피언십 대회	ISC Appendix H 준수 (FIA Medical Inspection 필수)
국제(Zone 포함) 및 국내 챔피언십 대회	최소 2팀 이상의 응급팀 구성 (Extrication 팀 포함)
컵, 트로피, 챌린지 등(드래그, 드리프트)	최소 1팀 이상의 응급팀 구성
카트, 짐카나 대회 등	1대 이상 앰뷸런스 대기

제31조 공공기관의 협조

대회 주최자는 해당 대회가 개최되는 대회장 또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사전 협조 요청을 완료하여야 하고, 필요시 KARA에 협조 공문을 요청할 수 있다. KARA는 대회 주최자에게 공공기관 협조가 완료되었다는 증명 서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통보 의무

대회 주최자는 KARA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과 다른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KARA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공인 및 대회(경기) 주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 기타 자동차대회(경기) 승인 및 운영

이외의 내용은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자동차경기 국내규정집에 따른다.

제34조 기록 용어

국내 대회에서 사용되는 기록 및 용어들은 아래와 같다.

34.1 기록 결과 발표 순서 및 기록지 하단의 명기 내용

①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과 발표 (연습 제외)

- 국제 대회 경우

  Provisional Qualifying Result → Official Qualifying Result → Provisional Grid → Official Grid → Provisional Race Result → Official Race Result

- 국내 대회 경우

  잠정 예선 결과 → 공식 예선 결과 → 공식 그리드 → 잠정 결승 결과 → 공식 결승 결과

② 기록지 하단 명기할 내용들

- 잠정 결과
  - 조사 중인 사항
  - 세션 중 깃발 제시(흑백반기/오렌지볼기/흑기)와 해당 차량 번호
  - 세션 중 페널티 이행 여부
  - 의무 피트인 등 세션 동안 규정에 의거하여 지켜야 할 사항 이행 여부
  - 내구 레이스의 경우 피트레인 오픈/클로즈 시간
  - 적기 발령 시 제시된 랩과 그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 (ex. 전체 랩 축소, 2랩 미만의 경우 재대회 스타트 등)
  - 기타 대회 중 결정된 심사위원회나 경기위원회의 결정 사항
- 공식 결과
  - 잠정 결과에 명시되었던 내용
  - 심사위원회 결정 사항 ('조사 중' 또는 '심사 중'으로 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결과)

34.2 기록 용어 표기

용어 표기	의미	내용
DNS(Did Not Start)	해당 대회 출발을 못함	• 해당 세션 공식 참가 엔트리는 있으나 해당 세션에 불참한 경우
DNF(Did Not Finish)	사고 또는 기타 문제로 체커기를 받지 못함	• 결승(Race)에 한하여 사용 • 마지막 랩에서 사고 또는 기타 문제로 체커기를 받지 못하거나, 피트로 들어왔을 때도 해당 됨
RET(Retire)	사고 또는 기타 문제로 중도 포기	• RET의 경우 'Retire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 • 'DNF'와 병용하여 사용 할 수 있음
DNQ(Did Not Qualified)	예선 탈락	• 일정한 예선 통과기준을 미 충족(ex. 선두 3명, Best Lap평균x107%) • 해당 대회특별규정에 의거, 예선 탈락자는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결승(Race) 특별출주 가능 • 기록 프로그램에 따라 'DNC'로 표시되기도 함
DNC(Did Not Classified)	결승 완주 실패	• 일정한 결승 완주 기준 (ex. 해당 클래스 선두 기준 75%)을 미 충족 • 순위 및 포인트 불인정 • 'NC'로 기재되기도 함 • 기록 프로그램에 따라 'DNQ'로 표시되기도 함
DQ(Disqualified)	실격	• 심사위원회 최종 결정에 의해 해당 세션 실격처리 • 기록 프로그램에 따라 'DSQ'로 표시되기도 함
EX(Exclusion)	제외	• 심사위원회 최종 결정에 의해 해당 Round 전체 실격처리 • 해당 Round의 모든 기록 및 결과는 불인정되며 삭제처리 됨
Suspension	자격정지	• 심사위원회, ASN 또는 FIA 결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 자격정지 • 심사위원회 자격정지는 해당 대회에 한하며, ASN 또는 FIA 자격정지의 경우 해당 국가 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 대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4.3 영문 기록 용어 국내 표기

영문 용어	국내 표기	비고
Provisional	잠정	
Official	공식	
False Start	부정 출발, 플라잉 스타트	
Exceeding/Over(off) Track Limit	코너 컷팅, 코스이탈주행	
Reprimand (Blame)	훈계 〈 주의 〈 경고 〈 엄중경고 등	Reprimand 〈 Blame (강도가 더 높음)
Fine	벌금	
Time Penalty	타임 페널티	초 가산 벌칙에 사용
Drop of grid positions	그리드 다운, 그리드 강등	
Drop of places in the classification	순위 조정, 순위 강등	
Drive through penalty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Stop and go xx sec	스탑앤고 xx초 페널티	피트 내 지정된 페널티 구역에서 진행
Pit Lane over Speed	피트레인 속도 위반	
Investigation / should(will) be investigated	해당 상황에 대한 조사	잠정 결과에서 '조사 중' 또는 '심사 중'으로 표기
Pushing, Contact with	푸싱, 접촉	

제35조 시행

위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시리즈 등록 신청서

□ 대회 시리즈 등록 신청서(Event Series Application Form)

1. 대회 주최자 정보(Organizer Information)

주최자명 Name of Organizer			대표자 이름 Name of President	
주소 Address				
웹사이트				
담당자 Contact Person	이름 Name		전화번호 Tel	
	휴대폰 Mobile		이메일 Email	

2. 대회 정보(Event Information)

대회명칭 Name of Event							
대회종류 Type of Event	□ 서킷 레이스 Circuit Race	□ 카트 Kart	□ 랠리 Rally	□ 짐카나 Gymkhana	□ 드래그 Drag	□ 드리프트 Drift	□ 기타 Other
대회구분 Status of Event	□ 국제경기 □ 국내경기						
특이사항 Only for National Event	□ 챔피언십 포함 대회 □ 해외선수 참가 가능						

클래스 Class	클래스 Name of Class	경기 방식 Event Type	참가 라이선스 Min Req license	차량 종류 Type of Vehicle	무게/출력 비율 Weight/Power ratio

* 경기 방식은 스트린트, 타임 트라이얼 등 을 표기 하시면 됩니다.

3. 경기 책임 오피셜(Senior Race Officials)

직책 Role	이름 Name	휴대폰 Mobile	이메일 Email	License No.
심사위원장 Chief Steward				
심사위원 Steward				
심사위원 Steward				
경기위원장 Clerk of the Course				
사무국장 Secretary of the Meeting				

기록위원장 Chief Timekeeper				
기술위원장 Chief Scrutineer				
피트위원장 Chief Pit Marshal				
패독위원장 Chief Paddock Marshal				
코스위원장 Chief Track Marshal				
안전위원장 Chief Safety Marshal				
의료담당 Chief Medical				

4. 대회 일정(Date of Event)

Round	날짜 Date	서킷 Circuit	클래스 Class
1			
2			
3			
4			
5			
6			
7			
8			

상기의 시리즈를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KARA 자동차경기 국내규정 및 부칙에 준수하여 개최할 것을 서약하며,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The above Organizer applies for Event Series Application Form, which will be held under the International Sporting Code of the FIA and KARA National Sporting Rules accordingly.

[첨부사항]
경기 운영규정, 경기 기술규정, 시리즈 등록비

2021년 월 일

대회주최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귀중]

별지 2 공인허가신청서

□ 대회공인허가신청서(ORGANIZING PERMIT APPLICATION FORM)

1. 주최자 정보(Organizer Information)

주최자명 Name of Organizer		담당자 Contact Person	
휴대폰 Mobile		이메일 Email	

2. 대회 정보(Event Information)

대회명칭 Name of Event							
대회일정 Date/s of Event							
대회장소 Venue				총 길이(km) Distance of Circuit			
대회종류 Type of Event	□서킷레이싱 Circuit Racing	□ 카트 Kart	□ 랠리 Rally	□ 짐카나 Gymkhana	□ 드래그 Drag	□ 드리프트 Drift	□ 기타 Others
클래스 Class	No	클래스명 Name of Class		라이신스 제한 Min Req License		스타트 방식 Start Type	
	1						
	2						
	3						
	4						
	5						
	6						
참가 접수기한 Entries Open/Close							
운영규정 변경사항 Amendment of Sporting Reg							
기술규정 변경사항 Amendment of Technical Reg							

3. 경기 책임 오피셜(Senior Race Officials)

직책 Role	이름 Name	휴대폰 Mobile	License No.
심사위원장 Chief Steward			
심사위원 Steward			
심사위원 Steward			

경기위원장 Clerk of the Course			
사무국장 Secretary of the Meeting			
기록위원장 Chief Timekeeper			
기술위원장 Chief Scrutineer			
피트위원장 Chief Pit Marshal			
패독위원장 Chief Paddock Marshal			
코스위원장 Chief Track Marshal			
안전위원장 Chief Safety Marshal			
의료담당 Chief Medical			

4. 응급 대책 정보(Risk Management Plan Information)

보험회사명 Name of Insurance				
보험내용 Coverage of Insurance	보상 범위:			
오피셜 배치 Official Arrangement	☐ 코스 (Course) ☐ 피트 (Pit) ☐ 안전차량 (Safety cars)			
병원 정보 Hospital Information	후송병원 Name of Hospital		대회장소와의 거리 Distance	
	주소 Address			
	담당자 이름 Contact Person		연락처 Mobile	
의사 Doctor	-이름(Name): -휴대폰번호(Mobile): -의사 면허증(License) No: -전문의 자격증 No: ☐외과(Surgery) ☐응급의학과(Emergency)		-이름(Name): -휴대폰번호(Mobile): -의사 면허증(License) No: -전문의 자격증 No: ☐외과(Surgery) ☐ 응급의학과(Emergency)	
의료 팀 Medical Team	☐ 1개 팀 (One) ☐ 2개 팀 (Two) ☐ 3개 팀 이상 (Three or More) (의료 1개 팀 구성 :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앰뷸런스(운전자포함) 3인 이상)			
의사 복장 Doctor Uniform	☐ 착용 (Uniformed) ☐ 미착용 (Un-uniformed)			
앰뷸런스 Ambulance	☐ 특수 구급차 (Special Ambulance) ☐ 일반 구급차 (General Ambulance)			
메디컬 체크 Medical Check	일정 Time		장소 Venue	
유관기관 정보 Institution Information	경찰서 Name of Police		연락처 Tel.	
	소방서 Name of Fire		연락처 Tel.	

	station			
*Extrication Practice Time (선수 구난 훈련)	일정 Date & Time		장소 Venue	

*** 'Extrication Practice' 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오피셜 등이 참여하는 구난 및 응급처치 훈련으로 모든 서킷 레이스에 권장되며 챔피언십 대회와 국제대회에는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5. 대회주최자 주요 체크리스트(Organizer Checklist)

구분 classification	내용 Contents
대회 전 Event Before	① 대회공인 신청과 관리는 '국내규정집 제7장 등록규정' 의거하여 관리 ② 대회참가자 접수는 KARA 유효 라이선스 소지자에 한하여 참가자 접수 (대회 기간 중 경기장에서 라이선스 발급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라이선스 취득 필요) ③ 오피셜 조직 소개자료 또는 대회 브로슈어에 심사위원 3명에 이름을 반드시 표기 ④ 대회 브로슈어에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 로고 표출 ⑤ 시즌 중 대회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규정을 대회담당자 이메일 또는 kara@kara.or.kr 로 접수하여 규정 심의를 거쳐 승인되며, 변경된 규정을 위의 '2. 대회정보/운영규정, 기술규정 변경' 란에 기입
대회 중 Event During	⑥ 대회사무국은 경기 결과, 보고서 등의 게시판 공지 후, 심사위원실에 별도 보관(감독관 용) ⑦ 모든 공식 보고서에는 우측 상단 KARA 로고 표출 ⑧ 대회 중 발생되는 각종 벌금은 KARA 사무국에 5일 이내에 입금 내역과 함께 납부 (입금 계좌 정보: 국민은행 5986-0104-0819- 65, 예금주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대회 후 Event After	⑨ 대회 종료 후 5일 이내에 각종 기록, 보고서 등을 전자파일로 KARA 사무국에 접수 ⑩ 대회참가 오피셜 활동비는 대회종료 후 3주 내에 지급(늦어도 60일 이내 지급)

FIA의 국제스포츠규정과 KARA의 국내스포츠규정 및 그 부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하며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 위와 같이 대회 공인을 신청합니다.
The above organizer applies for an organizing permit for the above event, which will be held under the International Sporting Code of the FIA and relevant National Sporting Rules accordingly.

[구비사항]
□ 경기 운영/기술/특별규정
□ 경기 공인비

2021년 월 일

주최단체:

신청인(이름): (서명 또는 인)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귀중

별지 3 의료 계획(Medical Plan)

※ 국내 서킷 레이스 의료계획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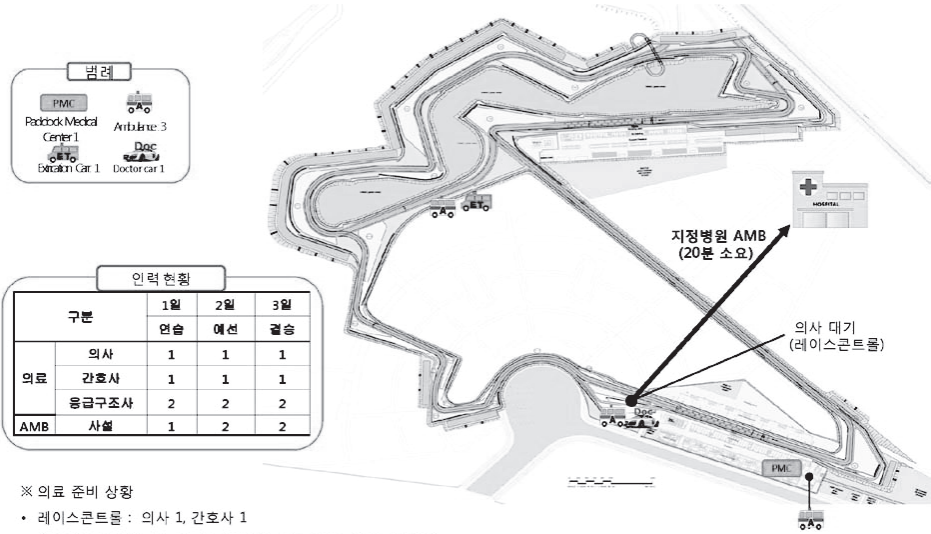

인력 현황

구분		1일	2일	3일
		연습	예선	결승
의료	의사	1	1	1
	간호사	1	1	1
	응급구조사	2	2	2
AMB	사설	1	2	2

※ 의료 준비 상황

- 레이스콘트롤 : 의사 1, 간호사 1
- 응급탈출팀(Extrication) : 응급구조사 4(소방관2, 응급구조사2)
- 경기장 도착 08:00(브리핑, 무전기, 배치등 안전위원장 확인)
- 담 당 : CMO(이름, 연락처) / 지정병원(이름,연락처) / 경기위원장(이름 ,연락처) / 사무국장(이름 ,연락처)

제8장
자동차경주장 국내 공인 및 검수 규정

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21년 1월 1일

제1조 총칙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라 한다)는 자동차경주대회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자동차경주장의 공인에 관하여 국제자동차연맹(이하 FIA라 한다)의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O항(Appendix O)를 근거로 본 규정을 정한다.

제2조 공인 및 대회의 개최

공인 자동차경주 대회에 사용되는 경주장은 FIA와 KARA의 공인을 필요로 한다. FIA에서 공인된 경주장을 국제 공인 경주장으로 한다.
KARA에 의해 공인된 경주장을 국내 공인 경주장으로 한다.
국제 공인 경주장에서는 FIA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공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내 공인 경주장에서는 KARA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공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국내 공인 자동차 경주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상설 : 경주장의 모든 시설이 항상 설치되어 있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경주장
2. 준상설 : 경주장의 시설이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영구적으로 대회 개최 때마다 사용될 수 있는 경주장
3. 임시 : 경주장의 모든 설비가 임시로 설치되어 있어 특정 대회에 사용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건설되는 경주장

제4조 공인 신청 자격

KARA에 경주장 공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경주장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며 공인 후 공인 신청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 그 시점에서 해당 경주장의 공인은 무효가 된다.

1. 상설 : 경주장을 소유한 법인·단체 또는 해당 경주장의 운영을 위임 받은 단체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2. 준상설 : 경주장을 소유한 법인·단체 또는 해당 경주장의 운영을 위임 받은 단체 또는 공인기간 동안 해당 경주장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이 되어 있는 단체가 신청 할 수 있다.
3. 임시 :

1) 신청하는 경주장을 소유한 법인·단체 또는 해당 경주장의 운영을 위임 받은 단체 또는 공인기간 동안 해당 경주장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이 되어 있는 단체

2) 신청자는 경주장 소유자로부터 대회 개최에 필요한 기간 동안 유효한 사용 계약을 완료 한 단체

제5조 공인 절차

국내 공인 경주장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 공인 신청자는 소정의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구비하고 신청비용과 함께 대회 개최 3개월전까지 KARA에 신청 한다.

2. 갱신 : 갱신 절차는 공인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신청서 및 첨부 자료를 구비하고 신청비용과 함께 KARA에 제출한다.

▣ 첨부 서류 (각 1부 : 인쇄본과 전자문서)

1) 대회 내용 설명서 (신규 또는 변경시에만 제출) :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자동차대회 및 그 참가 차량의 등급을 상세히 기입한다. 또한 임시 경주장의 경우 해당 대회의 특별 규칙서 초안을 함께 제출한다.

2) 지도: (신규 또는 변경시에만 제출) 50,000분의 1 이상의 정확한 지도에 다음의 소재를 기입한다.

(1) 경주장의 위치

(2) 지정 병원의 위치 (등급 표시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3) 주요 도로의 진입로 또는 근처 철도에서의 진입로

(4) 소방서

(5) 경찰서

3) 경주장의 도면 : (신규 또는 변경시에만 제출) 경주장의 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할 것

(1) 경주장의 기본 설정

① 주행방향 ② 횡단 경사 ③ 종단 구배 ④ 곡률 ⑤ 총 수용 관중 ⑥ 총 스탠드

좌석 ⑦ 주차장 수용대수(관람객용)

(2) 라인

① 출발선 ② 결승선 ③ 계측 라인 ④ 적기 라인

(3) 대회용 시설

① 관제실(레이스 콘트롤) ② 사무국 ③ 계측실 ④ 심사위원실 ⑤ 오피셜 포스트

⑥ 스타트 포스트 ⑦ 피트 ⑧ 검차장 ⑨ 트랙 CCTV

(4) 설비

① 피트 진입 경보 장치 ② 계측기 ③ 신호등

(5) 피트 구역

① 피트 입구 로드 ② 피트 출구 로드 ③ 피트레인, 패스트 레인, 작업 레인 ④ 페널티 스톱 구간 ⑤ 피트 입구 및 출구 신호등 ⑥ 피트 개러지 ⑦ 시그널 플랫폼

(6) 트랙 방호시설 및 측면시설

① 모바일 월 ② 가드레일 ③ 타이어 배리어 ④ ①~③ 이외의 방호시설 ⑤ 서비스로드 ⑥ 연결통로 ⑦ 연석 ⑧ 자갈지역(gravel bed) ⑨ 관중석 ⑩ 교량 ⑪ 기타 시설

(7) 기타

① 의무실 ② 헬기장 ③ 주차장 ④ 주유소 ⑤ 미디어 센터 ⑥ 브리핑 룸

4) 코스 및 시설의 설명서 : (신규 또는 변경의 경우 미제출)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재한다.

(1) 코스

① 경주장의 개요 : 총면적, 트랙면적, 피트 면적, 패독 면적, 검차장 면적, 주차장 면적

② 트랙의 길이(m) : FIA 대회규칙 부칙 O 에 의거 측정한 값

③ 코스의 폭 : 트랙의 최대 폭과 최소 폭, 안전지대의 최대 폭과 최소 폭 기재

(2) 신호등

① 스타트 신호 형태 ② 포스트 신호의 형태

(3) 응급 시설

① 의무실 개요 ② 지정병원 개요(등급 및 경주장에서의 거리, 소요시간) ③ 설비 및 비품 ④ 구급차 대수 ⑤ 구조용 차량 및 대수 ⑥ 소화기 보유 종류 및 개수

(4) 기타 KARA가 요구하는 사항

제6조 경주장의 검수

KARA는 FIA가 정하는 규칙·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한다. 단 경주장의 지리, 지형 등 특수한 조건 및 개최되는 대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FIA가 정하는 규칙·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본 검수는 KARA가 경주장의 안전에 대한 권고와 지도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1. 검수

1) 경주장의 검수는 다음의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1) KARA의 공인 경주장으로 신규 또는 갱신 시 실시

(2) 모든 공인 경주장은 매년 공인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안전 및 기본시설에 대한 검수를 실시한다. 실시 항목은 다음과 같다(관련 세부 사항은 ISC Appendix O. 12조 참조).

① 트랙 표면 ② 트랙 가장자리 및 버지(verges) 구역 ③ 가드레일 ④ 타이어 배리어 ⑤ 관람객 및 안전펜스 ⑥ 연석 ⑦ 배수 및 배수구 ⑧ 서비스로드 ⑨ 서킷 마킹 상태 ⑩ 포스트 사이의 시야확보 ⑪ 통신 ⑫ 자갈 지대 ⑬ 복구된 배리어 상태

(3) 기존 KARA 공인 경주장에서 코스 또는 시설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KARA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임시 대회장의 경우 경주장 공인 신청자는 신청자 및 대회 주최자는 대회 2주 전까지 검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임시로 시행되는 검수

(1)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공인 신청자 또는 대회 주최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거나 KARA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검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

2. 검수자는 FIA 또는 KARA가 지명하는 사람이 실시하며 검수 중 언론 등 관계자 이외의 입회는 금지된다.

3. 검수자는 라이선스의 신규 또는 갱신 시 다음항목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한다.

   1) 경주장에 적합한 최고 공인 대회의 결정

   2) 경주장에 적합한 대회 차량의 구분과 최대 출전 대수 산정

   3) 피트레인의 통과 속도 및 피트 설비의 확인

   4) 경주장 상황 전반의 확인

   5) 관람객 방호 시설의 확인

   6) 소화 및 구급 의료 시설, 차량 및 장비의 확인

   7) 대회장내 통신 설비 전반의 확인

4. 기타 필요한 사항

   KARA는 공인 신청자에게 검수의 일정, 경비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연락 및 확인을 한다. 검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인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7조 검수 결과 보고

KARA는 검수 종료 후 검수 보고서를 공인 신청자에게 검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달한다. 공인 신청자는 검수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기 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그 보고서는 최종본으로 확정되며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및 완성 시한 등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신청자가 받아들인 것으로 한다.

검수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KARA와 공인 신청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는 경우 KARA가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만약 코스에 복수의 레이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검수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다.

제8조 공인 라이선스의 발급

대회장 라이선스는 검수 시 제기한 모든 권고 및 지도, 최종 검수 보고서에 따른 필요 조건을 라이선스 유효 기간동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KARA 국내 공인 경주장 라이선스" (이하 라이선스)가 발급된다. 라이선스는 경주장에서 안전의 최소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KARA는 라이선스를 철회, 정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 KARA는 경주장의 최소 안전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경주장의 안전 담당자자는 대회 개최 시 안전과 관련된 조직에 관여하고 있어야 한다.)

2.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FIA 또는 KARA가 인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 안전 기준에 따라 정해진 유효기간 까지만 적용된다.

3. KARA는 라이선스와 별도로 매년 공인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안전시설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며 해당년도 말까지 유효한 허가증을 발급한다. 안전시설의 검수 시 최소 안전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공인대회의 개최를 제한하거나 라이선스를 철회, 정지 할 수 있다.

4. 라이선스를 취득한 자는 FIA 국제스포츠규정 및 KARA 국내스포츠규정 및 기타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각 경주장은 ISC 부칙 H항 부록 1에 있는 응급 서비스 및 관측 신호와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각 테스트에서의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

5. 경주장에서는 FIA 또는 KARA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수 당시 경주장 구성과 설치 방법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6. 안전 표준에 따라 작성된 경주장의 라이선스 발급 후 테스트, 연습, 각종 대회에서 자동차의 운전석이 크게 훼손되거나 사망 등 심각한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주장 담당자는 세부 리포트 작성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상황에 따라 선수의 부상, 자동차/경주장에 대한 손상에 대한 내용이 제출되어야 한다. 국가 당국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KARA는 FIA에 가능한 자동차 비디오 녹화 또는 사고 직후 장면, 차에서 나온 팀 데이터 기록, 차의 상태에 대한 엔지니어의 보고서, 의료 보고서, 오피셜 등 목격자 보고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7. 라이선스의 내용

   1) 공인의 종류

   2) 유효기간

3) 트랙의 길이

4) 진행 방향

5) 폴 포지션(Standing & Rolling Start)

6) 최대 결승 출전 대수

7) 개최 가능 경기의 형태

8) 출전 가능 차량의 등급

9) 피트레인 통과 속도

10) 기타

제9조 유효 기간

상설 및 준 상설 경주장 라이선스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시 경주장의 라이선스 유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대회 개최 기간 동안으로 한정된다.

제10조 갱신 기간

갱신 기간은 매년 11월 말일까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11조 임시 허가

갱신 신청 시에 검수를 실시한 결과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최종 완료까지 최대 12개월의 기간이 주어지며 그 동안은 조건부 임시 허가증이 발급된다.

제12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 규정

제1장
국제스포츠규정
(International Sporting Code)

제정	199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1월 1일
개정	1998년 1월 1일	개정	2011년 1월 1일
개정	1999년 1월 1일	개정	2012년 1월 1일
개정	2000년 1월 1일	개정	2013년 1월 1일
개정	2001년 1월 1일	개정	2014년 1월 1일
개정	2002년 1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03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2005년 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06년 1월 1일	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21년 1월 1일
개정	2009년 1월 1일		

본 규정은 국제스포츠규정(FIA International Sporting Code, 이하 국제스포츠규정)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국내스포츠규정이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내용은 국제스포츠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제스포츠규정의 영문과 국문의 해석이 다를 경우, 영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1조 총칙

제1.1조 모터스포츠의 국제규정

1.1.1 국제자동차연맹(The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이하'FIA')은 안전과 스포츠의 공정성 원칙에 바탕을 둔 규정을 만들고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자동차 경기와 기록을 촉진하고 통제할 목적을 가지며, FIA 국제챔피언십을 조직하는 유일한 국제경기 기구다.

1.1.2 FIA는 이로부터 제기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 국제 항소재판소다. 1, 2, 3륜 차량에 관해서는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Motocyclisme)이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1.3 적용 가능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FIA와 그 임원, 대리인, 직원, 디렉터 또는 오피셜이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 결정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된 청구, 비용, 손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사기 행위는 이에 제외된다.

제1.2조 국제스포츠규정

1.2.1 위의 권한이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FIA는 이 국제스포츠 규정과, 그에 따른 모든 부칙을 포함하여 제정한다.

1.2.2 국제스포츠규정의 목적은 국제 모터스포츠를 규제,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1.2.3 이러한 목적은 경기 또는 참가자의 참가를 막거나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다. 단, FIA가 모터스포츠의 안전, 공정, 또는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다.

제1.3조 규정의 숙지와 복종

1.3.1 경기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는,

1.3.1.a FIA의 정관과 규정, 그리고 국내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3.1.b 위 사항 및 스포츠 기구의 결정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예외 없이 복종할 책임을 진다.

1.3.2 이러한 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가하는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이든 그에 대해 발급된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으며, 어떤 제조자든 FIA 챔피언십에서 일시 또는 영구 제명될 수 있다. FIA 및 ASN은 그러한 결정의 이유를 밝힌다.

1.3.3 차량이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성능에 이익을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제1.4조 모터스포츠의 국내 총괄

1.4.1 하나의 ASN은 그 단체가 있는 나라의 권력 안에 있는 모든 영토에서 국제스포츠 규정을 집행하고 모터스포츠를 관할하는 유일한 국제적 스포츠 권한을 가지는 단체로 FIA에서 승인한다.

1.4.1.a 국내총괄권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 : 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는 FIA에 의하여 대한민국 ASN(National Sporting Authority)으로 승인되어, FIA의 정관 및 국제스포츠규정을 승인하고, 국내의 자동차경기를 관리, 총괄하는 유일한 권능단체다.

1.4.2 각 ASN은 국제스포츠규정에 구속된다.

제1.5조 영토 내 스포츠 권한의 행사

국가 내 비자치 영토는 해당 국가에서 FIA를 대표하는 ASN이 행사하는 스포츠권한의 적용을 받는다.

제1.6조 스포츠 권한의 위임

각 ASN은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 부여된 권한 가운데 전체 또는 일부를 그 나라안의 다른 클럽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FI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스포츠 권한의 위임 철회

ASN은 FIA에 권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하는 것으로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제1.8조 국내경기 규칙

각 ASN은 자체 국내경기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FIA에 제공해야 한다.

제2조 경기 – 총괄 조건

제2.1조 총괄 원칙

2.1.1 국제스포츠규정의 일반 적용

2.1.1.a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있는 나라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기는 국제스포츠규정의 지배를 받는다.

2.1.1.b 그러나 클로즈드 경기 그리고 국가 내 기록 도전은 국내스포츠규정의 지배를 받는다. 국내스포츠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국제스포츠규정이 적용된다.

2.1.2 경기 조직

모든 나라에서는 다음 주체가 경기를 조직할 수 있다.

2.1.2.a ASN.

2.1.2.b 자동차 클럽, 또는 예외적으로 자격을 얻은 다른 스포츠 그룹. 단, 이들 클럽 또는 단체는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3 공식 문서

2.1.3.a 기록 도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는 FIA 규정 안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식 문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 문서에는 특별규정, 참가 신청 서식 및 공식 프로그램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잠정과 최종 순위는 연습, 예선, 히트(적용 가능한 스포츠 규정에서 최종 순위 대신 특정 순위의 발표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결승전에서 각각 발표되어야 한다.

2.1.3.b 이들 공식 문서에 포함된 조건 중 무엇이든 국제스포츠규정에 반할 경우에 그 조건은 무효가 된다.

2.1.4 경기에 관련된 모든 문서에 포함되는 문구

2.1.4.a 어떤 경기든 그에 관련된 모든 특별규정, 공식 프로그램, 그리고 참가 신청 서식은 다음 문구(부칙을 포함한 FIA 국제스포츠규정 및 ASN의 국내경기규정에 따라서 개최되는)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1.4.b 국내스포츠규정이 발표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 문구는 다음과 같이(부칙을 포함한 FIA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서 개최되는) 줄인다.

2.1.5 비공인 경기

2.1.5.a 강령 또는 해당 ASN 규칙에 따라 조직되지 않은 경기 또는 제안된 경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2.1.5.b 조직 구성이 허가된 이벤트에 이러한 경기가 포함된 경우, 조직 허가는 무효가 된다.

2.1.5.c 이러한 대회는 선수가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ASN의 캘린더 및 국제 스포츠 캘린더에 등록된 시리즈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2.1.6 경기의 연기 또는 취소

2.1.6.a 경기는 불가항력적인 이유 또는 안전을 이유로만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

2.1.6.b 24시간 이상 연기 또는 취소된 경우에 참가비는 반환된다.

2.1.7 경기는 사무국 관련 업무 그리고/또는 검차 시작 시각에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경기 종료는 아래 두 가지 업무 모두 마치는 시점이다.

2.1.7.a 위 내용은 항의 또는 항소 기한 또는 모든 심리가 끝났을 때를 의미한다.

2.1.7.b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 수행된 사무국 업무 및 경기 후 차량 검사가 끝났을 때.

2.1.8 국제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일부에 속하는 어떤 경기도

FIA에게 공인을 받지 않으면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들어갈 수 없다.

2.1.9 국제스포츠규정에 정의된 것과 같이 FIA의 포뮬러, 카테고리, 또는 그룹에게 개방된 어떤 국내 또는 국제경기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자동차는 FIA 기술규정의 모든 면을 준수해야 하며, 이들 규정에 대한 공식 해명은 FIA가 제공한다. ASN은 FIA에게 명시적으로 서면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이들 FIA 기술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2.2조 국제경기

2.2.1 국제 수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기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2.2.1.a 국제 서킷 경기에 대해서는, 관련 서킷은 참가 자격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적절한 등급의 FIA에서 발급한 공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1.b 국제 랠리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랠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2.1.c 경기 참가자와 선수는 해당 국제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1.d 기록 도전을 제외한 경기는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들어 있어야 한다.

2.2.2 국제스포츠캘린더 등록은 FIA의 재량이며 그 경기가 열리는 나라의 ASN을 통해서 신청되어야 한다. 신청이 거부될 경우 FIA는 그 이유를 밝힌다.

2.2.3 국제경기만이 국제챔피언십(컵, 챌린지, 그리고 트로피) 또는 시리즈의 일부가 될 수 있다.

2.2.4 FIA의 이름을 보유하는 국제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포함되는 국제경기는 FIA의 경기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

2.2.5 모든 국제경기에 대해서 ASN은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 정립된 국제규정과 함께 ASN의 규정 및 이 경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그 나라 안에서 적용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을 가진다.

2.2.6 선수, 팀, 또는 다른 나라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FIA 또는 그 ASN이 관할하지 않는 국제경기에(국제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시리즈 포함) 참가해서는 안된다.

2.2.7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팀 또는 선수가 특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할 경우, 이를 "제한된"(Restricted) 경기라고 한다. 예를 들어, 초청에 따른 경기는 "제한된" 경기가 된다. 특수한 상황이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O의 특례 요건을 구성한다면 FIA는 ASN이 국제스포츠캘린더에 "제한된" 국제경기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국내경기

2.3.1 국내경기는 규정과 조직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국내경기 규칙을 통한 권한 포함) ASN의 경기 지휘 감독 아래에 전적으로 놓임과 동시에 국제스포츠규정을 준수 한다.

2.3.2 다음 예를 제외하고 국내경기는 담당 ASN이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가진 팀과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2.3.3 국내경기는 국제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포함될 수 없으며, 국제 순위를 매길 때에 포함될 수도 없다.

2.3.4 국내경기는 담당 ASN의 재량에 따라서 타 ASN으로부터 발급된 라이선스 보유자도 받아들일 수 있다.

2.3.5 모든 국내경기는 이를 공인한 ASN의 국내캘린더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3.6 해외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경기에 참가 가능하다.

2.3.6.a.i 만약 국내경기가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외국 라이선스를 보유한 선수와 경쟁자는 해당 ASN의 단독 재량에 따라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순위에서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해당 챔피언십 또는 시리즈의 순위에서 포인트 배분은 경기에 참가한 외국 라이선스 보유자를 포함하고 계산될 수 있다.

2.3.6.a.ii FIA 존(Zone) 챔피언십의 일부를 이루는 국내경기에 대해서는 Appendix Z의 제7.2조와 제7.3조를 적용한다.

2.3.6.a.iii FIA가 승인한 F4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경기에는 위의 2.3.6.a.i 항이 적용된다.

2.3.6.b 다른 ASN의 라이선스 보유자의 경기참가를 허가한 ASN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공식 문서에 (특히 참가 신청 서식에) 보이도록 해서 FIA 그리고 경기 참가자와 선수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2.3.6.b.i 서킷이 FIA가 정한 경기용 자동차의 범주에 부합하는 유효한 FIA 국제 공인 서킷, 또는 관련된 ASN이 발급한 국내 공인 서킷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2.3.6.b.ii 서킷의 공인 라이선스에 따른 경기 참가가 허가된 자동차의 범주에 관한 정보.

2.3.6.b.iii 그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수 라이선스의 등급에 관한 정보.

2.3.7 해외에서 열리는 국내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쟁자와 선수는 소속 ASN의 허가를 받아야만 참가할 수 있다.

2.3.7.a 위의 허가는 해당 ASN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3.7.b 주최자는 ASN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팀 또는 선수를 엔트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ASN의 사전 승인이 없는 선수 또는 팀의 엔트리를 포함시킬 경우 ASN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ASN의 재량에 따라 벌금 또는 기타 벌칙을 부과한다.

2.3.7.c 오로지 ASN의 국내 캘린더에 등록된 경기에 대해서는, ASN이 그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해서만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2.3.8 국내 또는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가 특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할 경우, 이를 "제한된" 경기로 부를 수 있다. 초청에 따른 경기는 제한된 경기가 된다.

2.3.9 클로즈드 경기는 ASN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여러 클럽이 개최하는 협정을 승인할 수 있다.

제2.4조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와 시리즈

2.4.1 국제챔피언십

2.4.1.a FIA만이 국제챔피언십을 허가할 수 있다.

2.4.1.b 국제챔피언십은 FIA 또는 FIA에게 서면으로 인정을 받은 단체만이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챔피언십 주최자는 경기주최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4.1.c FIA 이름을 쓰는 국제챔피언십은 FIA 또는 FIA가 서면으로 인정한 단체만이 조직할 수 있으며 "세계"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는 (또는 어느 언어에서든 "세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비슷한 뜻의 어떤 단어든) 적용되는 규정이 적어도 다음의 요구 조건을 준수하며 전체 시즌에 걸쳐서 평균으로 적어도 네 개의 자동차 제조사를 참가시키는 추가 필수 조건 안에서만 가능하다.

2.4.2 국제 컵, 트로피, 챌린지 그리고 시리즈

2.4.2.a 컵, 트로피, 챌린지 그리고 시리즈는 같은 규정으로 관할되는 여러 개의 경기, 또는 하나의 경기로 구성될 수 있다.

2.4.2.b 국제경기만이 국제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를 구성할 수 있다.

2.4.2.c 모든 국제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는 신청한 ASN이 먼저 FIA로부터 서면승인을 받아야 조직될 수 있으며 승인을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2.4.2.c.i 특히 안전 측면을 고려한 경기규정과 기술규정

2.4.2.c.ii 캘린더 등록 여부

2.4.2.c.iii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경기가 열리는 ASN으로 부터 받은 사전 허가(날짜 포함)

2.4.2.c.iv 레이스를 위한 서킷의 공인이 참가 자동차의 범주에 적합한지, 그리고 모든 경기에 대하여 안전과 의료 지원에 관한 모든 FIA 규정이 준수되는지에 대한 검증.

2.4.2.c.v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타이틀이 지리적 범위, 그리고 모든 기술 및 경기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증.

2.4.2.d FIA 이름을 쓰는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는 FIA의 소유이며 FIA 또는 FIA가 서면으로 인정한 단체만이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주최자는 경기의 주최자와 같은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2.4.3 "세계(월드)" 명칭의 사용

2.4.3.a FIA 이름을 쓰는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및 해당 경기는 적어도 다음 요구 조건을 준수하며 전체 시즌에 걸쳐서 적어도 평균 네 개의 자동차 제조사를 참가시키는 추가 필수 조건 안에서만 "세계"(또는 어느 언어에서든 "세계"에서 파생되어나온 비슷한 뜻의 모든 단어) 라는 단어가 포함된 타이틀을 쓸 수 있다.

2.4.3.b FIA 이름을 쓰는 국제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및 해당 경기는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세계” 라는 단어(또는 어느 언어에서든 “세계”에서 파생되어 나온 비슷한 뜻의 모든 단어)를 타이틀에 포함할 수 없다. 일반 규칙으로서, FIA는 다음 필수 조건에 부합하며 FIA가 이를 허가하는 것이 스포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만 허가를 한다. 경기가 이들 요구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에는 FIA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4.3.b.i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캘린더는 같은 시즌 동안에 적어도 3개 대륙에서 열리는 경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4.3.b.ii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가 단 하나의 경기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이 하나의 경기에 참가할 경기 참가자를 선발하는 기능을 하는 히트, 경기, 또는 다른 시리즈는 적어도 3개 대륙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이 경기들은 국제스포츠캘린더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4.3.b.iii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다른 곳에 서술되어 있는 모든 권리 또는 권한에 더해서, FIA는 “세계”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거나 사용이 신청된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어떤 경기든 국제스포츠규정 및 적용되는 규정의 원칙이 완전히 준수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주최자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주최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FIA가 서킷 전체 그리고 모든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조사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4.3.b.iv 관련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주최자는 각 경기에 대해서 FIA가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심사 명단 가운데서 적어도 한 명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는 심사위원회의 의장 직무를 수행하며 경기 동안에 기록된 어떠한 심각한 규칙 위반이나 부정사항을 FIA와 경기를 제청한 ASN 그리고 경기가 개최되고 있는 영토의 관할 ASN에게 보고해야 한다.

2.4.3.c FIA는 “세계”라는 용어를 오래 전부터 관습으로 써 왔다는 사실을 입증한 시리즈에 대해서는 예외로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2.4.4 국내챔피언십

2.4.4.a ASN만이 국내챔피언십을 허가할 수 있다.

2.4.4.b 국내챔피언십은 ASN이 직접 또는 ASN으로부터 서면으로 인정을 받은 단체만이 조직할 수 있다.

2.4.4.c 국내 챔피언십의 경우 최대 1개의 경기가 다른 나라의 영토에서 열릴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조건으로는 챔피언십이 조직된 나라와 국경이 접해 있는(해상 국경을 가진 경우에는, FIA가 적절한 지리적 관계를 가진 추가 국가를 고려한다) 나라에서 가능하다.

2.4.4.d 국내 서킷 챔피언십만(카트 포함)은 예외로, 국내의 상설 서킷 영역에서 국내 경기를 개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FIA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입증하면 ASN은 자체 국내 챔피언십을 조직하기 위해 관련 ASN과 합의를 거쳐 국내경기를 공유 국경(단, 해상 국경인 경우에는 FIA는 적절한 지리적 관계를 가진 추가 국가를 고려한다)이 있는 여러 나라에서 개최할 수 있다.

2.4.4.e 예외적으로, Zone에 소속되지 않은 ASN이 다음의 조건으로 관할 국가의 영토 밖에서 최대 2개의 국내 챔피언십을 개최할 수 있다.

2.4.4.e.i 국내 챔피언십을 조직하고 있는 국가와 국경이 접해 있는(해상 국경을 가진 경우에는, FIA가 적절한 지리적 관계를 가진 추가 국가를 고려한다) 국가의 진행.

2.4.4.e.ii 해당 국내 챔피언십이 차량 성능 수준에 따른 대회로만 구성 된 경우:
- 서킷 경기에서 열리는 경기의 경우 3kg/hp 이상
- 클로즈된 도로에서 열리는 경기의 경우 4kg/hp 이상

2.4.4.f 추가적으로 FIA는 그 재량권으로, 오로지 클로즈드 경기로만 구성되는 국내 챔피언십이 해당 ASN 관할 영토의 밖에서 1회 이상 경기가 열리도록 허가할 수 있다.

2.4.5 국내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2.4.5.a 오직 ASN만이 국내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를 허가할 수 있다.

2.4.5.b 국내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는 같은 규정의 지배를 받는 여러 개의 경기, 또는 단일 경기로 구성될 수 있다.

제2.5조 파크 퍼미

2.5.1 파크 퍼미 안에는 지정된 오피셜만이 들어올 수 있다. 이들 오피셜 또는 관련 규정이 허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작, 검사, 조정 또는 수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2.5.2 파크 퍼미는 차량 검사가 규정되어 있는 경기에서는 의무다.

2.5.3 경기에 적용되는 규정에서는 파크 퍼미가 설치되는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2.5.4 클로즈된 코스(Closed course)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파크 퍼미는 결승선(또는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출발선)과 아주 가까워야 한다.

2.5.5 경기가 끝날 때 결승선과 파크 퍼미 입구 사이 구간은 파크 퍼미 규정을 적용받는다.

2.5.6 파크 퍼미는 적절한 크기를 가지며 자동차가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적절히 폐쇄되어야 한다.

2.5.7 감시는 파크 퍼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 오피셜이 수행하며 이들만이 경기 참가자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다.

2.5.8 랠리와 크로스컨트리 랠리에서는 통제 구역 그리고 리그룹 구역은 파크 퍼미로 간주된다. 적용되는 규정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통제 구역 안에서는 수리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제2.6조 라이선스

2.6.1 총괄 원칙

2.6.1.a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제스포츠규정의 본문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

2.6.1.b 국제스포츠규정은 라이선스를 신청하여 자격을 얻은 자에게 모두 적용되고, 스포츠 규정 및 기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6.1.c 소속 ASN에서, 또는 소속 ASN의 인정을 받은 다른 ASN에서 발급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도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2.6.1.d 국제라이선스는 해마다 1월 1일에 갱신되어야 한다.

2.6.1.e 각 ASN은 FIA 규정에 따라서 라이선스를 발급해야 한다.

2.6.1.f 라이선스는 가명으로 발급될 수 있으나, 한 사람이 두 개의 가명을 쓸 수는 없다.

2.6.1.g 라이선스 발급 또는 갱신을 위한 비용이 있을 수 있다.

2.6.1.h 각 ASN은 FIA를 대표하는 단체가 없는 국가에 속해 있는 외국인에게 FIA의

사전 동의를 받아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발급된 라이선스의 목록은 FIA 사무국에서 보유한다.

2.6.2 슈퍼 라이선스

2.6.2.a 슈퍼 라이선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된 신청 서식을 완전하게 작성하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이는 해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2.6.2.b FIA는 특히 후보자가 국제스포츠규정 제12.2조의 위반하였을 경우 슈퍼 라이선스를 발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거절에 대한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2.6.2.c 슈퍼 라이선스 문서는 FIA의 자산이며 이를 각 보유자에게 전달한다.

2.6.2.d 징계 결과로 슈퍼 라이선스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그 보유자는 출장 정지 또는 취소 기간 동안 FIA 챔피언십에 참가 할 수 없다.

2.6.2.e 교통 법규 위반 중 국내의 경찰 당국이 확인한 결과, 그 위반이 심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거나, FIA가 지키고자 하는 모터스포츠의 이미지 또는 가치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국제스포츠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2.6.2.f 교통 법규 위반을 저지른 슈퍼 라이선스 보유자는,

2.6.2.f.i FIA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다.

2.6.2.f.ii 국제재판소 결정에 따라 공익 업무 수행 의무를 지거나 슈퍼 라이선스를 일시 또는 영구 취소 당할 수 있다.

2.6.3 EU 프로페셔널 팀 또는 선수

2.6.3.a EU 프로페셔널 경쟁자 또는 선수는 EU 국가(또는 FIA가 결정한 이에 상당한 나라)에서 열리는 존(지역)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며 Appendix Z의 제7.3조를 준수한다.

2.6.3.b 이러한 국내 라이선스에는 EU 깃발이 들어 있어야 한다.

2.6.3.c 각 EU ASN, 또는 FIA가 결정한 이에 상당한 국가의 ASN은 이들 규정을 참작하여 보험 처리를 보장한다.

2.6.3.d 이들 프로페셔널 팀 또는 선수는 그가 경기를 하는 국가의 ASN의 관할권, 그리고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의 관할권 안에 들어간다.

2.6.3.e 이러한 라이선스에 대한 정지가 결정되면 이는 FIA 국제모터스포츠 공고 그리고/또는 FIA 웹사이트 www.fia.com에 공개된다.

2.6.4 FIA 월드챔피언십에 참가하는 팀 관련 스태프에 대한 등록증

2.6.4.a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어떤 사람이든 적절한 절차대로 FIA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6.4.a.i **팀 단장** (Team Principal) : 팀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책임지는 사람.

2.6.4.a.ii **경기 감독** (Sporting Director) : 팀이 월드챔피언십 경기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을 맡은 사람.

2.6.4.a.iii **기술 감독** (Technical Director) : 팀이 월드챔피언십 기술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을 맡은 사람.

2.6.4.a.iv **팀 매니저** (Team Manager) : 경기에서 팀의 운영 책임을 맡은 사람.

2.6.4.a.v **레이스 엔지니어** (Race Engineer)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람(선수당 2명) : 선수의 자동차를 책임지는 사람.

2.6.4.a.vi 위의 해당 규정 관련 이외의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추가 스텝프 멤버는 FIA에 의무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2.6.4.b.i 다른 FIA 월드챔피언십에서 선수를 대신하여 위의 2.6.4.a.i부터 2.6.4.a.v 조항까지 명시된 역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사람은 FIA에 의무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2.6.4.b.ii FIA 월드 챔피언십을 담당하는 FIA 스포츠 위원회는 각 챔피언십에 특성에 따라서 역할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6.4.c 정당하게 등록된 팀의 스태프 구성원은 참여자(Participant)로 간주된다.

2.6.4.d FIA 월드챔피언십에 참가 신청할 때, 팀은 스태프로 등록된 사람들이 일정 서식에 서명을 한 스태프 명단을 FIA에 전달해야 한다.

2.6.4.e 적절하게 등록된 경기 참가자 스태프의 각 구성원은 FIA로부터 등록증을 받는다. 이 등록증은 FIA가 작성하고 발급하며 FIA의 소유물로 계속 남는다.

2.6.4.f 등록은 해마다 1월 1일에 갱신되어야 한다.

2.6.4.g FIA는 제12.2조를 위반한 사람의 등록을 보류하고 취소할 권리가 있다. FIA는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2.6.4.h FIA는 적절하게 등록된 경기 참가자의 스태프 구성원이 월드 챔피언십의 일부를 이루는 경기의 보호 구역에 출입할 권한을 일시 또는 완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2.6.4.i 경기 참가자의 조직에 변화가 있어서 그 때문에 FIA에 등록해야 하는 스태프 구성원의 명단에 변동이 있을 경우, 경기 참가자는 이러한 변화가 생긴지 7일 안에 FIA에 이를 통보하고 같은 기한 안에 갱신된 명단을 제출하는 한편, 그 역할 수행이 중단된 사람의 등록증을 FIA에 반납해야 한다.

제2.7조 특별 조건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또는 트로피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FIA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아래 2.7.1 ~ 2.7.3조항이 적용된다.

2.7.1 국제 랠리에 참가가 허가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2.7.1.a 모든 국제 랠리에서 모든 자동차의 동력은 FIA 월드랠리챔피언십을 제외하고 최소 무게/마력 비율이 3.4kg/hp(4.6kg/kw)로 제한된다. 어느 때든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든, FIA는 이동력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2.7.1.b 다음 자동차만이 국제 랠리에 참가할 수 있다.

2.7.1.b.i 투어링 자동차 (그룹 A). 단, 특정한 진화를 제외하고는 호몰로게이션을 받은 형식과 다른 경우

2.7.1.b.ii 프로덕션 자동차 (그룹 N, R, 랠리 그리고 RGT).

2.7.1.c 특정한 진화를 제외하고는 호몰로게이션을 받은 형식과 다르지 않는 한, 그룹 A, N, R 그리고 RGT 자동차는 공인이 만료된 날짜 이후에도 8년까지는 다음을 조건으로 월드랠리 챔피언십을 제외한 국제 랠리 참가가 허용된다.

2.7.1.c.i 운영 점검과 차량 검사 과정에서 FIA 호몰로게이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2.7.1.c.ii 차량은 공인이 만료된 날짜 기준으로 유효한 기술규정(국제스포츠규정 부칙 J)을 준수하며 기술 오피셜의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경기 참가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한다.

2.7.1.d 이들 자동차에 쓰이는 터보 리스트릭터의 크기와 최소 무게는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2.7.2 크로스컨트리 랠리와 바하 크로스컨트리 랠리

FIA 기술규정에 정의된 크로스컨트리 자동차(그룹 T)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자동차든 제외된다.

2.7.3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

2.7.3.a 모든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는 국제스포츠캘린더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2.7.3.b FIA로부터 특별 면제를 받지 않는 한은 해마다 대륙 당 하나의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만이 조직될 수 있다.

2.7.3.c 경기는 21일을 넘겨 지속될 수 없다(차량 검사와 슈퍼 스페셜 스테이지 포함).

2.7.3.d FIA 기술규정에 정의된 크로스컨트리 자동차(그룹 T)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어떤 다른 자동차든 제외된다.

2.7.4 기록 도전

2.7.4.a 기록 보유자

2.7.4.a.i 개별 도전 과정에서 기록이 수립되었다면 기록 보유자는 그 도전을 위한 허가를 승인 받은 사람이며 그 허가를 위한 공식 신청을 한 사람이다.

2.7.4.a.ii 경기 과정에서 기록이 수립되었다면 기록 보유자는 그 성과를 기록한 자동차로 참가한 이름을 가진 경기 참가자다.

2.7.4.b 관할권

2.7.4.b.i ASN은 그 관할 영토 안에서 수립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기록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2.7.4.b.ii FIA는 모든 세계 기록 수립 주장에 대한 판정을 내리며, 그 신청은 ASN이 제출 해야 한다.

2.7.4.c 기록 수립 자격이 있는 자동차

각각의 국제 기록은 자동차만이 세울 수 있다.

2.7.4.d 공인되는 기록

2.7.4.d.i 공인되는 기록은 지역 기록, 국내 기록, 세계 기록, 절대 세계 기록 (Absolute World Records), 통산 세계 기록 (Outright World Record) 뿐이다.

2.7.4.d.ii 똑같은 기록이 위에서 언급된 범주 가운데 여러 개에 대해 공인될 수도 있다. 서킷 기록과 도로 기록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2.7.4.e 소속 등급에 한정된 자동차 기록

소속 등급 안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거나 경신한 자동차는 이를 통해 절대 세계 기록을 경신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높은 등급이 세운 같은 기록을 경신할 수는 없다.

2.7.4.f 공인 기간 및 거리

2.7.4.f.i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D에서 정한 대로인 국내 기록에 대한, 그리고 세계 기록에 대한 기간과 거리만이 공인된다.

2.7.4.f.ii ASN은 해당 지역 내 기록을 공인할 수 있다.

2.7.4.g 레이스 동안 수립되는 기록

레이스 동안에는 시간 또는 거리 등의 어떠한 기록도 공인되지 않는다. 단, 랩 기록은 레이스 동안 수립될 수 있다.

2.7.4.h 기록을 위한 도전

기록 도전을 위한 조건은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D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2.7.4.i 세계 기록 공인을 위한 조건

2.7.4.i.i 세계 기록은 FIA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수립되었거나, 예외로 대표 단체가 없지만 FIA로부터 조직 허가를 받은 나라에서 수립된 것이 아니라면 공인 받지 못한다.

2.7.4.i.ii 어떤 세계 기록도 FIA가 승인한 코스에서 그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인 받지 못한다.

2.7.4.j 기록 명부

2.17.4.j.i 각 ASN은 해당 국가에서 수립 또는 경신된 모든 기록의 명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요청에 따라 국내 또는 지역 기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2.17.4.j.ii FIA는 세계 기록의 명부를 보유하며 요청에 따라서 이들 기록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한다.

2.7.4.k **기록의 발표**

2.7.4.k.i 기록에 대한 주장이 정식 공인될 때까지는 "확정 필요"(Subject to Confirmation)라는 문구를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씨로 덧붙이지 않고는 결과를 공고할 수 없다.

2.7.4.k.ii 이 규정을 무시할 경우 기록에 대한 주장은 자동적으로 공인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며, 이 처분은 ASN이 부과하는 어떠한 추가 벌칙에 대해서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

2.7.4.l **기록 도전 수수료**

2.7.4.l.i ASN은 국내 기록 도전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해마다 확정되고 ASN에게 납부되어야 한다.

2.7.4.l.ii FIA는 세계 기록 도전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해마다 확정되고 FIA에게 납부되어야 한다.

제3조 경기 – 조직 세부 사항

제3.1조 공인의 필요성

경기는 관련된 국가의 ASN으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한다.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없는 국가에서 열린다면 FIA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공인의 신청

3.2.1 모든 공인 신청은 적용되는 기한에 따라서 ASN에 다음 정보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각 경기에 적용될 특별규정의 초안. 기록 도전인 경우에는 제외.

3.2.2 ASN이 사전에 공인 비용을 설정한 경우에 신청은 그 비용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공인이 허가 나지 않으면 그 비용은 반환된다.

제3.3조 공인서의 발급

3.3.1 ASN이 선택한 형식에 따라서 공인서를 발급할 권한을 가진다.

3.3.2 공인을 신청하는 대회주최자는 국제스포츠규정이 명기하는 조건 그리고 적용되는 FIA 및 관련 ASN의 경기 및 기술규정을 만족해야 공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법과 규정의 준수

3.4.1 경기가 진행되는 장소(도로, 서킷 또는 다른 지정된 지역) 에서 조직위원회가 관할 지역당국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얻지 못하거나, 얻는 것을 착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ASN은 조직 허가를 부여할 수 없다.

3.4.2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공도에서 열리는 경기의 부분은 그 나라의 도로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3.4.3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경기에는 국제스포츠규정 뿐 아니라 스피드웨이에서 레이스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된 특별규정의 적용도 함께 받는다.

3.4.4 규정 발표 : 여러 FIA 챔피언십 경기의 규정은 적용되는 FIA 챔피언십 경기규정에 따라서 FIA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3.5조 특별규정에 포함되는 주요 정보

(FIA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에는 적용되지 않음)

3.5.1 대회주최자 정보;

3.5.2 경기의 이름, 성격, 그리고 정의;

3.5.3 국제스포츠규정 및 국내규정에 따라서 경기가 개최된다는 문구;

3.5.4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위원회의 주소(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명단 포함);

3.5.5 경기가 열리는 장소와 날짜;

3.5.6 구체적인 경기 계획 (서킷의 길이와 방향, 참가가 허용되는 자동차의 클래스 그리고 카테고리 설명, 주유방식, 해당된다면 엔트리 수 제한, Appendix O 를 근거로 한 스타트 허용 차량 수 등);

3.5.7 참가에 관련된 모든 유용한 정보(제출할 주소, 시작과 종료 날짜 및 시각, 참가비용 등);

3.5.8 보험에 관련된 모든 정보;

3.5.9 출발 날짜, 시각, 특성, 핸디캡의 명시;

3.5.10 국제스포츠규정의 조항들에 대한 주지, 특히 필수 등급 관련 라이선스 및 신호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H 참조);

3.5.11 순위를 정하는 방식;

3.5.12 잠정 및 최종 순위 게시의 장소와 시간. 주최자가 명시한 대로 공식 순위를 게시할 수 없는 경우, 순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공지하여야 한다.

3.5.13 상금의 자세한 내역;

3.5.14 항의에 관한 국제스포츠규정의 조항들에 대한 주지;

3.5.15 심사위원과 다른 오피셜들의 이름;

3.5.16 공식 게시판의 위치 또는 디지털 게시판 위치;

3.5.17 적용될 경우에는 연기 또는 취소에 대한 규정.

제3.6조 특별규정의 개정

특별규정은 이미 참가한 모든 경기 참가자가 만장일치로 동의하거나 심사위원회가 결정하지 않는 한은 참가 신청 기간이 시작된 뒤에는 개정될 수 없다.

ASN 및 FIA의 사전협의에 따라, 주최자는 해당 경기(competition)가 시작될 때까지 대회(event)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위 관련 사항을 개정할 수 있다(규칙 2.1.7.a 조항을 따름).

제3.7조 공식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주요 정보

3.7.1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에 따라서 경기가 개최된다는 문구;

3.7.2 경기의 장소와 날짜;

3.7.3 예정된 경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시간표;

3.7.4 팀과 선수의 이름 및 이들의 자동차에 주어진 엔트리 번호;

3.7.5 존재한다면 핸디캡;

3.7.6 상금의 자세한 내역;

3.7.7 심사위원과 다른 오피셜들의 이름.

제3.8조 참가 신청

3.8.1 참가 신청은 경기 참가자와 대회주최자 사이의 계약이다. 이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을 하거나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체결될 수 있다. 이는 경기 참가자로 하여금 출전이 받아들여진 경기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하게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참가하도록 강제한다.

3.8.2 이는 또한 대회주최자로 하여금 경기 참가자가 관련된 경기에 충실하게 참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한정하여 참가가 이루어졌을 때 경기 참가자에 대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의무화한다.

제3.9조 참가 접수

3.9.1 ASN에서 공인을 증명하는 문서 발급에 동의하고 나면 그 조직위원회는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3.9.2 참가 신청 형식

최종 참가 신청은 조직위원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형식에 지명된 경기 참가자와 선수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기 참가자와 선수의 라이선스 번호를 함께 기입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특별규정에서는 선수 지명을 위한 추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9.3 참가 신청비 지불

특별규정에 참가비가 정해져 있다면 이 비용과 함께 제출되지 않은 모든 참가 신청은 무효가 된다.

3.9.4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경기 참가를 위한 ASN의 허가

3.9.4.a 해외에서 조직된 국제경기에 참가를 원하는 경기 참가자와 선수는 소속된 ASN의 승인이 있어야만 참가할 수 있다.

3.9.4.b 이러한 승인은 ASN이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9.4.c 주최자가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의 허가가 없는 외국 경기 참가자 그리고/또는 선수의 참가를 받아들일 경우, 주최자는 위반을 저지른 것이 된다. FIA에 이 사실이 통보되면 FIA가 결정하는 처벌을 받는다.

3.9.4.d 허가는 오로지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들어 있는 경기에 대해서 ASN이 그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해서만 내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한다.

제3.10조 참가의 준수

3.10.1 경기 참가자와 주최자 사이에 참가에 관련된 분쟁이 벌어질 경우 그 조직위원회를 승인한 ASN이 판정을 내린다.

3.10.2 경기 날짜 전까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참가 신청을 완료한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다면 해당 ASN이 설정한 액수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출장 정지가 된다 (라이선스의 일시 취소).

3.10.3 보증금 지불은 그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가 어떤 경기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 되지 않는다.

제3.11조 참가 신청 마감

3.11.1 특별규정에는 참가 신청이 마감되는 날짜와 시각이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3.11.2 국제경기에 대해서는 참가 신청 종료는 이벤트를 위해 예정된 날짜보다 적어도 7일 이전에 참가 신청이 마감되어야 한다. 다른 경기에 대해서는 이 기한은 관련 ASN 또는 FIA 재량으로 정한 날짜만큼 줄어들 수 있다.

제3.12조 전자 수단으로 접수된 참가 신청

3.12.1 참가 신청은 무엇이든 전자적 통신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단, 참가 신청 마감을 위해 지정된 기한 전에 접수가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비를 함께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12.2 전자 통신(예를 들어서 이메일, 그밖에)에 나와 있는 송신 시각은 시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쓰인다.

제3.13조 거짓된 문구를 포함한 참가 신청

3.13.1 거짓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신청이든 무효로 간주된다.

3.13.2 이러한 참가 신청은 국제스포츠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참가비가 몰수될 수도 있다.

제3.14조 참가 신청 거부

3.14.1 국제경기에 대한 참가 신청이 조직위원회로부터 거부될 경우, 조직위원회는 거부된 신청자에게 늦어도 참가 신청 마감으로부터 2일 안에, 늦어도 경기 시작 5일 전에 거부한 근거를 명시하여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14.2 다른 경기에 대해서는 거부에 관련된 통보에 한하여 국내규정이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15조 조건부 참가

3.15.1 특별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한 조건에서, 예를 들어 출발 선수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 참가한 다른 경기 참가자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와 같은 경우에 참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3.15.2 조건부 참가는 참가 신청 마감 다음날까지는 관련 당사자에게 서신 또는 어떤 전자 수단으로든 통보되어야 하지만 조건부로 참가한 경기 참가자는 허가 받지 않고 한 경기를 다른 경기로 대체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제3.16조 참가자 발표

3.16.1 대회주최자가 적절하게 작성된 참가 신청서를 받았으며 참가비가 있는 경우, 참가비와 함께 받은 신청이 아니라면 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3.16.2 조건부로 참가하는 경기 참가자는 참가 명단 발표 시점에서 조건부 참가자로 지정된다.

제3.17조 경기 참가자의 선택

3.17.1 참가자 수 또는 스타트 허용차량 수의 제한을 규정했다면 경기 참가자 선택 절차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17.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은 제비뽑기 또는 ASN이 결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18조 대기자의 지명

어떤 경기 참가자든 경기 참가자의 선택(제3.17조)에 관련된 국제스포츠규정의 조항에 따라서 탈락되었을 경우, 이들은 조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대기자로 인정될 수 있다.

제3.19조 자동차의 참가

3.19.1 한 대 그리고 똑같은 자동차는 같은 경기에 한 번 이상 참가할 수 없다.

3.19.2 예외적으로 ASN은 관할 영토 내의 같은 이벤트에서 같은 자동차가 한 번 넘게 참가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단, 같은 선수는 한 번만 운전해야 한다.

제3.20조 참가자의 공식 명단

조직위원회는 경기 참여가 승인된 참가자의 공식 명단을 늦어도 이벤트 시작 48시간 전까지 ASN에 보내고 각 경기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참가신청이 이 시간 이후에 마감되는 경우는 예외로, 이 때는 경기 시작 전에 공식 명단을 각 참가자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제3.21조 특별구역

특별구역에 출입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별 허가나 패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4조 투어링 어셈블리

제4.1조 투어링 어셈블리

투어링 어셈블리에서는 일정은 의무지만 단순한 패시지 컨트롤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가자들이 주행할 때에 부과되는 평균 속도는 없다.

제4.2조 총괄 조건

4.2.1 스피드 이벤트를 제외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추가 모터스포츠 활동을 투어링 어셈블리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들 추가 모터스포츠 활동은 도착 지점에서만 열려야 한다.

4.2.2 이들 투어링 어셈블리에는 상금이 걸려 있지 않아야 한다.

4.2.3 투어링 어셈블리는 참가자가 여러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국제스포츠 캘린더 등록이 면제되지만 규정을 승인해야 하는 ASN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국가에서 조직될 수 없다.

4.2.4 규정은 조직 세부 사항에 관련된 국제스포츠규정 안의 경기에 대한 규정과 똑같은 정신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한다.

4.2.5 투어링 어셈블리 경로가 하나의 ASN 관할 영토만을 통과한다면 해당 투어링 어셈블리의 참가자가 라이선스를 반드시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4.2.6 그렇지 않은 경우, 투어링 어셈블리는 국제 코스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라야 하며 참가자는 필요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5조 퍼레이드

제5.1조 조건

다음 조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5.1.1 오피셜 카 한 대가 퍼레이드를 선도하며 다른 한 대가 가까이에 있다.

5.1.2 이 두 대의 오피셜 카는 경기위원장의 통제 속에서 경험 있는 선수가 운전한다.

5.1.3 앞지르기는 금지된다.

5.1.4 시간 계측은 금지된다.

5.1.5 경기의 틀 안에서, 어떤 퍼레이드이던 특별규정에 언급되어 있어야 하며 참가 자동차는 공식 프로그램에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제5.2조 허가

국내 퍼레이드는 ASN으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열릴 수 없다.

제6조 데모 주행

제6.1조 조건

다음 조건이 준수되어야 한다.

6.1.1 데모 주행은 항상 경기위원장이 통제해야 한다.

6.1.2 5대가 넘는 자동차의 데모 주행은 항상 세이프티 카의 통제를 받으며, 세이프티카는 경기위원장의 통제 속에서 경험 있는 선수가 대열을 선도하여 운전해야 한다.

6.1.3 모든 마샬은 각자의 포스트에 있어야 하며(이벤트의 틀 안에서), 구조와 신호 서비스는 필수다.

6.1.4 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6.1.5 선수는 적절한 안전 복장을 입어야 한다(FIA가 승인한 복장과 헬멧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주최자는 최소 복장 기준을 지정할 수 있다.

6.1.6 자동차는 안전에 근거를 둔 차량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6.1.7 차량 검사 뒤에 정확한 참가 명단이 발표되어야 한다.

6.1.8 탑승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자동차가 원래부터 선수와 똑같은 안전 조건으로 탑승자를 태우기 위해서 설계되었고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탑승자들이 적절한 안전 복장을 입고 있는 경우(FIA가 승인한 복장과 헬멧을 강력하게 권고한다)에는 예외다. 주최자는 최소 복장 기준을 지정할 수 있다.

6.1.9 청색기를 제시한 마샬의 지시가 아닌 한은 앞지르기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6.1.10 시간 계측은 금지된다.

6.1.11 이벤트의 틀 안에서, 어떤 데모 주행이든 특별규정에 언급되어 있어야 하며 참가 자동차는 공식 프로그램에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제6.2조 허가

국내 데모 주행은 ASN으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열릴 수 없다.

제7조 코스와 서킷

제7.1조 국제코스

7.1.1 경기의 코스가 여러 국가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경우, 이 경기 주최자의 ASN은 먼저 국제 스포츠 캘린더 등록을 요청하기 이전에 해당 영토의 각 ASN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없는 국가에서는 FIA에게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7.1.2 경기가 진행되는 코스를 통과하는 이들 국가의 ASN들은 영토의 한계 안에서 코스 전체에 걸친 경기 통제권을 보유하지만, 경기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은 주최자가 속한 ASN이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제7.2조 코스의 승인

코스는 ASN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요청을 위해서는 주행해야 할 정확한 거리와 루트를 제출해야 한다.

제7.3조 거리 측정

기록 시도가 아닌 경기에 대해서는 10 킬로미터까지의 거리는 코스의 중앙선을 따라서 자격 있는 측량사가 측정해야 한다. 10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는 공식 도로 표지 또는 축척이 25만분의 1을 넘지 않는 공식 지도로 결정해야 한다.

제7.4조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제라이선스

7.4.1 레이스 또는 기록 도전이 예정될 때, 상설 또는 임시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제 라이선스 신청은 ASN이 FIA에 해야 한다.

7.4.2 FIA는 자동차 레이스를 위한 서킷 또는 기록 도전을 위한 코스의 라이선스를 내줄 수 있으며, 코스가 필요한 기준에 적합한지 보장하기 위해 감독관을 임명한다.

7.4.3 FIA는 ASN 및 인스펙터와 협의를 거쳐서 라이선스를 거부 또는 승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취소 또는 거부 사유를 밝혀야 한다.

7.4.4 코스 또는 서킷 라이선스에 들어 있는 정보

7.4.4.a FIA에게 승인 받은 라이선스에는 코스 또는 서킷의 길이 그리고 레이스 서킷인 경우에는 이 라이선스에 대해 유효한 경주 차량 카테고리 등급을 표시한다.

7.4.4.b 필요하다면 코스 또는 서킷이 세계 기록 도전을 위해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제7.5조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한 국내라이선스

ASN은 제7.5.1조와 제7.5.2조에서 지정한 조건에 따라 서킷 또는 코스에 대해 비슷한 라이선스 승인을 할 수 있다.

7.5.1 ASN에게 승인 받은 라이선스에는 코스 또는 서킷의 길이, 그리고 지역 또는 국내 기록 도전을 위해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7.5.2 또한 코스나 서킷에서 선수들이 숙지하고 따라야 하는 규칙을 서술한다.

제7.6조 상설 및 임시 코스와 서킷 모두에 대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

상설 및 임시 코스와 서킷 모두에 대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FIA가 정기적으로 정한다.

제7.7조 서킷 라이선스의 전시

서킷 라이선스는 유효 기간 동안 서킷에서 눈에 잘 뜨이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제8조 출발과 히트

제8.1조 출발

8.1.1 두 가지 출발 유형이 있다.

8.1.1.a 롤링 스타트

8.1.1.b 스탠딩 스타트

8.1.2 경기 차량은 스타트 방식에 상관 없이 출발 신호 순간에 출발한 것으로 간주한다. 어떤 경우에도 출발 신호는 되풀이되지 않는다.

8.1.3 기록 도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는 관련된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서 출발 특성을 정의해야 한다.

8.1.4 시간 계측이 쓰일 경우에는 출발 때부터 시작된다.

제8.2조 출발선

8.2.1 롤링 스타트를 하는 모든 경기에서 출발선은 이를 지났을 때 그 자동차의 시간 계측이 시작되는 선이다.

8.2.2 스탠딩 스타트를 하는 경기에서 출발선은 각 자동차(필요한 경우에는 각 선수)가 출발 전에 그에 맞춰서 자리를 고정해야 하는 선이다.

8.2.3 관련된 경기규정 또는 특별규정에서는 모든 자동차의 상대 위치와 이들 위치가 결정되는 방법을 출발 전에 정의해야 한다.

제8.3조 롤링 스타트

8.3.1 롤링 스타트는 시간 계측이 시작되는 순간에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방식이다.

8.3.2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은 경기 차량은 그리드 순서를 유지하면서 오피셜 카의 선도에 따라서 출발 그리드를 떠나며,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줄 또는 나란히 주행해야 하고, 이들 규정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출발에 실패한 자동차가 있을 경우의 절차 역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8.3.3 오피셜 카가 트랙을 떠났을 때, 자동차의 전체 대열은 출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선두 차량 뒤에서 순서를 유지한다. 그러나, 관련 경기규정 또는 특별규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출발 신호가 주어져야 하며, 자동차들이 출발선을 지나야 레이스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선두 자동차가 출발선을 지나고 기록 계측이 시작되어야 한다.

제8.4조 스탠딩 스타트

8.4.1 스탠딩 스타트는 출발 신호가 주어지는 순간에 자동차가 멈추어 있는 방식이다.

8.4.2 스탠딩 스타트를 하는 기록 도전에서 자동차는 시간 계측을 하는 부분이 출발선으로부터 뒤로 10cm 넘게 떨어져 있지 않도록 멈추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엔진은 출발 전부터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8.4.3 스탠딩 스타트를 하는 다른 모든 경기에서는 출발 신호가 나오기 전에 엔진을 작동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시켜야 할지를 특별규정에서 정해야 한다.

8.4.4 개별 출발 또는 한 줄로 나란히 출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8.4.4.a 시간 계측이 자동 계측으로 이루진다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들은 위 스탠딩 스타트로 하는 기록 도전에 대한 정의와 같이 출발 전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8.4.4.b 시간 계측이 시계를 쓰는 방법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계측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들은 출발 전에 출발선이 있는 지면에 앞쪽 휠의 일부가 닿도록 자리를 잡아야 한다.

8.4.5 그리드 대형으로 출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8.4.5.a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서 정한 출발 위치 기준으로 정한 어떤 출발 위치든 시간 계측은 출발 신호가 나올 때 시작된다.

8.4.5.b 이때부터,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레이스가 서킷에서 열리는 경우, 각 자동차가 첫 번째 랩을 마쳤을 때부터는 시간 계측선을 넘을 때 계측이 된다.

8.4.6 출발 그리드가 최종 발표된 뒤, 그리드 출발을 못하는 차량의 자리는 비워둔 채로 남겨 놓으며, 다른 차량은 그리드에서 발표된 위치를 유지한다.

제8.5조 스타터

모든 국제 스피드 경기에서 스타터는 이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오피셜이 임명되지 않았다면 경기위원장 또는 레이스 디렉터여야 한다.

제8.6조 부정 출발

8.6.1 부정 출발은 경기 차량이 다음 경우에 해당될 때다:

8.6.1.a 출발 위치가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가 아닌) 잘못된 곳에 있거나;

8.6.1.b 적절한 신호가 나오기 전에 지정된 위치에서 앞으로 움직인 경우;

8.6.1.c 스탠딩 스타트 동안에 출발 신호가 나왔을 때 움직이고 있거나;

8.6.1.d 롤링 스타트 동안에 일찍 또는 불규칙하게 가속하거나 (모두 관련 경기 또는 특별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또는 레이스 디렉터 혹은 경기위원장이 지정한 대로) 규정된 대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8.6.2 어떤 부정 출발이든 이 규칙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제8.7조 히트

8.7.1 경기는 여러 히트로 시작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은 조직위원회가 결정하고 공식 프로그램에 공개되어야 한다.

8.7.2 이러한 히트들의 구성은 필요할 때에는 바꿀 수 있으나 심사위원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제8.8조 동률

동률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경기 참가자들은 순위 결과에서 이들이 기록한 순위에 걸려 있는 상금 및 그에 따른 상을 나눠 가지거나, 이들 경기 참가자들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관련 경기 참가자들만으로 제한된 추가 경기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처음의 경기를 다시 치를 수는 없다.

제9조 경기 참가자와 선수

제9.1조 경기 참가자 (Competitor)와 선수의 등록

9.1.1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로서 자격을 얻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든 그가 시민권을 가진 나라의 ASN에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9.1.2 만약 참가 신청서에 경기 참가자가 나와 있지 않으면 퍼스트 선수가 경기 참가자를 겸하며 그에 따른 두 개의 라이선스를 가져야 한다.

제9.2조 라이선스의 발급

9.2.1 ASN은 그 ASN의 명칭과 함께 "팀 등록증 (또는 라이선스)", "선수등록증 (또는 라이선스)" 또는 ISC 부칙 L에 정의된 "장애인 선수용 등록증 (또는 라이선스)" 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FIA가 승인한 형식모델에 따라 작성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9.2.2 FIA 국제 라이선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곧,

9.2.2.a 경기 참가자 라이선스

9.2.2.b 선수 라이선스

9.2.2.c 장애인 선수용 등록증 (또는 라이선스)

9.2.3 각 ASN은 국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것이 허가된다.

9.2.4 또한 ASN은 국내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ASN이 정할 수 있다. 국제 라이선스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국가 안에서만, 또는 경기의 특정한 범주에서만 유효하다는 문구를 더한다.

제9.3조 라이선스 발급 권한

9.3.1 각 ASN은 해당 국가의 국민들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할 권한을 가진다.

9.3.2 각 ASN은 다음에 명시한 바에 따라서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있는 다른 국가의 국민들에게, 라이선스 발급 권한을 가진다.

9.3.2.a 소속 ASN이 사전에 발급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1년에 단 한 번 뿐이다.

9.3.2.b 다른 국가에 살고 있다는 타국 거주 증거를 소속 ASN(여권을 발급한 나라의)에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한 날 기준으로 18살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9.3.2.c 소속 ASN은 원래 발급되었던 라이선스를 회수해야 한다.

9.3.3 다른 ASN에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소속 ASN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어떤 사람도 그 해에 유효한 소속 ASN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9.3.4 그러나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라이선스 보유자가 현재 년도 도중에 라

이선스의 국적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소속 ASN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소속 ASN에 기존 라이선스를 반납한 다음에만 국적을 바꿀 수 있다.

9.3.5 ASN은 FIA에 사전에 동의를 얻어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없는 국가에 속한 외국인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ASN은 FIA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거절할 내용이 있으면 FIA에게 이를 알린다.

9.3.6 예외적으로 어떤 ASN이 공인한 드라이빙 스쿨에 실제로 다니는 학생은 학생의 소속 ASN과 주최국 ASN의 동의를 받는 조건 하에서 이 드라이빙 스쿨에서 조직하는 그 나라 국내경기에 두 번까지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최국 ASN에 원래의 라이선스를 경기 기간 동안 임시 예치해야 한다.

제9.4조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의 국적

9.4.1 국제스포츠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어떤 ASN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모든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는 그 라이선스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ASN의 국적을 얻은 것으로 본다.

9.4.2 라이선스의 국적에 관계없이 FIA 월드챔피언십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모든 공식 문서, 발행물 그리고 시상식에서 여권 국적을 유지한다.

제9.5조 라이선스의 거절

9.5.1 ASN과 FIA는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국내 또는 국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의 라이선스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9.5.2 이러한 거절 이유는 명시되어야 한다.

제9.6조 라이선스의 유효 기간

라이선스는 해마다 12월 31일에 만료되어야 한다. 국내 라이선스의 경우 해당 ASN의 방침에 따른다.

제9.7조 부과되는 라이선스 발급비

9.7.1 ASN은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해마다 ASN이 정한다.

9.7.2 FIA는 국제 라이선스에 부과된 수수료를 ASN에게서 통보 받아야 한다.

제9.8조 라이선스의 유효성

9.8.1 ASN이 발급한 팀 또는 선수의 라이선스는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있는 모든 국가에서 유효하며, 이 라이선스 보유자는 ASN 공인 경기는 물론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등록된 모든 경기에 대한 참가 자격을 가진다. 단, ASN의 라이선스 승인에 관해서는 국제스포츠규정에 언급된 조건을 적용 받는다.

9.8.2 클로즈드 경기에 대해서, 라이선스 보유자는 적용되는 경기 및 특별규정에 포함된 특별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9.9조 라이선스의 제시

경기에서 정당한 자격이 있는 오피셜의 라이선스 제시 요청이 있을 때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10조 비공인대회의 참가

9.10.1 비공인대회에 참여하는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제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9.10.2 출장정지와 관련하여, 비공인대회가 ASN의 관할 밖에서 개최되었거나 개최될 예정이라면, 두 ASN이 출장정지 기간을 합의해야 하며 합의에 실패했다면 FIA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9.10.3.a 해당 ASN의 캘린더에 등록된 국내 경기만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9.10.3.b 인터넷 사이트 www.fia.com 내에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등록된 국제대회만이 공인대회로 인정된다.

제9.11조 의료 기록 관리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L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적합한 진단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제9.12조 가명

9.12.1 라이선스를 가명으로 요청하려면 관련된 ASN에 특별 신청을 해야 한다.

9.12.2 이 경우 승인되었다면 라이선스는 그 가명으로 발급된다.

9.12.3 가명으로 등록된 라이선스 보유자는 모든 경기에서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참가해서는 안 된다.

9.12.4 가명을 바꾸려면 원래의 이름을 바꿀 때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9.12.5 가명으로 등록한 사람은 ASN을 통해 본명으로 새로운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때까지는 본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제9.13조 참가 신청을 한 선수 교체

9.13.1 참가 신청이 마감되기 전 선수 교체를 원하는 팀은 금지 조항이 규정에 없으면 가능하다.

9.13.2 참가 신청이 마감된 후 선수 교체를 원하는 팀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14조 식별 번호

적용되는 규정 안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은 한, 경기 동안 각 자동차는 국제스포츠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서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번호 또는 표식을 잘 보이게 붙여야 한다.

제9.15조 경기 참가 팀의 책임

9.15.1 경기 참가팀은 경기 또는 챔피언십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히 직접 또는 간접 고용인, 선수, 미캐닉, 컨설턴트, 서비스 제공자, 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경기 참가자가 보호 구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 또는 태만에 대한 책임을 진다.

9.15.2 이에 더해서 이들 각각은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또는 관련된 ASN의 국내규정 위반에 대해서 똑같은 책임을 진다.

9.15.3 FIA의 요청에 따라서, 경기 참가 팀은 경기 또는 챔피언십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전체 목록을 이들을 대표하여 FIA에 제공한다.

제9.16조 허가되지 않는 다른 경기 참가

9.16.1 어떤 국내 또는 국제경기든 이에 참가하는 경기 참가팀은 또는 여기에서 운전하기로 한 선수가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열리는 다른 경기에 참여하면 그는 후자의 경기가 시작될 때부터 ASN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 동안 출장 정지 처분(라이선스의 일시 취소)을 받는다.

9.16.2 위 두 경기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열린다면 관련된 두 ASN이 부과할 벌칙을 합의하며, ASN이 합의에 실패했다면 이 문제는 적절한 결정을 위해서 FIA에 전달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FIA의 결정이 최종이 된다.

제10조 자동차

제10.1조 자동차의 분류

기록 도전과 그 밖에 다른 경기 모두에 대해서, 자동차는 형식에 따라서, 그리고/또는 어떤 유형이든 동력원의 능력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으며, 기록 도전과 경기는 관련된 규정 또는 기록 등급에 따라서 그 제한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으로 제한 될 수 있다.

제10.2조 위험한 구조

심사위원회는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실격 시킬 수 있다.

제10.3조 자동차의 공인 (또는 호몰로게이션)

10.3.1 자동차는 관련 기술 및 경기규정에 따른 호몰로게이션을 필요로 한다.

10.3.2 호몰로게이션 절차를 완료하고 FIA 또는 관련 ASN이 이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 자동차의 차량 검사는 규정에 따른 호몰로게이션 서류에 근거해야 한다.

10.3.3 차량은 FIA가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 드라이버를 위해 개조된 차량을 제외하고 각자의 호몰로게이션 문서를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개조 증명서에 명시된 어댑테이션에 따라 차량에 대한 개조가 승인된다.

10.3.4 제출된 공인 항목 중에 무엇이든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해서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는 없다.

제10.4조 특정한 자동차의 자격상실 또는 출장 정지

10.4.1 ASN 또는 FIA는 경기 참가자, 선수,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특정한 자동차를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경기에 대해서 자격 상실, 출장 정지 또는 제외 시킬 수 있다.

10.4.2 ASN은 경기 참가자, 선수,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특정한 자동차를 출장 정지, 또는 제외 시킬 수 있다.

10.4.3 만약 국제적인 출장 정지 또는 제외인 경우에는 ASN이 FIA에 보고하며, FIA는 모든 다른 ASN에게 이를 통보한다. 이들 다른 ASN들은 처분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관할하는 모든 경기에서 금지시켜야 한다.

10.4.4 한 ASN이 다른 ASN에 속한 자동차에 대해서 벌칙을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해서 FIA에 항소할 수 있으며, FIA의 결정이 최종결정 된다.

제10.5조 자동차 모델에 대한 출장 정지 및 제외

10.5.1 ASN은 자동차 제조사 또는 이들이 허가한 대표가 이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국내스포츠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영토 안에서 그 자동차의 모델을 출장 정지 시킬 수 있다.

10.5.2 ASN이 이 벌칙을 국제적으로 적용하기를 원하거나 해당 모델을 제외시키고자 할 때에는 FIA 회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하며, FIA 회장은 이 문제를 국제재판

소에 회부한다.

10.5.3 국제재판소는 FIA 회원 두 명, 그리고 이들이 상호 합의로 정할 또 한 명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처음 두 명의 FIA 회원이 세 번째 회원 지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 번째 회원도 FIA 회장이 지명한다.

10.5.4 국제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벌칙을 받은 제조자는 국제스포츠규정과 부속 조항에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서 제조자의 소속 ASN을 통하여, 또는 국제적 벌칙을 요청한 ASN을 통하여 국제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0.5.5 제조자가 속한 나라의 ASN이 국제적인 벌칙의 부과를 신청한 ASN일 경우, 그 ASN은 FIA에 항소를 전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6조 자동차의 광고

10.6.1 자동차의 광고는 국제스포츠규정에 나와 있는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다.

10.6.2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자동차의 광고가 정치적, 종교적이거나 또는 FIA의 이익에 해로울 수 있는 것을 부착함이 허용되지 않는다.

10.6.3.a ASN은 그 관할권 안에서 조직되는 경기에 적용되는 특별 조건을 지정해야 한다.

10.6.3.b 경기의 특별규정은 이 특별 조건은 물론 그 경기가 열리는 국가 안에서 효력이 있는 모든 법적 그리고 행정 규정을 언급해야 한다.

제10.7조 허위 광고

10.7.1 경기의 결과를 광고하는 어떤 경기 참가자 또는 회사든 언급하는 성과의 정확한 조건, 경기의 범주, 등급 및 그 밖에 특성, 자동차의 특성, 그리고 순위 또는 결과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10.7.2 대중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정보를 생략하거나 덧붙이면 광고의 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벌칙을 받을 수 있다.

10.7.3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들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결과에 관한 모든 광고에는 다음 문구를 넣어야 한다. “FIA의 공식 결과 발표를 필요로 함.”

10.7.4 이러한 규칙은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한 경기에서

거둔 우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0.7.5 이러한 광고에는 관련된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대해 특별히 정해져 있는 FIA 로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10.7.6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FIA는 누구든 광고의 공개에 책임이 있는 경기 참가자, 자동차 제조사, 선수, ASN 또는 회사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10.7.7 서로 다른 제조사에서 공급한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에 부여하는 이름을 둘러싼 어떠한 항의 또는 분쟁이든 만약 이들 제조사가 모두 같은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 나라의 ASN이, 이들 제조사가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면 FIA가 결정한다.

제11조 오피셜

제11.1조 오피셜의 목록

11.1.1 '오피셜'이란 다음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보조 인원을 둘 수 있다:

11.1.1.a 심사위원

11.1.1.b 레이스 디렉터

11.1.1.c 경기위원장

11.1.1.d 경기 사무국장

11.1.1.e 기록 오피셜

11.1.1.f 기술 오피셜

11.1.1.g 의료 위원장 (임무는 관련 경기규정에서 정의한다)

11.1.1.h 안전 위원장 (임무는 관련 경기규정에서 정의한다)

11.1.1.i 트랙 또는 로드 마샬

11.1.1.j 플래그 마샬

11.1.1.k 결승선 판정관

11.1.1.l 사실 판정관

11.1.1.m 스타터

11.1.1.n 환경 위원장 (임무는 관련 경기규정에서 정의한다)

11.1.2 FIA 챔피언십 경기에서는 FIA가 다음 오피셜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임무는 관련 경기규정에서 정의한다.

11.1.2.a 경기 대표

11.1.2.b 안전 대표

11.1.2.c 의료 대표

11.1.2.d 기술 대표

11.1.2.e 미디어 대표.

제11.2조 지휘감독권

위에 나와 있는 오피셜과는 별도로, ASN은 어느 나라에서 열리는지 관계없이 국제스포츠규정이 관할하는 모든 경기에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국민 중 누구든 개별적으로 지휘 및 감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경기의 주최자에 대하여 이러한 특혜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

제11.3조 오피셜의 조직 구조

11.3.1 국제경기에서는 적어도 세 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그리고 경기위원장, 그리고 경기의 결과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시간 기록에 따라 결정될 경우에는 한 명 또는 그보다 많은 기록 오피셜이 있어야 한다.

11.3.2 심사위원들은 단일체로 직무를 수행하며 특별규정 또는 무엇이든 적용되는 규정에서 명확하게 지정한 위원장의 권한 아래에 있다.

11.3.3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히 대회의 계획, 그리고 합의의 준수를 보장할 책임을 가진다. 또한 심사위원장은 안건을 제기하고 회의록을 작성할 책임을 진다.

11.3.4 심사위원회 내 찬반이 갈린 경우, 심사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11.3.5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위원회는 국제스포츠규정에 정의된 경기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11.3.6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위원장은 경기 내내 대회 심사위원장과 밀접한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11.3.7 세계 기록 도전에 대해서는, ASN에서 임명한 심사위원 한 명만이 필요하다. 이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의장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1.3.8 절대 세계 기록 또는 절대 세계 속도 기록 도전에 대해서는 세 명의 심사위원회가 임명되며 두 명은 FIA가 임명한다. ASN에 의해 심사위원 1명을 제안할 수 있다.

FIA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심사위원회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심사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11.4조 오피셜의 지명

11.4.1 대회 심사위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이 경기를 주최했거나 공인을 내어 준 ASN이 지명해야 한다.

11.4.2 다른 오피셜들은 ASN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최자가 지명한다.

제11.5조 이해관계의 충돌

FIA 윤리강령 제2.2조에 따라 대회의 오피셜, 특히 심사위원, 레이스디렉터, 경기위원장, 사무국장, 기록위원장 그리고 기술위원은 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이익에 대해 청렴 결백해야 하며 주체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

제11.6조 임무의 경계

11.6.1 어느 경기에서도 오피셜은 정해진 임무 말고는 어떤 다른 임무도 수행해서는 안된다.

11.6.2 오피셜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떤 경기에서도 경쟁에 참여할 자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제11.7조 오피셜의 보수

11.7.1 FIA 또는 ASN이 내린 특별한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은 명예직으로 활동해야 한다.

11.7.2 다른 오피셜은 ASN이 작성한 요율에 따라서 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11.8조 심사위원의 임무

11.8.1 심사위원은 어떤 식으로든 경기의 주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주최와 연관된 어떠한 운영 임무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

11.8.2 따라서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이들은 적용되는 규정을 관할하는 ASN과 FIA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8.3 예외로, ASN이 직접 주최하는 경기에서만, 그 경기의 심사위원들은 주최자의 임무를 겸할 수 있다.

11.8.4 FIA 챔피언십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은 대회가 끝난 뒤에 경기 심사 보고서에 서명하고 이를 가능한 곧바로 ASN에 보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각 경기의 결과와 제기된 모든 항의의 자세한 내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자격 상실 처분, 그리고 출장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다.

11.8.5 여러 경기로 구성된 경기에서는 각 경기마다 대회 심사위원을 별개로 둘 수 있다.

11.8.6 같은 경기를 위해 임명된 여러 심사위원들이 내린 결정에서 상충되는 점이 있을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권을 가진다.

1) FIA 챔피언십 경기

2) FIA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경기

3) 국제 시리즈 경기

4) 국내 챔피언십 경기

5) 국내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경기

제11.9조 심사위원의 권한

11.9.1 심사위원은 FIA 적절한 국제스포츠규정(ISC) 그리고 국내 규칙 및 특별규정과 공식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최고의 권한을 가지며, 제11.9.3.t조 와 제14.1조 규정의 조건으로 경기 체제 내에서 지명되어야 한다.

11.9.2.a 이들은 경기 동안에 제기되는 모든 주장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은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항소권의 대상이 된다.

11.9.2.b 심사위원은 규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위반 사항이 경기의 범위 밖에서도 발생될 시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경기에서의 위반 사항이 즉시 발견 될 경우에 가능하다.

11.9.3 이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1.9.3.a 규정 위반이 벌어졌을 때 부과할 벌칙을 결정한다.

11.9.3.b 특별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11.9.3.c 히트제인 경우에는 히트의 구성 또는 수를 바꿀 수 있다.

11.9.3.d 동률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출발을 허가할 수 있다.

11.9.3.e 사실 판정관이 내놓은 정정 처분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사실 판정을 하여 기각할 수 있다.

11.9.3.f 벌칙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9.3.g 실격 처분을 선언할 수 있다.

11.9.3.h 순위를 바꿀 수 있다.

11.9.3.i 위험하다고 간주하거나 경기위원장이 위험하다고 보고한 어떤 차량 또는 어떤 선수이든 경기 참가를 금지시킬 수 있다.

11.9.3.j 참가할 자격이 없거나 부당 행위 또는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 또는 경기위원장이나 조직위원회가 그와 같이 보고한 어떤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이든 한 경기에서 또는 전체 경기 동안 제외시킬 수 있다.

11.9.3.k 책임을 맡은 오피셜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한 어떤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이든 지정 장소에서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1.9.3.l 불가항력적인 상황 또는 심각한 안전에 관한 근거가 있을 경우 경기를 연기시

킬 수 있다.

11.9.3.m 경기위원장 또는 주최자가 안전을 위해서 요청할 경우 공식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11.9.3.n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결석할 경우, 특히 심사위원 세 명의 참석이 필수인 경우에는 한 명, 또는 필요하다면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11.9.3.o 경기의 일부 또는 전부, 일시적 또는 완전히 중단시키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1.9.3.p 최종 순위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11.9.3.q 기술 점검을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1.9.3.r FIA(또는 ASN)의 요청에 따라, 검사할 드라이버 수를 정하여, 규정에 의한 음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1.9.3.s 레이스 디렉터가 직무를 맡고 있는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그리고 시리즈에 대해서는 레이스 디렉터가 제출한 문제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1.9.3.t 어떤 이유로든 경기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심사위원들은 그 권한을 같은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후속 심사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대안으로는 권한 위임을 목적으로 구성되며 원래의 심사위원회를 선택하는 책임을 맡았던 주체가 선택한 심사위원회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내 심사위원이 심사위원회의 일부일 경우, 원래의 심사위원을 임명했던 ASN은 후속 개최지에 심사위원 한 명을 보내거나 국내 심사위원의 권한을 후속 심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1.9.3.u 심사위원회는 판정을 위해 비디오 또는 전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11.9.4 모든 순위 및 결과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들은 오피셜들에 의해 발표되어야 하고, 공지 시간과 함께 공식 게시판에 발표되어야 하며 디지털 게시판 또한 공지 시간이 함께 공지되어야 한다.
공식 게시판과 디지털 게시판에 공지된 경우 공식 게시판에 게시한 시간이 우선시 된다.

11.9.5.a FIA 도핑 방지 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FIA 도핑 방지 징계 위원회의 독점 권한에 속한다.

11.9.5.b FIA 포뮬러 원 재정규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FIA Cost Cap Administration과 FIA Cost Cap Adjudication Panel의 독점적 권한에 속한다.

제11.10조 레이스 디렉터의 임무 (서킷 레이스에서만 적용)

11.10.1 레이스 디렉터는 각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기간 동안 임명될 수 있다.

11.10.2 경기위원장은 언제나 레이스 디렉터와 협의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1.10.3 레이스 디렉터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도록 하며 경기위원장은 레이스 디렉터의 동의가 표명된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11.10.3.a 일정표에 맞는 연습주행과 예선의 통제, 일정표의 변경 (국제스포츠규정과 경기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 제출이 필요할 경우)

11.10.3.b 국제스포츠규정과 경기규정에 따라 차량을 멈추게 함 또는 정지.

11.10.3.c 경기 진행에 재시작 절차가 동반되는 위험이 판단될 경우, 규정에 따라 연습주행 또는 레이스 중단.

11.10.3.d 시작 절차.

11.10.3.e 세이프티 카의 사용.

11.10.4 만약 위의 규정과 다른 임무와 책임이 필요한 업무가 필요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은 관련 경기규정에 명시가 될 것이다.

제11.11조 경기위원장의 임무

11.11.1 경기위원장은 경기 사무국장을 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11.11.2 여러 경기로 구성된 대회에서는 각 경기마다 경기위원장을 별개로 둘 수 있다.

11.11.3 경기위원장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서 경기를 지휘한다.

11.11.4 특히, 적절한 경우에는 레이스 디렉터와 협력하여 다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1.11.4.a 경기 행사의 치안을 유지하며 공공 안전에 대해서 더욱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군 및 경찰 당국과 함께 총괄적으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11.11.4.b 모든 오피셜이 각자의 포스트에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1.11.4.c 모든 오피셜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1.11.4.d 경기 참가 팀과 이들의 자동차를 통제하며 자격 상실, 출장 정지, 또는 제외된 경기 참가 팀 또는 선수가 자격이 없는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11.11.4.e 각 자동차,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 경기 참가자가 공식 프로그램에 따라서 올바른 식별 번호를 붙이도록 보장해야 한다.

11.11.4.f 각 자동차를 그 범주와 등급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선수와 마샬이 운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1.11.4.g 자동차가 올바른 순서로 출발선까지 오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신호를 낸다.

11.11.4.h 공식 프로그램 변경, 또는 경기 참가자의 규정 위반, 또는 항의에 대한 어떤 제안이든 심사위원회에 전달한다.

11.11.4.i 항의 접수 시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심사위원회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

11.11.4.j 기록 오피셜, 기술 오피셜, 트랙 또는 로드 마샬로부터 보고서와 함께 결과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다른 공식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11.11.4.k 책임이 있는 경기에 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도록 이벤트 사무국장에게 준비시키거나 요청해야 한다.

11.11.4.l 국제경기에서 FIA가 합리적으로 결정한대로 제12.2조에 명시된 위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해당 구역에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제11.12조 경기 사무국장의 임무

11.12.1 경기 사무국장은 경기의 조직, 그리고 이에 관련되어 필요한 모든 발표를 책임지며, 경기 참가자와 선수에 관련된 모든 문서의 검사를 맡는다.

11.12.2 경기 사무국장은 다양한 오피셜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숙지하고 필요한 장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1.12.3 필요하다면 경기 사무국장은 각 경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경기

위원장에게 재청할 수 있다.

제11.13조 기록 오피셜의 임무

기록 오피셜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다.

11.13.1 경기 시작 때에 경기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며 경기위원장은 이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린다.

11.13.2 경기위원장이 지시를 내릴 때마다 경기를 시작 시킨다.

11.13.3 ASN이 승인한 장치만을 써서 시간을 계측하며, 1000분의 1초 정밀도의 시간 측정값이 필요하다면 FIA의 인증을 받은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11.13.4 각 경기 차량이 코스를 완전히 주행했을 때 계측된 시간을 발표해야 한다.

11.13.5 각자의 책임에 따라서 보고서를 준비하며 이에 서명하고 경기위원장에게 보고서와 함께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11.13.6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본 시간 기록표를 심사위원회와 ASN에 전달해야 한다.

11.13.7 심사위원회 그리고 경기위원회가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시간 기록 또는 결과 든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제11.14조 기술 오피셜의 임무

11.14.1 기술 오피셜은 자동차의 모든 검사를 맡으며, 보조 인력에게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

11.14.2 이들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1.14.2.a 해당 스포팅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 전에는 ASN이나 조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 도중에는 경기위원장 그리고/또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를 수행한다.

11.14.2.b ASN에서 지정 또는 승인할 수 있는 검사 장비만을 쓴다.

11.14.2.c 어떤 공식 정보 든 ASN, 조직위원회, 심사위원회 그리고 경기위원회를 제외한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11.14.2.d 자신의 책임으로 보고서를 준비하며 이에 서명하고, 위에 언급한 지휘권자 중 이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제11.15조 트랙 또는 로드 마샬과 플래그 마샬의 임무

11.15.1 트랙 또는 로드 마샬은 코스를 따라서 설치된, 조직위원회가 배치한 자신의 포스트에 상주해야 한다.

11.15.2 경기가 시작하는 즉시 각 트랙 또는 로드 마샬은 경기위원장의 통제 아래에 놓이며 자신이 책임을 맡은 부분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 또는 사고를 어떤 처리 수단으로든 (전화, 신호, 배달 그 밖에) 즉시 경기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1.15.3 플래그 마샬은 특별히 깃발 신호를 맡는다(국제스포츠규정 부칙 H 참조). 이들은 트랙 또는 로드 마샬을 겸할 수 있다.

11.15.4 트랙 또는 로드 마샬은 자신이 기록한 사건 또는 사고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경기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16조 사실 판정관의 임무

11.16.1 스타터 오피셜

11.16.1.a 레이스의 조직위원회에서 레이스 출발 감시를 위해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판정관을 임명할 수 있다.

11.16.1.b 스타터 오피셜은 어떤 부정 출발이든 일어난 것으로 보이면 경기위원장에게 즉시 알린다.

11.16.2 피니쉬 오피셜

차량이 결승선을 통과한 순서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기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피니쉬 오피셜이 임명되어야 한다.
경기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시간(기록)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 사람이 기록위원장이 된다.

11.16.3 기타 판정관

특정한 선에 닿거나 이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른, 또는 경기의 특별규정 또는 무엇이든 적용되는 규정에서 정한 그 밖에 사실에 따른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경기에서는 이러한 결정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에 대한 책임을 맡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사실 판정관을 주최자가 제안하고 심사위원회가 승인해야 한다.

11.16.4 보조 판정관

위 판정관 각각은 이들을 지원하거나,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 임명된 보조 판정관을 둘 수 있으나, 이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실 판정관 자신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11.16.5 오심

판정관이 자신이 오심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나, 심사위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한정한다.

11.16.6 판정되어야 할 사실

경기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사실 판정관이 판정해야 할 사실을 지정해야 한다.

11.16.7 사실 판정관의 이름이 공식 게시판 또는 디지털 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제12조 반칙 또는 위반 및 처벌

제12.1조 일반 조항

12.1.1 책임

12.1.1.a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는 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된 반칙 또는 위반에 대해 처벌 받을 수 있다.

12.1.1.b 반칙 또는 위반을 저지르려고 했던 시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12.1.1.c 선동자 또는 공범자도 반칙 또는 위반에 가담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1.2 기소 제한 시간

12.1.2.a 침해 기소에 대한 법적 한도는 5년이다.

12.1.2.b 시효 실행:

- 반칙 또는 위반을 저지른 날로부터.

- 마지막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연속 또는 반복된 반칙 또는 위반의 경우.

- 반칙 또는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중지된 날로부터.

12.1.2.c 그러나, 범죄 또는 침해가 심사위원이나 FIA의 기소 기관으로부터 은폐된 모

든 경우에, 시효는 범죄 또는 침해의 사실이 심사위원 또는 FIA의 기소 기관에 알려진 날부터 시행된다.

12.1.2.d 시효는 FIA 사법 및 징계 규칙 제1장에 따라 수행되는 기소 또는 조사에 의해 중단된다.

제12.2조 규정 위반

12.2.1 이전 또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모든 벌칙 이외에, 다음에 언급되는 사항은 이 규칙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12.2.1.a 경기에 관한 오피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또는 경기에 어떤 식으로든 고용된 모든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주려는 모든 시도, 또는 이들 오피셜이나 피고용인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12.2.1.b 어떤 경기에 참가 자격이 없는 자동차가 참가 또는 참가 신청을 하려는 모든 행위.

12.2.1.c 어느 경기 참가자든 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모터스포츠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부정 행위 또는 행동.

12.2.1.d FIA, ASN의 목적에 반하거나 어긋나는 모든 시도.

12.2.1.e FIA, ASN 결정에 대한 모든 거부 또는 불이행.

12.2.1.f FIA의 조직, 구성원 또는 임원에게 도덕적 상해 또는 손실을 초래한 모든 언행, 행위 또는 저작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터스포츠의 이익과 FIA의 가치를 해치는 것.

12.2.1.g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행위.

12.2.1.h 무엇이든 안전하지 않은 행동 또는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로 벌어진 모든 안전하지 않은 상황.

12.2.1.i 안전 그리고 경기의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한 관련 오피셜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12.2.1.j FIA 서킷 주행 규칙(국제스포츠규정 부칙 L)을 따르지 않는 행위.

12.2.1.k 다음에 대한 모든 위법행위.

다음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라이선스 보유자,
- 오피셜,
- FIA의 임원 또는 직원,
- 주최자 또는 프로모터 직원,
- 참가자/팀 직원,
- 도핑 관련 오피셜 또는 부록A에 따라 수행되는 도핑 관리 담당업무 관계자.

12.2.1.l 경기에서 공정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비 스포츠맨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스포츠윤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12.2.1.m 폭력이나 증오에 대한 공개적인 선동.

제12.3조 벌칙

12.3.1 FIA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또는 국내규정 또는 특별 규칙에 대하여 주최자, 오피셜, 경기 참가자, 선수, 참가자, 다른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조직이 무엇이든 위반을 한 경우에는 벌칙 처분을 받는다.

12.3.2 벌칙 또는 벌금은 다음 조항에서 정한 대로 대회 심사위원회나 ASN이 부과한다.

12.3.3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조항에 따라 즉시 구속력이 있다.

12.3.3.a 만약 아래의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가 항소하는 경우, 특히 이후 경기 참가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핸디캡 규칙이든 그 적용을 결정하기 위해 페널티가 유예되어야 한다.

항소에 따른 유예 결정은 그 경기 참가자와 선수가 시상식 또는 포디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경기 종료 시에 최종 순위에서도 벌칙을 적용한 결과를 얻게 되는 순위가 아닌 다른 순위로 표시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는다.

항소재판소에 제출된 항소에서 승소할 경우, 시간 경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기 참가자와 선수의 권한은 회복된다.

12.3.3.b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아래 제12.3.4조에 따른 항소 대상이 아닌 결정에 관한 경우 또는 다음 사항에 관한 경우 항소시에도 즉시 구속력을 갖는다.

- 안전에 대한 질문(알코올 테스트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침해 포함)

- 제12.2조의 위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규정 위반
- 경기 참가자의 불규칙한 참가에 대한 질의
- 자동차 광고와 관련된 질의 (위 제10.6조), 또는
- 동일한 경기 기간 중에 추가 위반을 저지르면 해당 참가자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다.

12.3.4 특정(아래) 경우의 결정들은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스톱 앤 고 페널티, 그리고 각 대회규정에 명시되어 적용 가능한 다른 페널티를 부과하는 결정에 대한 것들도 항소 대상이 될 수 없다.

12.3.5 이 조항, 그리고 이후 조항들과 관계 없이, FIA의 감찰기구는 FIA 옵서버의 제안과 보고, FIA가 선임한 이벤트의 국제 심사위원 두 명의 공동 보고서, 또는 FIA재판 및 징계 규칙에 따른 자체 발의로, 앞서 언급한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든 이벤트의 심사위원회가 발표한 벌칙을 대신해서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벌칙을 부과하기 위해 문제를 국제재판소(제11.9.5조 내용 제외)에 회부할 수 있다.

12.3.5.a 국제재판소 회부에 따르는 과정은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설명되어 있다.

12.3.5.b 국제재판소가 제재 조치를 결정하면 이에 대한 항소를 국제 항소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된 ASN은 관련 당사자를 대신한 항소 제기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4조 벌칙의 범위

12.4.1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은 다음과 같다:

12.4.1.a 경고

12.4.1.b 견책

12.4.1.c 벌금

12.4.1.d 공익 업무 수행 의무

12.4.1.e 선수의 예선 및 연습 랩 삭제

12.4.1.f 그리드 강등

12.4.1.g 선수에게 레이스를 피트 레인에서 출발하도록 강제

12.4.1.h 타임 페널티

12.4.1.i 페널티 랩

12.4.1.j 경기 참가자의 순위 강등

12.4.1.k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12.4.1.l 스톱 앤 고 그리고 스톱 앤 고와 미리 정해진 스톱 시간

12.4.1.m 자격 상실

12.4.1.n 출장 정지

12.4.1.o 제외

12.4.2 시간 벌칙은 분 그리고/또는 초로 표현되는 벌칙을 뜻한다.

12.4.3 벌칙은 같은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즌의 후속 경기에 적용될 수 있다.

12.4.4 증거를 검토한 후 조사를 진행하고 나서 위 벌칙 가운데 한 가지만을 적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적용할 경우에는 변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를 소환해야 한다.

12.4.5 모든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시리즈에서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1개 또는 그 이상의 경기에 대한 출장 정지, 그리고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시리즈의 포인트 몰수.

12.4.5.a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선수와 경기 참가 팀의 포인트를 별개로 몰수할 수는 없다.

12.4.6 위의 제12.3.1조와 제12.3.5조에 언급된 벌칙은 집행이 누적 또는 유예될 수 있다.

12.4.7 국제재판소는 또한 FIA 또는 FIA를 대표하는 주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조직하는, 또는 FIA의 규정과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경기, 이벤트, 또는 챔피언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가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접 금지시킬 수 있다.

제12.5조 벌금

12.5.1 어떤 규정이든 또는 경기 오피셜의 어떤 지시든 이를 거부하는 경기 참가자는

물론 선수, 관련자, 탑승자 또는 주최자(12.2.1항에 언급된)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5.2 벌금 부과는 ASN 또는 경기 심사위원회에서 명령할 수 있다.

12.5.3 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벌금을 부과했다면 해마다 FIA에서 정하는 특정한 액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제12.6조 대회 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

심사위원회 또는 FIA 공식 공고를 통해 발표되는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250,000€(이십오만 유로)다.

제12.7조 벌금 납부에 대한 책임

경기 참가 팀은 그의 소속 선수, 스태프, 탑승자, 그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12.8조 벌금 납부 기한

12.8.1 벌금은 통보를 받은 지 48시간 안에 전자 결제 수단을 포함한 어떤 지불 방식으로든 납부해야 한다.

12.8.2 벌금 납부를 지연하면 벌금을 내지 않은 기간 동안 출장 정지 처분이 따른다.

12.8.3 경기에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이 납부되어야 한다.

경기 동안 발생된 벌금	납부처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또는 시리즈 경기	FIA
국제 시리즈 경기	국제 시리즈의 모국(Parent) ASN
여러 나라의 영토에서 개최되는 경기	국제 스포츠 캘린더에 등재된 ASN
지역 챔피언십 경기	지역 경기를 조직한 ASN
자국 챔피언십 경기	자국 챔피언십을 조직한 ASN
자국 경기	자국 챔피언십을 조직한 ASN

제12.9조 자격 상실

12.9.1 대회 심사위원회는 참가 자격 상실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2.9.2 경기 전체에 대한 자격 상실 처분을 받으면 참가비는 몰수되어 주최자에게 귀속된다.

제12.10조 출장 정지

12.10.1 국제스포츠규정과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따른 처분에 더해서 ASN은 출장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위반에 한정한다.

12.10.2 출장 정지 처분을 받으면 효력이 있는 기간 동안, 이 처분이 국내인지 국제인지에 따라서 ASN의 관할 영토 또는 FIA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모든 나라의 영토 안에서 개최되는 어떤 경기에서든, 어떤 지위로도 참가할 권리를 잃게 된다.

12.10.3 출장 정지 처분은 또한 그 정지 기간 동안 열리는 어떤 경기에 대해서든 이전에 얻은 참가 자격을 무효로 만들며 이러한 참가 신청을 위해서 지불한 비용은 몰수된다.

제12.11조 잠정 정지

12.11.1 FIA가 후원하여 주최하는 경기에서 참가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질서 또는 모터스포츠의 이익을 이유로, 국제 재판소는 FIA 회장의 요청에 따라서 FIA가 조직한 레이스, 경기, 또는 다른 이벤트의 틀 안에서 특히 FIA가 발급한 공인 라이선스 또는 승인을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12.11.2 모든 잠정 정지 처분은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따라서 내려져야 한다.

12.11.3 공인, 라이선스, 승인을 잠정적으로 정지당한 사람은 이러한 정지 조치를 회피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제12.12조 라이선스의 취소

12.12.1 국내 출장 정지

12.12.1.a 국내에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 참가팀 또는 선수는 ASN에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하며, ASN은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 압인을 찍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국가명)에서는 유효하지 않음."

12.12.1.b 출장 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압인이 찍힌 라이선스는 새 라이선스로 교환 된다.

12.12.2 국제 출장 정지

국제적으로 출장 정지 처분을 당한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는 ASN에 라이선스를 반납해야 하며 정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돌려주지 않는다.

12.12.3 위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ASN에 대한 라이선스 반납이 지체되는 기간만큼 정지기간에 추가된다.

제12.13조 출장 정지의 효력

12.13.1 ASN이 내린 자격 정지 처분은 그 ASN의 영토 안에서만 적용된다.

12.13.2 그러나 ASN에서 해당 라이선스 보유자(참가자, 선수, 오피셜, 주최자 등)의 명백한 규정 위반에 의한 자격 정지 처분을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할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 FIA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 FIA 사무국은 모든 ASN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자격 정지 처분은 각 ASN이 곧바로 인지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규제가 효력을 발휘한다.

12.13.3 ASN에게 인정을 받은 이러한 자격 정지는 www.fia.com 웹사이트 그리고/또는 공식 공고에 게시된다.

제12.14조 제외

12.14.1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 처분은 ASN에서 내릴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심각한 위반에 한정한다.

12.14.2 제외는 언제나 국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모든 ASN에게 통보되며 국제 자격 정지 조건에 따라서 등록된다.

제12.15조 국제 스포츠 기구에 대한 벌칙 통보

12.15.1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출장 정지와 제외는 FIA가 부과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호혜주의를 기반으로 합의한, FIA가 지정한 국제 스포츠 기구들에게 통보된다.

12.15.2 이들 기구로부터 FIA에 통보된 모든 출장 정지와 제외 처분은 FIA에서 그와 같은 범위로 시행한다.

제12.16조 출장 정지 또는 제외 이유 언급

ASN은 출장 정지 또는 제외의 대상자에게, 또 FIA 사무국에 이 사실에 대해 통보 할 때 이러한 처벌을 내리는 이유를 꼭 알려야 한다.

제12.17조 자동차의 출장 정지 또는 제외

특정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 모델에 대한 출장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2.18조 포상의 상실

대회 도중 자격 상실, 출장 정지, 또는 제외를 당한 경기 참가자는 해당 경기에서 수여되는 어떤 상도 받을 자격을 잃는다.

제12.19조 순위와 포상의 수정

경기 참가자의 경기 기간 동안에 자격 상실, 출장 정지 또는 자격 상실이 된 경우, 경기심사위원회는 그 결과로 수정되는 순위와 포상을 발표하며, 다음 순위 경기 참가자의 순위를 올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12.20조 벌칙의 발표

12.20.1 FIA 또는 ASN은 사람, 자동차, 또는 자동차 모델에게 벌칙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공고문을 만들거나 발표할 권리가 있다.

12.20.2 어떤 결정이든 이에 대해 항소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공고문에 언급된 사람은 FIA, ASN 또는 해당 공고문을 발표한 누구를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제12.21조 처분의 감면

ASN은 스스로 결정한 조건에 따라서 아직 만료되지 않은 제외 기간을 감면하거나 자격 취소를 해제할 권한을 갖는다. 단, 원래의 벌칙을 ASN이 부과했을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 항의

제13.1조 항의를 할 권리

13.1.1 항의를 할 권리는 경기 참가자에게만 있다.

13.1.2 여러 경기 참가자가 공동으로 항의를 할 수 없다.

13.1.3 하나가 넘는 동료 경기 참가자들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기 참가자는 관련 행위에 연루된 경기 참가자들의 수만큼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13.2조 항의의 대상

13.2.1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

-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
- 코스의 길이
- 핸디캡
- 히트 또는 결승의 구성
- 경기 중 발생하는 오류 또는 부정, 또는 규정 위반
- 차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의심되는 사항
- 경기 종료 후 순위

제13.3조 항의 시간 제한

항의	시간 제한
13.3.1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	차량 사전 검차가 끝난 시간으로부터 늦어도 2시간 전까지
13.3.2 코스의 길이	

13.3.3	핸디캡	경기 시작 1시간 전까지 또는 스포팅 규정 또는 특별규정에 정의된 규정 적용
13.3.4	히트 또는 결승의 구성	스포팅 규정 또는 특별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히트 또는 결승 구성 발표 후 30분 전까지
13.3.5	경기 중 발생하는 의심되는 오류나 부정, 경기 규정 위반	다음을 제외하고 잠정 결과 발표 후 30분 이내 - 심사위원회가 30분 이내 항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게시판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 발생시(제11.9.4항) 또는 - 적용되는 스포팅 규정 또는 특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13.3.6	차량 규정 위반에 대한 의심되는 항의	
13.3.7	경기 종료 후 확정된 결과	

제13.4조 항의의 제출

13.4.1 항의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관련 규정들
- 항의 당사자의 관련 내용
- 항의 대상과 발생 시간, 장소

여러 참가자들과 관계된 경우, 각 참가자에 대한 별도의 항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한 드라이버가 여러 차량들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 대하여 별도의 항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2 각 항의는 보증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보증금 액수는 그 나라의 ASN에서 매년 결정한다.

- 국제 시리즈를 주최하는 ASN
- ASN이 국내 챔피언십을 주최하고 국제스포츠규정 제2.4.4.c조 또는 제2.4.4.e조에 따라 경기를 조직
- FIA에 의한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그리고, 경기 스포츠 규정 또는 보충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보증금은 항의가 인정되었을 때에만 반환된다.

13.4.3 차량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차량 부적합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의된 차량의 부품 해체와 재조립을 요구하는 항의의 경우, FIA 기술 대표(임명된 경우) 또는

기술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추가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추가 보증금은 심사위원회가 통지한 후 1시간 이내로 항의자가 지불해야 한다(또는 그들이 동의한 시간 이내에) 그렇지 않으면 해당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13.4.4 항의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지불하여야 한다.

항의 제기 동안	납부처
FIA 챔피언십, 컵, 챌린지, 트로피 또는 시리즈 경기	FIA
국제 시리즈 경기	국제시리즈의 모국 ASN
여러 나라의 영토에서 개최되는 경기	국제 스포츠 캘린더에 등재된 ASN
지역 챔피언십 경기	지역 경기를 조직한 ASN
국내 챔피언십 경기	자국 ASN
국내 경기	자국 ASN

제13.5조 항의를 제출할 곳

13.5.1 경기에서 발생한 항의는 심사위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ASN 규정에 의해 경기 사무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13.5.2 만약 항의가 있다면 경기위원장 또는 그 보조요원에게 항의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경기위원장 또는 그 보조원이 부재시에는 항의는 심사위원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13.5.3 차량 검차가 주최자의 국적과 다른 나라에서 수행될 때에는 그 다른 나라 ASN의 오피셜 중 누구든 항의를 접수 받아 필요하다면 타당한 의견과 함께 최대한 빨리 심사위원회에 전달할 권리가 있다.

13.5.4 항의 접수는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하고, 접수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3.6조 심리

13.6.1 항의가 제출되고 나면 항의를 제기한 사람 그리고 항의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

를 상대로 한 심리가 최대한 빨리 열려야 한다.

13.6.2 관련 당사자들은 심리에 참석하도록 소환되며, 증인을 동반할 수도 있다.

13.6.3 대회 심사위원회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소환 통보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13.6.4 관련 당사자 또는 이들의 증인 가운데 누구든 없을 경우에는 결석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13.6.5 관련 당사자들의 심리 뒤에 곧바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때에는 그 결정 시간과 장소를 통보 해야 한다.

제13.7조 인정되지 않는 항의

13.7.1 직무 수행 중인 오피셜이 판정한 사실에 대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3.7.2 이 판정은 심사위원회에서 번복하지 않는 한은 최종이지만, 판정 만으로 순위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선수가 어떤 조건에서 코스를 완주했는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3.7.3 1명 이상의 경기 참가자를 상대로 한 한번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3.7.4 여러 경기 참가자가 공동으로 제기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13.8조 포상과 시상의 발표

13.8.1 항의 제기 대상이 된 경기 참가자가 획득한 포상은 그 항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보류되어야 한다.

13.8.2 더 나아가, 그 결과가 경기의 순위를 바꿀 수 있는 항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주최자는 잠정 순위만을 발표할 수 있으며 모든 포상은 그 항의(항소를 포함하여)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보류된다.

13.8.3 그러나 항의가 순위의 일부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에는 항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포상이 수여된다.

제13.9조 판결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항소를 조건으로, 내려진 결정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지만 심사위원회는 물론 ASN에서도 경기를 다시 치르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13.10조 근거 없는 항의

13.10.1 항의가 기각되거나 제기된 뒤 철회되었다면, 항의 보증금은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13.10.2 일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며, 항의가 인정되면 전체를 반환한다.

13.10.3 더 나아가, 항의를 제기한 사람이 부정직한 행동을 한 것이 입증되면, ASN은 이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벌칙 가운데 한 가지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 재검토 권한

14.1.1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또는 국제 시리즈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회에서, 당사자가 해당 시점에 재검토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이후 중요하고 관련성 있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건에 대해 판정했던 심사위원이나, 이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FIA에서 지명한 사람이 해당 판정에 대한 진정서/탄원서를 재조사 할 수 있으며

- 관계 당사자 중 어느 한쪽 및/또는 결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 또는
- FIA 스포츠 사무국장.

심사위원들은 서로 합의된 날짜에 만나야 하며(직접 또는 다른 방법으로든) 당사자 또는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관련 내용 설명을 듣고 그전에 제기된 사실과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4.1.2 관련 당사자들은 그들의 심리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14.2 심사위원회 본래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본래 결정된 판단에 대한 중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14.3 심사위원회는 관련 있는 중요한 새로운 정보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할 유일한

재량권을 가진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해, 어떠한 정보(구성요소) 존재의 여부는 국내항소재판소 또는 국제항소재판소에 앞서 항소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14.4.1 재검토에 대한 청원이 제기될 수 있는 기간은 대회 종료 후 14일에 만료된다.

14.4.2 더욱이,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내에서는 FIA prize-giving 시상식 일자로부터 최소 4일 전부터는 경기 재검토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없다.

14.5 이 새로운 결정에 대한 항소 권한은 국제스포츠규정 제12.2.4조를 침해 없이, 국제스포츠규정 제15조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에게 국한된다.

14.6 최초의 결정이 국내 항소재판소 또는 국제 항소재판소에, 아니면 연속적으로 양쪽 재판소 모두에 이미 제기되었던 항소의 안건이라면, 이 사건은 합법적으로 이들 재판소에 제출되어 이전 결정에 대해 가능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항소

제15.1조 관할권

경기별 구분		담당 항소 재판소
15.1.1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ISC 2.3.7.b, 2.4.4 와 2.4.5)	ASN의 국내 항소 재판소(최종)
15.1.2	여러 나라의 영토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기 (ISC 7.1)	국제 스포츠 캘린더 등록을 요청한 ASN의 항소 재판소
15.1.3	존(Zone) 챔피언십	해당 국가 ASN의 항소 재판소
15.1.4	국제 시리즈	국제 시리즈의 모국의 ASN 항소 재판소
15.1.5	FIA 챔피언십, 트로피, 챌린지 시리즈	국제 항소 재판소(FIA의 규정 및 징계 규칙에 따라)

제15.2조 국제 항소 재판소

국제 항소 재판소(국제항소법원)은 국제스포츠코드(ISC) 15.1.2부터 15.1.4에 따

라 이루어진 국내항소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할권을 갖는다(FIA 규정 및 징계 규칙).

국제 항소 재판소의 항소 절차 및 다른 운영 규칙은 웹 사이트(www.fia.com)에 게시된 FIA 재판 및 징계 규칙에 포함되어 있다.

제15.3조 국내 항소 재판소

15.3.1 ASN은 ASN의 회원이거나 회원이 아닌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임명하여 국내 항소 재판소를 구성한다.

15.3.2 국내 항소 재판소의 어떤 구성원도 심리 중인 경기의 경기 참가자, 선수, 또는 오피셜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면, 또는 심의 중인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이전의 결정에 참여했거나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했다면 그 사건을 맡을 수 없다.

제15.4조 국내 항소 재판소에 항소 절차

15.4.1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받은 참가자, 주최자, 드라이버 또는 기타 라이선스 보유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다음에 해당이 된다면 결정이 내려진 ASN의 국가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 해당 국제 시리즈의 모국ASN에, 또는
- 경기가 제2.4.4.c조 또는 2.4.4.e에 따라 조직된 경우, 국내 챔피언십 경기를 조직한 ASN에

이 조의 목적상, 주최자, 참가자, 드라이버 및 다른 라이선스 소지자는 자신 고유의 특성을 이유로 또는 다른 모든 개인들과 구별되어 차별화된 사실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15.4.2.a 결정이 발표된 지 한 시간 안에 서면으로 심사위원에게 항소할 뜻을 밝히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

15.4.2.b 위의 11.9.3.t 또는 14.1.1에 의거 한 결정의 경우 또는 심사위원이 1시간의 기한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의사에 대한 통지에 다른 기한을 설

정할 수 있다.

이 기한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정이 발표 된 후 2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ASN에 이의 제기가능 기한 및 보증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연기될 수도 있다.

15.4.3 ASN에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이 발표된 지 한 시간 안에 심사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항소할 뜻을 밝혀야 하며, 항소 의사는 심사위원회에게 통지한 시각으로부터 96시간 동안 유효하다.

15.4.4 항소는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통신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날 발송된 확인이 필요하다.

15.4.5 ASN은 최대 30일 안에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5.4.6 모든 당사자들은 항소의 심의에 대한 적절한 통보를 받는다. 이들은 증인을 부를 수 있으나 그가 심리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 진행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제15.5조 국내 재판소 전의 항소 형식

15.5.1 모든 항소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공인된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15.5.2 항소 보증금은 항소인이 심사위원회에 항소할 뜻을 밝힌 때로부터 납부 의무가 생기며 항소인이 항소할 뜻을 선언한 뒤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

항소 보증금 액수는 그 나라의 ASN에 의해서 매년 결정된다.

- 국제시리즈의 모국 ASN
- ISC 2.4.4.c 또는 2.4.4.e에 따라 조직된 국내 챔피언십의 ASN

15.5.3 상기 15.4.2.b 규정에 의거하여, 보증금은 심사위원회가 항소할 뜻을 통보 받은 지 96시간 안에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인의 라이선스는 보증금을 낼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15.5.4 항소가 기각되거나 제기된 뒤 철회되었다면, 항의 보증금은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15.5.5 일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보증금의 일부가 반환되며, 항소가 인정되면 전체를 반환한다.

15.5.6 더 나아가, 항의를 제기한 사람이 부정직한 행동을 한 것이 입증되면, ASN은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벌칙 가운데 한 가지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6조 국내 항소 재판소의 판결

15.6.1 국내 항소 재판소는 항소 대상이 된 벌칙 또는 다른 결정을 면제할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벌칙을 경감 또는 가중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경기를 다시 치르도록 명령할 권한은 없다.

15.6.2 국내 항소 재판소의 판결은 명확하고 근거가 충분해야 한다.

제15.7조 비용 (수수료 제외)

15.7.1 국내 항소재판소는 제출된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과에 따라 항소 절차와 재판소 회의를 준비하는 데 들어간 지출의 수준을 사무국에서 계산하여 재판소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

15.7.2 이 비용은 이러한 지출만으로 구성되며 당사자가 부담하는 지출과 변호료는 제외된다.

제15.8조 판결의 발표

15.8.1 FIA 또는 ASN은 항소의 결과를 발표하거나 공고문을 만들고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름을 명시할 권리를 가진다.

15.8.2 어떤 결정이든 이에 대해 항소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공고문에 언급된 사람은 FIA, ASN 또는 해당 공고문을 발표한 누구를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제15.9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규칙 안의 어느 부분도 어떤 당사자든 어떤 법원 혹은 재판소에든 법적 조치를 제기할 어떤 권리도 막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언제

나 다른 구제 방법 또는 대안으로 쓸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을 추구하기 전에 우선 받아들인 모든 의무를 다했을 경우로 한정한다.

제15.10조 스포츠 중재 재판소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FIA 반-도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 항소를 해결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이 있다.

제15.11조 세계반-도핑 프로그램의 준수

15.11.1 세계 반-도핑규정과 국제표준에 서명인은 의무가 수반(FIA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되고, FIA는 세계 반-도핑 규정 서명인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세계 반-도핑 규정을 다른 서명인에 대한 결과 및/또는 복직 조건을 부과하는 최종 결정을 인지하고 존중하며 전체를 제공되어야 한다(그러한 결과 및 / 또는 복직 조건이 세계 반 도핑기구에 의해 제안되고 해당 서명자가 동의했는지 여부 또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서 부과되었는지 여부).

15.11.2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세계반-도핑 규정의 서명인이 세계반-도핑 규정 서명인으로서 의무를 준수하는지, 또는 그러한 미준수 결과로 부과되는 복직 조건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15.11.3 FIA 사무국은 세계 반-도핑 규정에 대한 서명자가 미준수한 최종결정(세계 반-도핑 기구 또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 발표 여부)에 대하여 모든 ASN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하고, 그러한 미준수로 부과된 결과 /복귀 조건은 FIA 및 모든 사람, 기관, 조직은 FIA 규제권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최종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 www.fia.com 또는 FIA 공식 모터스포츠 블루틴에 공지될 것이다.

15.11.4 최종 결정이 적절한 경우 세계 반-도핑 기구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의해 지정한 날짜에 효력이 시작되며, FIA 및/또는 FIA의 규제 권한 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 단체, 조직은 해당 날짜로부터 최종 결정의 조건을 준수해야 된다.

15.11.5 FIA와 관련한 세계 반-도핑 기구 및 스포츠 중재 법원에서 내린 최종 결정은 FIA 및 해당 ASN에 의해서 동일한 범위로 시행된다. (규정 제1.4조에 따라)

FIA는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이에 대한 완전한 효력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규정 제12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 차량의 경기 번호와 광고에 관한 규칙

제16.1조

다르게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 번호의 숫자는 흰 바탕색 사각형 위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밝은 색깔의 자동차인 경우, 흰 바탕색 사각형의 둘레 전체에 걸쳐 5cm 너비의 검은 테두리가 쳐져 있어야 한다.

제16.2조

다르게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숫자는 다음에 보이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형식이어야 한다 : 1 2 3 4 5 6 7 8 9 0

제16.3조

다르게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자동차에는 다음 장소에 경기 번호가 붙어 있어야 한다.

16.3.1 자동차 양쪽, 앞쪽 문, 또는 콕핏과 같은 높이에.

16.3.2 앞에서 읽을 수 있도록 차량의 노즈 또는 보닛에.

16.3.3 1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16.3.3.a 숫자의 최소 높이는 23cm이며 획의 굵기는 4cm.

16.3.3.b 흰 배경색은 적어도 45cm 너비에 33cm 높이.

16.3.4 다른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16.3.4.a 숫자의 최소 높이는 28cm이며 획의 굵기는 5cm.

16.3.4.b 흰 배경색은 적어도 50cm 너비에 38cm 높이.

16.3.5 어느 지점에서도 숫자의 모서리와 흰 배경색의 모서리 사이 거리는 5cm보다 가까워서는 안 된다.

제16.4조

16.4.1 앞쪽 날개 양편에는 선수(들)의 국기(들) 그리고 선수의 이름(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16.4.2 이들 국기와 이름의 최소 높이는 모두 4cm이다.

제16.5조

16.5.1 흰 배경색 위아래로, 높이가 12cm이고 너비가 배경색 영역과 같은 영역은 주최차가 광고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16.5.2 이러한 영역을 확보할 수 없는 자동차(예를 들어서 몇몇 1인승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기 참가자는 흰 배경색 바로 부근에 이와 동등한 영역을 광고 없이 남겨두어야 한다.

16.5.3 ASN이 다르게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체의 남은 부분에 대한 광고는 자유다.

제16.6조

경기 번호 그리고 광고는 차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제16.7조

해당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한, 윈드스크린과 창문에는 광고를 붙일 수 없다. 단, 윈드스크린의 위쪽으로 최대 10cm 높이의 띠 모양 영역, 그리고 선수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뒤쪽 창문에 8cm 높이의 띠 모양 영역은 예외다.

제16.8조

히스토릭 자동차에 붙일 수 있는 광고와 경기 번호에 관련된 규정은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K에 정의되어 있다.

제17조 모터스포츠에 관련된 상업적 문제

제17.1조

FIA에게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속한 경기의 주최자 또는 주최자의 집단은 해당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상업 회사 또는 조직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재정 지원을 받는 것으로 믿도록 명시하거나 유도할 수 없다.

제17.2조

따라서 상업 회사, 조직 또는 브랜드의 이름을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와 묶을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FIA가 보유한다.

제18조 FIA 결정의 공식화

제18.1조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캘린더의 발표

18.1.1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와 이를 구성하는 경기의 목록은 해마다 10월 15일보다 늦지 않게 발표된다.

18.1.2 발표 뒤에 캘린더에서 취소되는 어떤 경기든 해당 년도의 국제적인 자격을 잃게 된다.

제18.2조 규정의 개정

FIA월드 모터스포츠 카운실은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포함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다음 규정에 따라서 발표되고 효력을 가지게 된다.

18.2.1 안전

안전을 이유로 FIA가 규정에 대해서 시행한 변경은 통지 또는 지체 없이 효력을 가진다.

18.2.2 자동차의 기술적 설계

국제스포츠규정 기술규정, 부칙 J 또는 부칙 K에 대해서 FIA가 채택한 변경은 해마다 6월 30일 이전에 발표되며 발표된 이듬해 1월 1일 이전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단, 이는 FIA에서 해당 변경이 자동차의 기술적 설계 그리고/또는 자동차 사이의 성능 균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했을 때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 변경은 발표된 다음다음 해의 1월 1일보다 빠르

지 않은 시기부터 효력을 가진다.

18.2.3 경기규정 그리고 다른 규정

18.2.3.a 위에서 언급한 규정 이외의 모든 규정과 스포츠 규칙의 변경은 늦어도 해당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엔트리 신청일에 발표되어야 한다.

18.2.3.b 이러한 변경은 발표된 이듬해 1월 1일 이전에는 효력이 없다. 단, 이는 FIA에서 해당 변경이 자동차의 기술적 설계 그리고/또는 자동차 사이의 성능 균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했을 때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 변경은 발표된 다음다음 해의 1월 1일보다 빠르지 않은 시기부터 효력을 가진다.

18.2.4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더 짧은 예고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에 정식으로 참가한 모든 경기 참가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었을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FIA가 문제 변경이 관련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적절하게 참가한 대부분의 선수 동의로 충분하다.

제18.3조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또는 시리즈 캘린더의 발표는 인터넷 사이트 www.fia.com 그리고/또는 공식 공고에 게시되는 대로 공식적인 문서가 되며 그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국제스포츠규정의 시행

제19.1조 규정의 국내 해석

각 ASN은 그 관할 영토 안에서 일어났으며 항소의 권리를 ISC 15.1 적용 받아, 국제스포츠규정 또는 그 국내규정의 해석에 관련된 어떤 사안이든 결정할 권한을 부여 받는다. 단, 이러한 해석은 FIA가 내놓은 해석 또는 해명과 상충되어서는 안된다.

제19.2조 국제스포츠규정의 변경

19.2.1 FIA는 언제든 "국제스포츠규정"을 바꾸고 정기적으로 그 부칙을 개정할 권한을 보유한다.

FIA 총회는 FIA 월드 모터스포츠 카운실의 단독 권한 내에 있는 부칙에 대한 수정을 제외하고 FIA 세계 모터 스포츠 카운실 제안에 대한 규정 수정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

제19.3조 통보

국제스포츠규정에서 ASN이 FIA에게 요구하는 모든 연락은 FIA 본부의 주소 또는 별도로 주어진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19.4조 이 규칙의 국제적인 해석

19.4.1 이 규칙은 프랑스어와 영어로 작성된다. 이 규칙은 다른 언어로 발표될 수 있다.

19.4.2 FIA 또는 국제 항소재판소에서 그 해석에 관련된 분쟁이 벌어질 경우, 프랑스어 원문만이 공식 원문으로 간주된다.

제20조 정의

다음의 정의는 국제스포츠규정 및 그 부칙, 모든 국내규칙과 그 부록, 그리고 특별규정에 채택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쓰여야 한다.

절대 세계 기록 : 범주, 등급, 또는 그룹에 관계없이 한 자동차가 공인된 거리 또는 시간 동안 거둔 가장 좋은 성과로서 FIA가 공인한 기록.

ASN(National Sporting Authority) : FIA Statutes 3.3조에 의해 FIA가 승인한 국내 자동차 클럽, 협회 또는 연맹으로 그 나라 안의 유일한 스포츠 권한 보유자이다. 또한, FIA Statutes 3.1조에서 정의된 것처럼 ASN은 ACN(National Automobile Club)을 겸할 수 있다.

자동차 : 모두가 한 줄로 늘어서 있지는 않는 적어도 네 개의 바퀴가 지속적으로 지면(또는 얼음)과 접촉해 있으며, 적어도 두 개의 바퀴는 조향에, 적어도 두 개의 바퀴는 추진에 쓰이고, 탑승한 선수가 그 동력과 조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제어하는 운송 수단. (경기의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차량,

트럭, 카트를 포함한, 그러나 이들만으로 한정되지 않은 다른 용어들을 자동차와 바꿔서 쓸 수 있다)

바하 크로스컨트리 랠리(FIA World Cup 제외) : 하루 동안 (포함되는 최대 거리 : 600km) 또는 이틀 동안 (포함되는 최대 거리 : 1,000km. 두 레그 사이에 최소 8시간, 최대 20 시간의 휴식 기간이 있어야 한다) 열리는 크로스컨트리 랠리. 추가로 하루 동안 슈퍼 스페셜 스테이지 가 운영될 수 있다. 선택적인 각 구간의 거리는 300km에서 801km여야 한다.

FIA월드챔피언십에 참가하는 경기 참가자의 스태프에 대한 등록증 : FIA 월드 챔피언십의 경기 참가자의 스태프 구성원이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서 FIA로부터 발급받는 등록증.

챔피언십 : 챔피언십은 여러 경기 또는 단일 경기일 수 있다.

서킷 : 고유한 설비를 포함하며,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며, 특별히 자동차 레이스를 위해 건설되거나 개조된 폐곡선 코스. 서킷은 설비의 특성 그리고 경기를 위한 이용 편의성에 따라서 임시, 준상설, 또는 상설일 수 있다.

서킷 레이스 : 폐곡선형 서킷에서 열리고 두 대 또는 그보다 많은 자동차 사이에서 벌어지며, 같은 코스에서 동시에 달리며, 속도 또는 주어진 시간 안에 달린 거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경기.

등급 분류 : 엔진 실린더 용량 또는 무엇이든 다른 구분 방법에 따라서 차량을 그룹으로 묶는 것. (FIA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D와 J 참조)

클로즈드 경기 : 국내경기가 ASN이 발급한 라이선스(경기 참가팀 또는 선수)를 가진 한 클럽의 회원만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클로즈드 경기라고 부를 수 있다. 클로즈드 경기는 ASN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여러 클럽이 개최하는 협정을 승인할 수 있다.

국제스포츠규정 : FIA 국제스포츠규정과 그 부칙.

경기 : 자체적으로 결과를 내는 단일 모터스포츠 활동. 경기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히트, 그리고 결승전, 자유 연습주행, 예선 연습주행 그리고 여러 범주의 결과로 구성되거나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는 완료되어야 한다. 다음은 경기로 간주된다 : 서킷 레이스, 랠리, 크로스컨트리 랠리, 드래그 레이스, 힐 클라임, 기록 도전, 테스트, 트라이얼, 드리프

트 그리고 FIA의 재량에 따른 다른 형태의 경기.

경기 참가팀/경기 참가자 :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경기든 그 참가가 받아들여진 모든 사람 또는 단체로 소속 ASN이 발급한 경기 참가자/선수 라이선스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컨트롤 라인 : 이곳을 지나는 순간 자동차의 시간이 계측되는 선.

코스 : 경기 참가자가 따르게 되는 경로

크로스컨트리 랠리(FIA World Cup 제외) : 전체 거리가 1,200에서 3,000km 사이인 경기. 선택적인 각 구간의 거리는 500km를 넘을 수 없다.

실린더 용량 : 피스톤이 위 또는 아래로 움직임에 따라서 실린더(또는 실린더들) 안에 만들어지는 부피. 이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로 표기되며 실린더 용량이 관한 모든 계산에서 원주율 Pi는 3.1416과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데모 주행 :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자동차가 성능을 선보이는 것.

자격 상실 : 서스펜션은 특정 기간 동안 (i) FIA 또는 ASN에 의해 조직되거나 규제되는 모든 경쟁에서 직간접 적으로 그리고 어떤 권한 으로든 참여할 권리 가있는 사람을 특정 기간 동안 박탈합니다. (ii) FIA 또는 ASN에 의해 조직 또는 규제 (또는 권한 하에) 또는 회원 또는 면허 소지자에 의해 조직 된 예비 시험 및 훈련.

드래그 레이스 : 적어도 두 대의 자동차 사이에서 벌어지며 하나의 직선 구간에서 출발선에서부터 레이싱을 벌이고, 정확하게 측정된 코스에서 결승선을 먼저 (벌칙 없이) 통과한 자동차가 더 나은 성적을 거두는 가속 시합.

선수 :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경기에서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소속 ASN이 발급한 선수 라이선스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가 : 참가는 경기 참가자와 주최자 사이의 계약이다. 이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을 하거나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체결될 수 있다.

EU의 프로페셔널 경기 참가팀 : 어떤 EU 회원국 또는 FIA가 결정한 이에 상당한 나라에서든 그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프로페셔널 경기 참가팀.

여기에서 프로페셔널 경기 참가자란 모터스포츠 참가로 얻은 급여 또는 스폰서십의 방법으로 받은 돈을 관련 당국에 신고하였으며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이 이러한 신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서류 형식의 증거물을 제공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획득은 했지만 관련 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는 이익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그의 직업적인 상태를 FIA가 만족한 개인 또는 단체를 뜻한다.

EU의 프로페셔널 경기 선수 : 어떤 EU 회원국 또는 FIA가 결정한 이에 상당한 나라에서든 그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프로페셔널 선수.

여기에서 직업적 선수란 모터스포츠 참가로 얻은 급여 또는 스폰서십의 방법으로 받은 돈을 관련 당국에 신고하였으며 라이선스를 발급한 ASN이 이러한 신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서류 형식의 증거물을 제공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획득은 했지만 관련 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는 이익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그의 직업적인 상태를 FIA가 만족한 개인을 뜻한다.

대회 :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경기, 퍼레이드, 데모 주행 또는 투어링 어셈블리로 구성된 경기.

제외 : 어떤 사람 또는 단체가 어떤 경기든 모두 참가를 완전히 금지 당하는 경우.
제외된 사람은 이전 엔트리가 무효 처리되고 엔트리 비용은 몰수 된다.
제외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계속해서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FIA : 국제자동차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위법행위 : 특별히 다음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모욕, 특히 공격적인 제스쳐, 몸짓 또는 언어 (서면 또는 구두) 사용,
- 폭행 (팔꿈치로 밀치기, 발차기, 주먹질, 몸싸움 등).

결승선 : 시간 계측 여부에 관계없이 마지막 컨트롤 라인.

불가항력 :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외부 요인으로 일어난 사건.

핸디캡 : 경기 참가자의 기회를 될 수 있는 대로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경기의 특별규정에서 정한 방법.

힐 클라임 : 자동차가 따로따로 출발하며 결승선이 보통 출발선보다 고도가 더 높은 곳에서 끝나는 같은 코스를 달리는 경기. 출발선과 결승선 사이의 거리를 달리는 데 걸린 시간이 순위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국제 챔피언십 : FIA 또는 FIA가 서면으로 인가한 다른 주체가 조직하는 국제

경기로만 구성된 챔피언십.

국제경기 : 국제스포츠규정과 부칙 안에서 FIA가 결정한 요건에 따른 국제적인 안전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경기.

국제 라이선스 : FIA를 대리하여 ASN이 발급한 라이선스이며 그 라이선스의 수준에 적절한 국제경기에 대해서 유효하다. 단, 이는 국제스포츠캘린더에 들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라이선스 : 어느 지위든 관계없이 국제스포츠규정에서 관할하는 경기에 참가 또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선수, 경기 참가자, 제조자, 팀, 오피셜, 주최자, 서킷, 그 밖에) 에게 발급되는 등록증.

라이선스 보유자의 등록 명부 : ASN이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 라이선스를 발급한 사람들의 목록으로 해당 ASN이 보유한다.

라이선스 번호 : ASN의 등록 명부에 오른 경기 참가자 또는 선수에게 해마다 지정하는 번호.

지역 기록 : 상설 또는 임시 트랙에서 거둔 기록으로 경기 참가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ASN이 승인한 것.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해당 FIA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랠리는 전체 거리가 적어도 5,000km인 크로스컨트리다. 선택적인 선택구간의 전체 길이는 적어도 3,000km는 되어야 한다.

마일과 킬로미터 : 마일법을 미터법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일 경우에는 항상 1마일을 1.609344 킬로미터로 환산한다.

국내 챔피언십 : ASN 또는 ASN이 서면으로 인가한 다른 주체가 조직하는 챔피언십.

국내 경기 : 국제경기의 하나 또는 그보다 많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모터스포츠 활동.

국내 기록 : ASN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그 관할 영토 또는 다른 ASN의 관할 영토에서(이 경우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수립되거나 경신한 기록. 국내 기록은 도전할 자격이 있는 자동차의 형식을 세분화한 등급 가운데 하나에 대해 나온 최고 결과일 경우에는 기록 등급에 관계없이 최고 기록일 경우에는 절

대 기록이 된다.

공식 프로그램 : 경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의 조직위원회가 준비하는 의무적인 공식 문서.

주최자 : ASN, 자동차 클럽 또는 다른 자격 있는 스포츠 단체.

조직위원회 : ASN에게 승인을 받고, 스포츠 경기의 주최자가 투자하고, 스포츠 경기의 조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특별규정을 집행하는 단체.

공인서 : 스포츠 경기의 조직을 허가하는 문서로 ASN이 발급한다.

세계 절대 육상 속도 기록 : 자동차의 등급 범주 또는 그룹에 관계없이 하나의 차량이 거둔 최고의 플라잉 스타트 마일의 결과.

퍼레이드 : 적정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집단을 보여주는 것.

파크 퍼미 : 경기 참가자가 그의 자동차를 가져와야 하는 장소로 적용되는 규정에 미리 예정되어 있다.

소속 ASN (Parent ASN – 라이선스 발급자 관련) : 라이선스 보유자의 국적 (여권 발행 국가)에 해당하는 ASN. 국제스포츠규정 안에 정의된 유럽 프로페셔널 선수인 경우, 소속 ASN은 라이선스 보유자가 실제로 영주하고 있는 EU 국가의 ASN일 수 있다.

소속 ASN (Parent ASN – 시리즈 경기 관련) : 시리즈 경기의 승인을 요청한 ASN으로 해당 ASN의 국내 규정에서 해당내용을 언급한 경우에는 국내 규정 승인 및 적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참가자 : 보호 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탑승자 : 선수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탄 사람으로 장비를 포함한 몸무게가 60kg보다 가볍지 않아야 한다.

랠리 :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열리는, 평균 속도를 부과하는 도로 경기. 하나의 랠리는 모든 차량이 따라야 하는 단일한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사전에 정해져 있는 같은 랠리포인트에 모이는 여러 개의 일정,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공통 일정이 있거나 없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경로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스페셜 스테이지, 곧 일반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 주최되는 이벤트로, 이들을 모두 합쳐서 랠리의 총 순위를 결정하는 구간을 하나 또는 여러 개 둘 수 있다. 스페셜 스테이지로 쓰이지 않는 일정은 로드 섹션이라고 부른다. 이들 로드 섹션은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일반 차량 통행이 개방되어 있는 도로를 부분 활용하는 경기지만 상설, 또는 준상설 서킷에서 진행되는 스페셜 스테이지가 랠리의 전체 거리 가운데 20% 보다 많은 경우에는, 진행 절차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스피드 경기로 보아야 한다.

기록 : 국제스포츠규정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에서 얻은 가장 좋은 결과.

기록 도전 : 국제스포츠규정에 따라 지역 기록, 국내 기록, 세계 기록, 세계 절대 기록, 세계 절대 육상 속도 기록을 깨기 위한 도전.

보호 지역 : 경기가 열리는 지역. 다음을 포함하지만 다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 트랙(코스)
- 서킷
- 패독
- 파크 퍼미
- 서비스 파크 또는 존
- 홀딩 파크
- 서킷인 경우에는 피트
- 대중에게 금지된 구역
- 통제 구역
- 미디어 전용 구역
- 급유 구역

특별 자동차 : 적어도 네 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으나 바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는 운송 수단.

스피드웨이 : 코너가 4개보다 많지 않은 상설 서킷으로 모든 턴은 같은 방향이다.

출발 : 출발은 하나의 경기 참가자에게 또는 동시에 출발하는 여러 경기 참가자에게 출발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는 순간이다.

출발선 : 시간이 계측되거나 계측되지 않는 첫 번째 컨트롤 라인이다.국제 슈퍼 라이선스는 FIA가 작성하고 이를 신청한 후보들에게 발급한다. 단, 이들이 이미 부칙 L에 따른 국내 라이선스 보유자임을 조건으로 하며 특정한 FIA 국제 챔피언십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일련의 규칙에서 정한 조건이 의무다.

특별규정 : 경기의 자세한 내용을 정할 목적으로 스포츠 경기의 조직위원회가 발표하는 공식문서.

자격 정지 : 어떤 사람 또는 단체가, 이들에 대해 지정된 기간 동안 자격 정지 처분을 선언한 ASN의 관할 영토 안에서, 또는 FIA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모든 나라의 관할 영토 안의 모든 경기에 참가가 금지되는 경우 이를 자격 정지라고 부른다.

테스트 :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또는 시간 내에 각 경기 참가자가 선택해서 주행할 수 있는 공식 시간을 말한다.

투어링 어셈블리 : 사전에 결정된 한 지점에 참가자들이 모이는 것 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조직되는 모터스포츠 활동.

트라이얼 : 여러 건의 거리 또는 기술 테스트로 구성된 경기.

세계 기록 : 특정한 등급 또는 그룹으로부터 거둔 가장 좋은 성과. 자동차, 그리고 특별 차량에 대한 세계 기록이 있다.

제21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KARA 공인 수수료

1. 2021 KARA 라이선스비

* 선수, 오피셜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며,
* 국제 라이선스를 비롯한 FIA 관련 라이선스, 연간, 단기, 아마추어 등록팀 등 단체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임.

대상	항목	구분		2021 금액(단위:원)	비고
정회원 연회비	연회비			30,000	
오피셜	라이선스비	A1	위원장	110,000	
		A2		90,000	
		B1	선임	70,000	
		B2		50,000	
		C1	요원	40,000	
		C2		30,000	
		D	요원 (Trial)	—	
		E	전문 오피셜	—	
		A+, S+	심사위원급	140,000	
		S1		140,000	
		S2		140,000	
	수수료	라이선스 재발급		10,000	
		경력증명서 발급		10,000	
선수	국내 라이선스비	레이스	A	140,000	
			B	110,000	
			C	50,000	
			J	50,000	
			D	20,000	
		카트	A	80,000	
			B	60,000	
			C	40,000	
			D	20,000	
		드래그	A	100,000	
			B	70,000	
			C	40,000	
			D	20,000	
		드리프트	D1	100,000	
			D2	70,000	
			D3	50,000	
			D4	20,000	
		짐카나	짐카나	10,000	

선수	국제 라이선스비	FIA 국제	A	1,530,000	
			B	1,030,000	
			C	530,000	
			D	330,000	
		FIA 공인랠리	R	430,000	
		CIK-FIA 국제 카트	A	530,000	
			B	330,000	
			C	230,000	
		선수 비자 (1회)	대회 1회 당	100,000	
		선수 비자 (1년)	시리즈 1년 기한	300,000	
		해외 ASN 라이선스 취득용 증명서		200,000	
	수수료	라이선스 재발급		10,000	
		경력증명서 발급		10,000	
기타	미캐닉	연간 라이선스	M	40,000	
	인스트럭터	연간 라이선스	I	200,000	
레이싱팀	등록비	영구등록	등록비	25,000,000	
		단기등록	등록비	5,000,000	
			연간갱신비	500,000	
		연간등록	연간등록비	1,000,000	
		아마추어	연간등록비	200,000	
카트팀		등록비		3,000,000	
		갱신비		300,000	
팀 관련 행정 수수료		팀 명 변경		100,000	
		팀 인증서 재발급		50,000	
레이싱스쿨	등록비	연간등록비		1,000,000	
대회 주최자	A	국제 및 국내대회	등록비	50,000,000	
	B	컵, 트로피, 챌린지 등	등록비	5,000,000	
			연간갱신비	1,000,000	
	C	기초종목	연간등록비	500,000	
	수수료	명칭 변경	A	500,000	
			B	200,000	
항소		KARA 항소위원회 보증금		3,500,000	
		FIA 항소보증금		별도 문의	

2. 2021 KARA 공인비

대상	항목	구분		2021 금액(단위:원)	비고
FIA 서킷 Grade 공인비	Category A	Grade 1	신규	별도 문의	
	Category B	Grade 1T, 2, 3, 3E	신규		
	Category C	Grade 4, 5, 6	신규		
	Category D	1, 1T, 2	갱신	별도 문의	
	Category E	3, 3E, 4, 5	갱신		
FIA 카트 서킷 공인비		신규 및 갱신		별도 문의	
KARA 서킷 공인비				별도 문의	
서킷레이스/ 랠리/ 오프로드/ 포뮬러/ 드래그/ 드리프트	국제대회	KARA가 Parent ASN 인 국제대회		별도 문의	
		KARA가 Host ASN 인 국제대회			
	국내대회	챔피언십	시리즈 등록비	5,000,000	연 1회 납부
			라운드당 공인비	3,000,000	* 싱글 라운드(2Day) : 실비 추가(70만원) - 더블라운드 : 대회당 공인비 x 2 - 더블라운드(1Day) : (공인비 x 2) 40%할인
			챔피언십 라이선스비	2,500,000	
		컵, 트로피, 챌린지 기타	시리즈 등록비	1,500,000	
			라운드당 공인비	2,500,000	
				1,800,000	
		단일대회	대회당 공인비	1,800,000	
		드리프트	라운드당 공인비	1,000,000	
카트/짐카나	국제대회	CIK-FIA 공인대회	시리즈 등록비	별도 문의	
			캘린더 등록비		
			대회당 공인비		
	국내대회	시리즈 대회	시리즈 등록비	—	
			라운드당 공인비	700,000	캘린더 등록비 포함
		단일대회	대회당 공인비	700,000	
KARA 장비 호몰로게이션	국내	안전장비		별도 문의	
FIA 장비 호몰로게이션	FIA	안전장비			

부록 국내 모터레이스 현황

국내 공인 대회 현황

CJ 대한통운 SUPERRACE CHAMPIONSHIP 2020	대회명[국문]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대회명[영문]	CJ Logistics SUPERRACE Championship
	사업자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52 3층(을지로5가)
	대표 연락처	02-6740-7852
	홈페이지	http://www.super-race.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uperrace
	참가 클래스	SUPER 6000, KUMHO GT, BMW M Class, Radical Cup Korea

Hyundai N Festival	대회명[국문]	현대 N 페스티벌
	대회명[영문]	Hyundai N Festival
	사업자 주소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40, 인덕원IT밸리 D동 904호
	대표 연락처	070-4473-7670
	홈페이지	http://drivingexperience.hyundai.co.kr/kr/n-festival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HyundaiNFestival
	참가 클래스	AVANTE Cup, VELOSTER N Cup, VELOSTER N Time-trial

NEXEN TIRE SPEED RACING	대회명[국문]	넥센타이어스피드레이싱
	대회명[영문]	NEXEN TIRE SPEED RACING
	사업자 주소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로99 3층 코리아스피드레이싱
	대표 연락처	031-333-9695
	홈페이지	http://www.speedracing.co.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NEXENSPEEDRACING
	참가 클래스	GT-300, R-300, GT-200, GT-100, KSR-GT, KSR-챌린지, TT-200, TT-100, RV-TT, 타임타겟

2020 ASA KIC-CUP TOURING CAR RACE	대회명[국문]	KIC-Cup 투어링 카 레이스
	대회명[영문]	ASA KIC-CUP TOURING CAR RACE
	사업자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에프원로2상설블록 7번빌딩 1층
	대표 연락처	061-288-4207
	홈페이지	http://www.koreacircuit.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Kic-Cup-Touring-Car-Race-622501287907922/
	참가 클래스	KF-1600, F-TT, KIC-M

KOREA INTERNATIONAL CIRCUIT	대회명[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2020 KIC 카트 챔피언십
	대회명[영문]	KIC KART CHAMPIONSHIP
	사업자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에프원로2 상설블록 7번빌딩 1층
	대표 연락처	061-288-4207
	홈페이지	http://www.facebook.com/KIC320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KIC320
	참가 클래스	ROTAX Senior, ROTAX Rookie, ROTAX Master, ROTAX Master, ROTAX Junior, ROTAX MINI, ROTAX MICRO, ROTAX NOVICE, ROTAX Gentleman

JEONNAM GRAND TOURING 전남GT	대회명[국문]	전남 GT
	대회명[영문]	JEONNAM GRAND TOURING
	사업자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52 3층(을지로5가)
	대표 연락처	010-5330-9537
	홈페이지	http://www.jngt.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JeonnamGT
	참가 클래스	내구300, 200, 100,SUPER6000, GT300, 래디컬

KARA 대회주최자

주최자	㈜슈퍼레이스	대표 연락처	02-6740-7852
주최자 등급	대회주최자A	홈페이지	http://super-race.com
사업장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52 3층(을지로5가)		

주최자	㈜이노션	대표 연락처	02-2016-2300
주최자 등급	대회주최자A	홈페이지	http://innocean.com
사업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워		

주최자	KAVO	대표 연락처	033-480-9613
주최자 등급	대회주최자A	홈페이지	http:/www.koreacircuit.kr
사업장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주최자	㈜인제스피디움	대표 연락처	033-480-9613
주최자 등급	대회주최자A	홈페이지	http://speedium.co.kr
사업장 주소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상하답로130		

주최자	코리아 모터스포트브릿지	대표 연락처	02-3486-8763
주최자 등급	대회주최자A	홈페이지	
사업장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0길 6, 비즈포레 1108호		

주최자	㈜유로	대표 연락처	031-762-0927
주최자 등급	대회주최자A	홈페이지	http://radicalkorea.co.kr
사업장 주소	경기도광주시 곤지암읍신만로150		

주최자	코리아 스피드 레이싱	대표 연락처	031-333-9693
주최자 등급	대회주최자B	홈페이지	http://speedracing.co.kr
사업장 주소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로99 3층 코리아스피드레이싱		

주최자	(주)플레이그라운드코리아	대표 연락처	070-4773-7670
주최자 등급	대회주최자B	홈페이지	http://playgroundkorea.com
사업장 주소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인덕원 IT밸리 D동 904호		

❶ 영구팀

국내 공인 레이싱팀 현황

등록번호	팀명	대표	팀연락처	팀 email
KARA2020TEAM01P	카이안	김광진	010-6304-5005	rallyking@daum.net
KARA2020TEAM02P	쏠라이트인디고	고장환	031-788-5994	iris0411@swa.co.kr
KARA2020TEAM03P	원레이싱	김경호	031-338-0852	mjoneracing@gmail.com
KARA2020TEAM04P	인제레이싱	김정수	010-7150-2290	wtcc1@naver.com
KARA2020TEAM05P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김창규	051-330-7117	race112@hanmail.net
KARA2020TEAM06P	팀 파워엑셀	곽홍민	010-5615-6684	poweraxel@naver.com
KARA2020TEAM07P	가톨릭상지대학교	이승재	054-851-3256	sjlee@csj.ac.kr
KARA2020TEAM08P	포디엄레이싱	박종혁	010-3555-0633	podium1@naver.com
KARA2020TEAM09P	LEOPARD MAX GT	권기원	053-555-5112	leopardmotors@gmail.com
KARA2020TEAM10P	엑스타레이싱	김진표	031-323-6996	tjdbfl16@naver.com
KARA2020TEAM11P	SL모터스포츠	김관희	031-323-6996	tjdbfl16@naver.com
KARA2020TEAM12P	쿼드로이레인레이싱	유경사	031-322-0065	kyungsa@erainracing.com
KARA2020TEAM13P	플릿-퍼플모터스포트	이문식	031-338-2322	purple@purplemotorsport.com
KARA2020TEAM14P	위드모터스포츠	박범준	010-3330-2600	qkrqjawns71@naver.com
KARA2020TEAM15P	록키레이싱	박시현	032-811-5500	mi3korea@gmail.com
KARA2020TEAM16P	룩손몰	이진태	031-321-1733	luxonmall@naver.com
KARA2020TEAM17P	질풍	이문섭	031-323-4577	m55ns25p@daum.net
KARA2020TEAM18P	비트알앤디	신수욱	031-666-3697	kdtr50@naver.com
KARA2020TEAM19P	디에이모터스	이영배	02-525-0021	driveran@naver.com
KARA2020TEAM20P	BLAST RACING	김용태	051-622-5211	ytkim@blast.co.kr
KARA2020TEAM21P	브랜뉴 레이싱	정강용	010-8205-9595	jns0107@naver.com
KARA2020TEAM22P	팀일공육	류시원	070-8224-3106	team106r@naver.com
KARA2020TEAM23P	PROCEED	박길목	010-8869-8822	hun74046699@naver.com

❷ 단기팀

등록번호	팀명	대표	팀연락처	팀 email
KARA2020TEAM01R	ATLASBX MOTORSPORTS	조항우	031-336-3461	isyeon@atlasbxracing.com
KARA2020TEAM02R	CJ LOGISTICS	이정웅	031-323-1237	james.lee824@gmail.com
KARA2020TEAM03R	MC2_범스	김범훈	031-637-1981	beomskorea@gmail.com
KARA2020TEAM04R	서한GP	장현준	070-7769-0218	gp@racingahead.co.kr
KARA2020TEAM05R	TEAM ES	김의수	010-3376-9586	euisookim9586@gmail.com

❸ 연간팀

등록번호	팀명	대표	팀연락처	팀 email
KARA2020TEAM01Y	ONEWAY MOTORSPORT	서형우	010-8715-7866	soulhistory@gmail.com
KARA2020TEAM02Y	볼가스 모터스포츠	김재익	010-4140-3393	s320l@naver.com
KARA2020TEAM03Y	팀 벤조-루카스로드	김도균	010-6402-8828	iukdk@hanmail.net
KARA2020TEAM04Y	Junfitted racing	박정준	031-235-5882	iveryi076@naver.com
KARA2020TEAM05Y	2KBODY	강운섭	043-216-9851	bigcloud47@naver.com
KARA2020TEAM06Y	LOAR RACING	서주원	010-6569-8088	superlamp@naver.com
KARA2020TEAM07Y	DARGAS&MOMO	박용오	055-326-0502	dargasmotors@naver.com
KARA2020TEAM08Y	팀훅스-아트라스 비엑스	김중엽	02-466-5823	fbi73kr@gmail.com
KARA2020TEAM09Y	그릿 모터스포츠	이창우	02-575-9501	brian.lee@ gritmotortainment.com
KARA2020TEAM10Y	마이더스레이싱	서석현	1522-8026	midas_partners@naver. com
KARA2020TEAM11Y	TEAM 05X	김도형	010-4515-1695	
KARA2020TEAM12Y	마이더스레이싱-아트라스비엑스	이상학	010-4701-2323	sanghaklee@atlaxbxracing. com

❹ 아마추어팀

등록번호	팀명	대표	팀연락처	팀 email
KARA2020TEAM01A	MIM Racing	이규용	031-558-6668	info@motioninmotorsport.com
KARA2020TEAM02A	자이언트모터스	서승완	010-2032-3245	songduksam@naver.com
KARA2020TEAM03A	광주 H모터스	김효겸	010-2663-5182	hyokyum2002@naver.com
KARA2020TEAM04A	탑코트 X 제이투	하창수	010-4872-9996	hobak7423@hanmail.net
KARA2020TEAM05A	RES	권미진	031-426-6131	res-korea@naver.com
KARA2020TEAM06A	V8(브이에잇)	김기준	010-2239-9244	standardv88@gmail.com
KARA2020TEAM07A	UPPER SPEED	마승모	031-780-6619	dajeun8@toyotaplaza.co.kr
KARA2020TEAM08A	프라이멀탐앤탐스	권형진	010-9194-1950	watchmania24@gmail.com
KARA2020TEAM09A	아이언 게러지	오규철	010-9497-5972	suzuki1976@hanmail.net
KARA2020TEAM10A	유로모터스포츠	김진태	031-946-3359	jtkim@revs.ai
KARA2020TEAM11A	도이치모터스	김지훈	02-554-7601	kenzo-kim@nate.com
KARA2020TEAM12A	팀챌린져	승재형	010-5744-0456	1107sjhyd@naver.com

❺ 카트 영구팀

등록번호	팀명	대표	팀연락처	팀 email
KARA2020TEAM01KP	피노카트 레이싱	김성호	031-333-9518	dongkki21@naver.com
KARA2020TEAM02KP	KRT	임재흥	02-420-3886	koreakart@naver.com
KARA2020TEAM03KP	카티노	김해수	010-2416-2373	kartinno@naver.com
KARA2020TEAM04KP	드림레이서	한천희	010-6222-6319	dr@karting.co.kr
KARA2020TEAM05KP	파주스피드파크	김태은	031-959-0420	kart11@daum.net

❻ 카트 연간팀

등록번호	팀명	대표	팀연락처	팀 email
KARA2020TEAM01KY	TEAM MAX	신상문	031-351-9650	hana2go@daum.net
KARA2020TEAM02KY	프로젝트케이	강진성	010-2650-3941	koreakart1@naver.com
KARA2020TEAM03KY	F5-MONSTER	김태훈	010-9949-3432	ttk1256@naver.com
KARA2020TEAM04KY	JM KART Racing	정재민	010-3609-3013	jaemin1389@naver.com

공인 레이싱 스쿨 현황

레이싱스쿨	HMG Driving Experience
대표 연락처	02-541-3252
홈페이지	http://drivingexperience.hyundai.co.kr
페이스북	http://facebookcom/hmgdrivingexperience

레이싱스쿨	BMW Driving Center
대표 연락처	080-269-3300
홈페이지	http://bmw-driving-center.co.kr
페이스북	http://facebook.com/BMWandMINIDrivingCenter

레이싱스쿨	범스레이싱스쿨
대표 연락처	031-637-1981
홈페이지	http://beoms.co.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beomsofficial

레이싱스쿨	EZ드라이빙스쿨
대표 연락처	010-2663-5182
홈페이지	
페이스북	http://facebook.com/carplace5182

국내 공인 경기장 현황

경기장	라이선스	정보	형상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Korea International Circuit)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프원2 상설블럭7번 빌딩 KIC 사업소 (061)288-4207 http://www.koreacircuit.kr	등급: FIA International Grade1 기간: 2020.01.01 ~ 2023. 01.01	길이: 5.615km / 3.489 miles 진행방향: Anticlockwise 트랙 폭: 12m 스탠딩 스타트 폴 포지션: Right 롤링 스타트 폴 포지션: Le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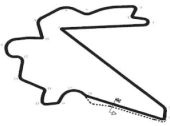
	등급: FIA International Grade2 기간: 2020.01.01 ~ 2023. 01.01	트랙1: 3.031km / 1.883 miles 트랙2: 2.964km / 1.842 miles 진행방향: Anticlockwise 트랙 폭: 12m 스탠딩 스타트 폴 포지션: Right 롤링 스타트 폴 포지션: Left	
인제스피디움 (INJE SPEEDIUM)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상하답로130 http://www.speedium.co.kr (070)4811-1099	등급: FIA International Grade2 기간: 2020.03.31 ~ 2023. 03.31	길이: 3.908km / 2.428 miles 진행방향:Clockwise 트랙 폭: 14m 스탠딩 스타트 폴 포지션:Left 롤링 스타트 폴 포지션: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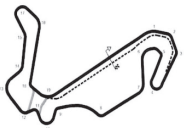
에버랜드스피드웨이 (Everland Speedway)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199 (031)320-9401~9	등급: FIA International Grade3 기간: 2019.04.08 ~ 2022. 04.08	길이: 4.346km / 2.700 miles 진행방향:Clockwise 트랙 폭: 11m 스탠딩 스타트 폴 포지션: Right 롤링 스타트 폴 포지션: Left	

경기장	라이선스	정보	형상
KIAPI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대구지능형자동차부품 진흥원 주행시험장 (Korea Intellgent Automotive Parts Promotion Institue)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산단서로 201 http://www.kiapi.or.kr (053)670-7800	등급: KARA 드래그 스트립 타입 B 기간: 2018.05.18 ~ 2021. 05.18	경기구간: 400m 기준 폭: 12m 감속 구간: 500m	
TAEBAEK SPEEDWAY 태백스피드웨이 (Taebaek Speedway) 강원도 태백시 사군드리길 240번지 (동점동) http://taebaekspeedway.com (033)581-3012	등급: KARA 국내 상설 자동차경주장 기간: 2020.03.27 ~ 2021. 03.26	길이: 2.5km 진행방향:Clockwise 스탠딩 스타트 폴 포지션: Right 롤링 스타트 폴 포지션: Left	TAEBAEK SPEEDWAY

심사위원 가이드라인

STEWARD GUIDELINES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

MEMBER OF FIA

2021 KARA 심사위원 가이드라인

※ 본 자료는 FIA심사위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국내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서문

모터스포츠 대회의 성공은 심사위원들이 공개된 재량권 및 ISC(국제스포츠규정)와 ASN의 규정 그리고 각 대회의 스포츠 및 기술 규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적용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진다.

이 가이드라인은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지침을 제공하고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ISC와 대회 특별규정(스포츠&기술규정)은 모든 상황하에서 우선시 된다. 심사위원은 "경찰"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심사위원은 "판사"다. 심사위원들이 경기위원장이나 레이스 디렉터에게 자신들이 식별한 잠재적 위반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반 상황 발생 시 경기위원장이나 레이스 디렉터가 심사위원들에게 보고한다.

심사위원들은 항상 FIA나 ASN을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모터스포츠 관계자들에게 존중 받도록 행동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팀이나 선수 등 대회 관련 관계자들로부터 정기적인 환대 등으로 인하여 공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심사위원회의 재량권 범위

1.1 ISC 제11.9조와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0.10조의 심사위원회의 권한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ISC 제11.9.3.t조[경기 이후 판정]와 제14.1조[재조사 권한]를 조건으로 FIA 규정, KARA 국내스포츠규정과 대회 특별 규정 및 지명된 대회 체제 내의 공식 프로그램의 집행 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을 가지며 특히 규정 위반 시 시행할 페널티를 결정할 수 있다.

1.2 페널티의 적용 이나 제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고 권한은 FIA 국제 항소 법원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2. 판정의 도출과 비밀 유지

2.1 심사위원의 판정은 항상 가능한 모든 정보들을 기초로 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행사하기 전에 각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에게 참가자(팀/드라이버)나 외부 그룹에 의해 이해상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2.2 심사위원회, 레이스 디렉터, 경기위원장, 기술위원과 경기 사무국은 경기 결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과 상업 또는 산업적으로 연관이 없어야 한다. 그들은 FIA 윤리 강령에 의해 적용 받는다.

2.3 판정이 내려지고 발표 될 때 심사위원회는 그것과 관련하여 드라이버, 팀 매니저 또는 팀 대표와 논의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심사위원장은 판정이 팀들에 전달될 때 필요한 모든 의견을 넣는 것이 좋다.

2.4 심사위원들은 절대로 대회의 미디어 담당이나 KARA 이외의 다른 그룹과 판정에 대해서 논의 하거나 논평하지 말아야 한다.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통하여 대회 미디어 대표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최근 몇년 동안 과거 F1 대회에서도 전직 드라이버 출신의 심사위원 도입과 함께 심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미디어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심사위원회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디어와 일반 대중이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지만, FIA는 심사위원들이 FIA의 승인 없이 특정 판정에 대하여 언론과 대화하는 것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3. 규정의 숙지

3.1 심사위원들은 FIA의 ISC규정과 KARA 국내스포츠규정을 기본으로 숙지하고 항상 경기장에 지참하여야 한다.

3.2 또한 대회 특별규정(스포츠규정/기술규정)을 숙지하고, 부분 변경된 규정이 없는지, 해당라운드에 특별하게 적용된 규정을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 준수 사항

4.1 심사위원은 KARA 또는 대회사무국에서 제공하는 패스를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4.2 심사위원은 대회사무국에 경기장 도착 시간과 교통편, 여행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최소 1명이상의 심사위원이 검차에 참여하거나 기술대표의 감독하에 검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4.3 KARA(또는 대회주최자)는 심사위원회에 셔츠를 제공한다. 이것은 대회기간 중 매일 착용하여야 한다. 정장이나 스마트 캐주얼(청바지는 아님)을 입고있어야 하며 특정팀과 관계된 상표나 로고가 부착된 모자나 자켓(KARA 또는 대회주최자와 관계된 브랜드 제외)은 경기장에서 심사위원들은 입을 수 없다.

4.4 심사위원은 항상 KARA의 시니어 오피셜이자 대표임을 기억하라. FIA Action for Road Safety 캠페인을 의식하고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안전하고 현명하게 운전하도록 한다.

4.5 각각의 대회가 끝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과 회람될 문서를 준비한다. 이 문서는 남은 시즌 동안 심사위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각각의 경기의 이슈와 심사위원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서킷 도착

5.1 대회주최자 또는 KARA에서 마련한 심사위원실을 확인하고 지원팀(대회사무국, 심사보조원등)과 익숙해 진다.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실 출입패스를 소지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한 특별인원(소환인)만이 심사위원실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5.2 심사위원장은 구성된 심사위원들과 회의를 주재하여 심사를 시작하기전에 심사

업무방식에 대한 회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 이전 대회 또는 이전 라운드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한다.

5.3 또한 심사위원회는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과 업무 방식에 대한 회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 이전 경기들을 검토한다.

5.4 팀 감독회의 또는 드라이버 브리핑에 참석한다.

5.5 양방향 무전기 1대를 습득하고 해당 작동법을 익힌다. 트랙에 나가있는 동안 심사위원회 사무실 부재 시 항상 이 무전기를 소지하여야 한다.

6. 트랙 인스펙션

6.1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와 관제실을 방문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 하는 구간과 사고의 유형등에 대한 경험을 묻는다.

6.2 보다 나은 트랙 숙지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서킷을 확인한다(최소 2랩이상).

6.3 피트 입/출구를 주의 깊게 확인한다.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과 이 서킷에서 라인을 가로지르는 것에 대한 판정 방법을 명확히 한다.

6.4 또한 일반적으로 대회시작전에 가능한 경우 최소 한 명이상의 심사위원이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과 서킷을 걷는 것을 권장한다.

6.5 드라이버 출신의 심사위원이 있다면 자신의 관점에서 사고나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특별히 주의하여 인스펙션 랩 동안 의견을 교환 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선수들의 주행(레코드)라인을 따라 주행하는 것이 좋다.

6.6 트랙인스펙션 종료 후 KARA 파견 심사위원은 인스펙션 리포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차량 검차

7.1 기술 대표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권고에 따라(혹은 기술위원에 의해) 심사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명령할 수 있다:

- 봉인될 해당 부품의 탈거 또는
- 검사를 위해 해당 부품이 차량에 부착된 상태여야 하는 경우 봉인된 상태로 차량 보관

7.2 봉인을 하거나 또는 더 많은 기술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판정 연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 결정은 관련된 경기참가자(들)의 심리 후에 심사위원회가 최종적인 판정을 내리는 회의 날짜,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봉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술 대표(또는 기술위원)과 사진, 측정치 등 기타, 각각 자료와 관련된 당사자가 서명한 기록 파일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안이 결정될 것이다.

7.3 차량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성능상 이익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 들여질 수 없다.

8. 영상 장비

8.1 심사위원회는 판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비디오나 전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8.2 심사위원실에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비 및 모니터와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이 장비를 활용하여 대회 중에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한 판정과 각각의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페널티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3 이 조항으로부터 나온 결과로 위에서 언급된 비디오나 전자 장비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의 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줄 때 심사위원회는 사실 판단관의 판단이 아닌 자신들만의 발견과 해석에 의존할 수 있다.

8.4 판정과 해석의 최적화를 위해 카메라의 종류(이미지 화질, 줌 가능 여부)와 설치 위치(투시도, 시야각도)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카메라 오퍼레이터가 있을 경우 질문을 하거나 조언(카메라의 위치 조정)하는 것이 유용하다.

9. 소환

9.1 만약 심사위원회가 팀 또는 드라이버와 대화나 소환을 원하면 소환통보서를 이용하여 그들을 심사위원실에 방문을 요청 할 수 있다.

9.2 모든 소환은 팀이나 드라이버의 심사위원실 출석 시간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9.3 어떠한 소환장이든 협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소환 시간이 알려졌다면 협의 당사자로 인식된 그룹을 명시해야 한다.

9.4 심사위원회에서 심리를 위해 드라이버나 팀을 소환할 때 당사자 도착 전에 청취를 한 명씩 할지 한꺼번에 할지를 정하라. 두 방식 모두 해당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공식문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모든 당사자가 동시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환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세부 내용

⇒ 소환 날짜와 시간

⇒ 참석이 요구되는 팀/드라이버 이름

⇒ 규정을 위반했다고 추정되는 팀/드라이버

⇒ 심리 장소와 시간

⇒ 소환 사유 (혐의가 제기된 사실)

⇒ 혐의가 제기된 경기운영규정/또는 기술규정

⇒ 모든 심사위원들의 서명

10. 판정

10.1 심사위원들은 판정을 내리기 전에 활용 가능한 모든 사실들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10.2 심사위원들 모두가 합의한 판정을 내리고 모든 심의와 판정 과정에 참석하여야 한다.

10.3 심사위원들은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의 보고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10.4 판정에 영향을 받는 팀과/혹은 드라이버에게 청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팀과/혹은 드라이버에게 정확히 무엇을 조사 중이고 그들이 위반했다고 혐의 제기된 규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10.5 심사위원들은 관련 당사자가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발생하는 모든 질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선수가 참가할 경우 통역을 활용하여 이해시켜야 한다.

10.6 심사위원들은 조사나 절차의 공정성이나 철저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숙의하고 판정한다. 결승 동안에는 결정의 정확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사건/사고 발생 후 가능하면 2-3랩 안에 판정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판정을 내리는데 지연이 될 경우(증인 또는 증거 불충분) 지연에 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0.7 심사위원들은 공식문서 양식을 통해 판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판정의 이유와 페널티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10.8 심사위원회는 즉시 모든 판정을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은 기록 스크린 메세지를 통해 관련된 팀과/또는 드라이버에게 알려야 한다.

판정에 명시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

⇒ 판정한 날짜

⇒ 판정이 발표된 시간

⇒ 관련된 팀/드라이버

⇒ 관련 당사자(들)의 소환

⇒ 관련 당사자(들)의 심사위원회 심리 참석

⇒ (만약 있다면) 다른 오피셜 보고서에 대한 언급

⇒ 사건의 사실 내용(들) (정확한 서술)

⇒ 위반된 경기운영규정 또는 기술 규정 조항

⇒ 판정의 근거, 잘못된 일이거나 과실이거나 객관적인 책임(잘못이 없는 경우) 여부

⇒ 페널티(있을 경우 기재)

⇒ 항소권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다는 사실

⇒ 판정 시간

⇒ 모든 심사위원들의 서명

근거제시 : 심사위원들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해당 판정을 내리게 된 법적과 사실적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판정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거 서술은 판정이 타당한 것으로 간주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판정의 설명은 그 표현이 분명하여야 한다.

위반 : 제재를 가하기 위한 판정은 오직 규정에 의거하여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

며 다른 기준, 정의 또는 규정에 없는 개념은 제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건/사고"는 해당 FIA 챔피언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것 또는 연속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 안에서 예견될 수 없는 추가적인 기준이나 유형 상황에 대한 다른 언급("피할 수 있는 사고", "위험한 사고" 또는 "의도적인 사고")은 되기하기 쉽다.

오피셜이 작성한 보고서 : 비록 심사위원회가 심리 시간에 경기참가자(팀/드라이버)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시할 의무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권고한다. 레이스 디렉터와 기술 대표(만약 있다면)가 작성한 보고서는 오직 사실에 근거한 사항만 포함하여야 한다. 규정 위반 여부의 결정은 심사위원회에 소관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장비에서 심사위원회가 사용 가능한 기술 데이터의 경우 이 장비의 기능과 사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보고서를 제출할 때 오피셜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고 경기 전에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판정의 통보 및 공지

11.1 대회 중

⇒ **경기참가자(팀/드라이버)에게 직접 전달**, 심사위원회는 이 결정문이 항소할 수 있도록 실제 발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식 게시판에 게시**, 경기참가자(팀/드라이버가) 제한된 시간 안에 항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순위와 결과는 오피셜에 의해 결정된 모든 판정과 함께 게시 시간과 함께 공식 게시판에 게시되며 또한 디지털 공식 게시판(있을 경우)에 게시된다. 공식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물은 모두 보존되어야 하며, 디지털 공식 게시판 또는 조직위 웹사이트에 게시된 판정, 순위 또는 기타 공식 문서들 또한 동일하다.
심사위원회는 경기참가자(팀/드라이버)에게 공식적으로 계측된 기록과 게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 집중화되고 신뢰 할 수 있는 계측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참가자(팀/드라이버)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최종 판정된 세기 문서에 근거하여 항의를 할 수 있다.

11.2 대회 종료 후

대회 종료 후 판정을 내려야 할 경우 상기에 언급된 원칙과 절차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방어권을 존중할 목적으로 경기참가자(팀/드라이버)는 서면 소환 요청 후 청

취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소환은 심사위원회로 부터 새로운 심리 장소,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모든 가능한 수단(예: 이메일)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확인 요청(항소 시간 제한을 시작할 목적으로)과 함께 서면으로 통보되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련 대회의 모든 심사위원들의 서명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11.3 심사위원회에서 1시간 이내에 항소가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항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시간 제한은 판정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판정문이 공표된 후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ASN에 항소 제기하고 항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시간 제한은 따라서 연기된다.

12. 공식 연습주행

12.1 모든 심사위원들은 참가 차량의 트랙 주행이 허용된 순간부터 가능한 항상 심사위원실에 있어야 한다.

12.2 악천후, 사고 및 기타 사유에 의한 타임 테이블의 변경에 대하여 준비한다. 그러나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와 상의하고 조언을 구한 후에 가능하다.

12.3 연습주행 동안 사건/사고는 세션 종료 후에 처리되어야 하나 최대한 빠르게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사건/사고가 조사 중인 경우 TV 스크린을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12.4 일반적으로 오직 심사위원장 만이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와 무전기등을 통해 1:1 다이렉트 대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13. 예선

13.1 예선 동안 사건/사고는 보통 예선진행 완료 후 심리한다. 이것은 드라이버와 팀이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가 심사위원회에 보고한 사건/사고에 관하여 논평하고 관련된 기술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3.2 예선 중 기술 규정 위반은 공식 예선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다루어져야 한다.

14. 스타트 절차

14.1 모든 그리드/스타트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최소한 한 명의 심사위원이 심사위원실에 머무르거나 관제실과 무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포메이션 랩 스타트를 위해 참석해야 한다. 스타트 절차와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이나 기술 대표로부터 보고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14.2 포메이션 랩과 관련한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의 보고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포메이션 랩 때 추월은 금지된다. 모든 차량이 포메이션 랩을 떠난 후에 정지한 차량은 결승 최후미 그리드에서 스타트 해야 한다.)

14.3 점프 스타트 보고가 있을 경우 즉시 증거를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판정한다.

14.4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는 스타트 플랫폼에서 첫 랩 사고를 검토하고 그에 맞추어 조언할 수 있다. 이것이 필요할 경우 플랫폼을 떠나기 전에 완료될 것이나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는 관제실로 1랩 안에 복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부경기위원장이 필요 시 심사위원회에 즉각적인 검토를 요청을 할 수도 있다.

15. 결승

15.1 첫 번째 코너의 사건/사고 발생을 주시하여야 한다. 최대한 빠르게 사건/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차량 사고의 원인, 푸싱으로 인한 트랙 이탈, 트랙 이탈 주행과 얻는 이득을 관찰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건/사고 보고서의 결과인 드라이브 스루나 스탑 앤 고 페널티는 신속하게 발표한다.

15.2 차량이 시케인을 놓친 뒤 드라이버가 트랙에 복귀할 때 이점을 얻었으면 얻은 이점은 되돌려져야 한다.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의 보고서를 참조한다.

※ F1 드라이버규정 : 드라이버가 시케인을 놓쳤으나 추월하지 않았으면 해당 드라이버는 시케인 이후 두 개의 턴을 더 통과할 때까지 앞차를 추월 할 수 없다.

다음 가이드라인은 트랙을 이탈한 차량과 복귀와 관련되어 합의된 사항이다.

a) 드라이버가 시케인을 가로지르거나 트랙 이탈 후 복귀할 때 순위 변동이나 시간 이득이 없는 경우. 즉 코너 전과 동일 순위 유지 - 조치 없음 (2번째는 관제실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세번째는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b) 드라이버가 시케인을 가로지르거나 트랙 이탈 후 복귀할 때 시간 이득을 얻는 경우

c) 드라이버가 시케인을 가로지르거나 트랙 이탈 후 복귀할 때 다른 드라이버를 추월

d) 드라이버가 시케인을 가로지르거나 트랙 이탈 후 복귀할 때 그로 인한 순위 변동이 있는 경우 팀은 해당 순위를 돌려줄 것을 권고 받거나 해당 문제가 심사위원회에 보고될 것이다.

15.3 결승 동안에 가능한 한 많은 사건/사고 페널티를 발령하도록 노력한다.(결승 종료 3랩 전까지)

15.4 최종 3랩 동안에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결승 종료 후 결과에 페널티가 부과될 것을 유념한다.(드라이브 스루 또는 스탑앤고 페널티의 경우 각각의 페널티 시간을 미리 정하여 최종레이스 시간에 가산한다.)

15.5 조사 대상 드라이버의 경우 심사위원들은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로 하여금 경기 종료 후 5분 이내에 기록 모니터 화면을 통해 대상 팀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15.6 결승 종료 후에 사건/사고가 보고되거나 작성되었을 경우 정보 스크린은 결승 후에도 짧은 시간 동안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사건/사고가 조사될 경우 이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스크린을 통해 게시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디어는 대중을 위하여 그들의 경기중계를 마무리하는 데 전념할 것이기 때문이다.

15.7 심사위원들은 결승이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판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결승이 끝난 후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드라이버가 서킷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팀이나 드라이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15.8 기술대표로부터 올라온 차량, 연료, 타이어, 소프트웨어와 기타 기술 또는 전자적 장비 위반 사항에 대한 보고서는 면밀히 조사되어야 한다. 팀 피트를 방문하여 차량을 확인하며 동료 심사위원들이 이 문제점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기술대표는 심사위원이 아님을 유념하며 그는 오직 자신이 발견한 것을 보고하며 발생된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판정은 심사위원회가 한다. 기술 대표의 보고서는 그 자체적으로 발생된 위반 사항의 결정으로 여겨지지는 않으나 "전문가" 보고서로서 간주되어 진다. 기술 대표 보고서와 관련된 심리가 있을 경우 보고서를 입증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심사위원회 관련된 대상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술 대표의 참석은 중요할 수 있다.

15.9 페널티 발표 전에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 보고서에서 차량 번호, 드라이버 이름과 팀을 확인한다.

15.10 유사한 위반 사항에 대한 페널티는 일관되어야 하고 보통 드라이버의 경력은 페널티를 결정하는데 무시되기 때문에 페널티 벌점 제도는 드라이버의 이전 기록을 고려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드라이버가 행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며 이는 드라이버 위반 이력을 적절하게 추적하고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 결승 후

16.1 경기위원장(레이스디렉터)이 공식 결과에 서명한 경우 허용된 항의 또는 항소 시간 동안 출석해 있어야 한다.

16.2 판정이 경기일 이후 내려져야 할 경우(예:기술 평가 이후) 이전에 언급된 가이드라인도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방어권을 존중하기 위해, ISC 제12.10조에 의거한 출장정지나 ISC 제12.4조에 의거한 제외 또는 출장 정지를 부과하는 판정은 해당 판정을 팀과/또는 드라이버에게 통보 전에 서면 호출에 따른 자신의 방어권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경우 유효하지 않다. 이 결정은 특별히 심사위원회의 새로운 심리를 위한 장소,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며 심사위원회의 판정은 서면과 우편, 이메일, 팩스로 통지되어야 한다. 모든 경우에 경기와 관련된 모든 심사위원회 패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기술 대표의 보고서와 필요한 전문가의 추가 보고서(심사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 서류 양식)를 포함하여야 한다.

17. 순위

17.1 2018년 1월 1일 부터 최종과 잠정 순위는 ISC 제2.1.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최종 순위" : 심사위원회에서 서명하고 최종 검차 완료되고/거나 모든 심사위원회의 판정이 공표된 결과(항소나 이후의 기술적 점검의 경우 통고가 추가될 수 있다).

"잠정 순위" : 해당 세션이나 경기 종료 후 공표된 결과. 이 순위는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잠정 순위에 대한 항의
- ISC 제13.3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항의
- 경기 중 발생하는 혐의 있는 오류, 부정 또는 규정 위반

- 규정에 부적합 혐의가 있는 차량
- 경기 후 수립된 순위

17.2 항의는 경기운영규정이나 대회특별규정에 별도 명시되어 있거나 심사위원회 판단으로 30분 안에 불가능하다고 간주될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 기록 공표 후 30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7.3 각각의 드라이버(적절한 경우 코드라이버, 팀과 제작자)의 모든 포인트는 경기운영규정이나 대회특별규정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심사위원회가 서명한 최종 순위에 표시되어야 한다.

18. 항의

18.1 경기 도중 ISC 제13.3조,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2조에 의거한 시간 제한 안에 경기참가자(팀/드라이버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항의 할 수 있다.

- 팀 또는 드라이버의 엔트리 (부정 참가등)
- 코스 길이
- 핸디캡
- 히트나 결승의 구성
- 혐의가 제기되는 오류, 대회 기간 동안의 부정행위나 규정 위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제기되는 차량 또는 경기 종료 후 발표된 순위

18.2 ISC 제13.1조,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2.3조에 의거하여 항의 권한은 오직 하나의 경기참가자에게 있다. 여러 명의 경기참가자들이 제기하는 공동 항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18.3 여러 명의 경기참가자가 관련된 경우 각각의 개별 경기참가자들이 별도의 항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 한 팀의 여러 차량이 관련된 경우 각각의 차량에 대하여 별도의 항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18.4 모든 항의는 :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 항의 당사자의 항의 내용과 항의 대상자를 명시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되어져야 한다.(항의료와 함께)

18.5 항의 수령은 수령 시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확인되어져야 한다. 실격한 경기참가차와 달리 리타이어 한 경기참가자는 여전히 항의 권한이 있다.

18.6 만약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이는 심사위원회가 판정을 하는 것을 면제하지 않는다(항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 판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19. 재조사 권한

19.1 ISC 제14조에 의거하여 만약 FIA 챔피언십, 컵, 트로피나 챌린지 또는 시리즈 또는 국제 시리즈 경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관련된 새로운 요소가 발견 되었고 관련 경기 시간에서 당사자들이 재검토 할 수 없었으며 심사위원들이 판정을 하였건 안 하였건 상관없이 심사위원들이나 FIA에서 조직된 사람들이 발견 못하였을 경우 관련된 설명을 청취하고 자신 앞에 놓인 사실들과 요소들에 비추어 판정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 소환을 위한 서로 협의된 날짜에 회의를 하여야 한다.

19.2 재조사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원 판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3 심사위원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관련된 새로운 요소가 존재하지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재량권을 갖는다. 그러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판정은 국가 항소 법정이나 국제 항소 법정의 항소 대상이 아니다.

19.4 재조사 요청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이 기간이 단축되었음을 유의하라. 관련 경기의 최종 순위 발표 후 14일

20. KARA에 항소하기 위한 절차

20.1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항소의사가 있는 참가자가 있을 경우 공식결과 발표 후 1시간 이내에 대회사무국에 "항소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게 하고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하고 96시간이내에 최종 항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20.2 항소 의사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 패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48시간 이내에 대회사무국 또는 KARA 사무국에 제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3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항소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20.4 판정이 내려진 후 해당 판정에 대하여 잠재적 항소인과 토론, 설명 또는 추가적 논의를 할 수 없다.

20.5 FIA 국제 항소 법원 규정 15항,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13.3조에 따라 항소 비용은 항소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 의사를 통보했을 때 지불한다. 이 항소 비용은 대회사무국에 접수하거나 KARA에 직접 납부 할 수 있다.

20.6 NCA(국가항소법원 또는 위원회)와 ICA(국제항소법원) 사이의 권한 구분이 명확해졌다.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 ICA의 독점 권한 FIA 월드 챔피언십과 FIA 체제에서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반하는 항소

- ICA의 확장 권한 : 심리가 가능한 사안
  i) FIA 지역 챔피언십 체제에서 NCA의 판정에 반하는 항소
  ii) FIA 컵, 트로피와 기타 FIA 시리즈, 국제 시리즈 및 여러 지역들에서 열리는 경기 체제에서 NCA의 판정에 반하는 라이선스 취득자가 제기한 항소

- NCA의 독점 권한 : 다양한 자국 챔피언십 체재에서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반하는 항소에 대한 명확한 심리

한 시간 데드라인의 연장 : 심사위원회는 항소 의사표시가 1시간 데드라인의 준수를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일 경우 다른 시간 제한을 정할 수 있다. 이 시간 제한은 판정문에 서면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판정이 공표된 지 24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항소 제기 시간은 연장될 것이다.

항소 통지 : 항소 권한은 심사위원회가 항소 의사를 통보 받은 순간부터 96시간 뒤 만료된다.

항소 보증금 : 이 보증금은 심사위원회가 항소 의사를 통보 받은 순간부터 96시간 안에 지불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 의사를 명확히 하는 순간에 경기참가자(팀/드라이버)의 보증금 전체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

디지털 모터스포츠 가이드라인

Digital Motorsports Guidelines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

MEMBER OF FIA

2021 KARA Digital Motorsports 가이드라인

1 정의

FIA 및 KARA는 심레이싱, 버츄얼레이싱 등 아래와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가상현실의 모터스포츠를 통칭하여 디지털 모터스포츠(Digital MotorSports)라 한다.

- 시뮬레이션 레이싱 또는 심레이싱(Simulation Racing or Sim Racing)
- 버츄얼 레이싱(Virtual Racing)
- 이 레이싱(E Racing)
- 이 스포츠(E Sports)

이외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모터스포츠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KARA 국내스포츠 규정 제 2조 참조)을 기본으로 디지털 모터스포츠 관련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레이싱 라인 : 차량이 트랙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주파하기 위해 달려야 하는 가상의 선을 말한다.
- 블로킹(Blocking) : 선행 차량이 후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앞지르기를 막는 전술. 과도한 블로킹이나 위험한 블로킹은 규정에 따라 금지된다.
- 인랩(In-lap) : 차량이 서킷을 돌고 피트에 들어올 때의 주행 랩을 말한다.
- 아웃랩(Out-lap) : 피트에서 차량이 코스에 진입하여 주행을 시작하는 랩을 말한다.
- 어택랩(Attack-lap) : 예선에서 기록 경신을 위하여 주행하는 특정 랩을 말한다.
- 스포츠맨십(Sportsmanship) : 경기중에 최선을 다하고,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며, 비정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항상 상대편을 향해 예의를 지키는 것은 물론 승패를 떠나 결과에 승복하는 정신을 말한다.
- 게임즈맨십(Gamesmanship) : 선의의 경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무시하며 오직 승리만을 추구하는 성향을 말한다. 공정하게 게임에 임해 규칙을 지키고 상대에 대한 매너를 지키는 스포츠맨십(Sportsmanship)의 반대말이다.
- 해킹(Hacking) : 컴퓨터 또는 프로그램의 취약한 보안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시스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 버그(Bug) : 프로그램 상의 결함에 의해오류나 오작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 채팅(Chatting) :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말한다.
- 치팅(Cheating) : 게임에서의 불법적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한 부정행위를 말한다.
- 패치 : 프로그램 일부를 빠르게 고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하드웨어 : 컴퓨터, 레이싱 휠 등 디지털 모터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한 물리적인 기구를 말한다.

2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가상의 환경에서 자 동차 등이 등장하는 게임물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즉 디지털 모터스포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디지털 모터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주최자와 참가자가 표준화된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원칙

3.1 본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모터스포츠 대회의 주최자, 운영자 및 참가자가 숙지해야 하는 기본 스포츠 강령이다.

3.2 디지털 모터스포츠 대회 주최자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의 승인을 전제로 자체적으로 스포츠 및 기술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주최자의 규정이 본 가이드라인의 지침보다 우선 적용된다. 주최자의 별도 규정이 없을 시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따르며, 여기에도 없는 내용은 KARA 국내스포츠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3 대회 중에 규칙, 결과 및 규정의 명확화에 대한 분쟁이 발행하는 경우, 해석 및 중재, 최종 판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된다. KARA는 국내 항소 제도를 마련하고 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경기 참가자의 항소권을 보장한다.

3.4 KARA의 공인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 당사자(주최자, 오피셜, 팀 관계자, 선수 등)는 본 가이드라인과 각 대회의 규정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따라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참가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

3.5 본 가이드라인의 최종 버전은 KARA 웹사이트(www.kara.or.kr)에 업데이트 되며, 최

종 버전이 이전의 내용을 대체한다.

4 참가자

4.1 참가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팀, 팀대표, 감독, 코칭 스태프 등 선수 및 팀 관계자를 말한다.

4.2 참가 선수 자격

디지털 모터스포츠 대회의 참가 선수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개방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4.2.1 해당 게임 모기업, 자회사 및 자회사의 직원 및 대리인, 광고/홍보 대행사 등 관계자

4.2.2 국적은 상관없으나 대회 참여 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

4.2.3 국내법을 위반하였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자 (이에 대한 판단은 주최자에게 있다)

4.3 참가자 준수사항

4.3.1 디지털 모터스포츠 대회는 KARA의 회원이거나 라이선스 소지자들이 참가할 수 있다.

4.3.2 KARA 회원 및 라이선스 가입은 KARA 전산등록시스템(info.kara.or.kr) 사용을 표준 절차로 한다.

4.3.3 참가 신청자는 각 대회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4.3.4 대회 참가자는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각 대회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4.3.5 모든 참가자는 스포츠맨십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경쟁하고, 어떤 이유이든 다른 참가자나 주최자를 비방하거나 욕설, 폭언, 차별적 발언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결과 및 판정에 승복해야 한다.

4.3.6 참가 선수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운전해야 하며, 대리운전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

4.3.7 대회 참가가 불가능한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 만이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참가신청 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3.8 참가 선수가 미성년자 일 경우,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서면으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3.9 주최자는 언제든지 참가자에게 신분증 및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4.3.10 경기가 물리적인 장소에서 개최될 경우, 미성년자 참가자는 명시된 경기일정 내내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한다.

4.3.11 참가자가 가명을 사용할 경우 KARA에 등록된 이름으로만 참가할 수 있으며 가명이 경기 사용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4.3.12 대회장에 선수 이외에 팀 대표, 감독, 코칭 스태프 또는 기술 엔지니어 등의 관계자는 보안구역에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등록한다. 주최자 또는 KARA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등록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4.3.13 대회가 물리적 장소에서 개최되는 경우, 주최자가 보험가입을 위하여 모든 선수, 스폰서, 에이전트, 운영요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4.3.14 참가자는 주최자가 공지한 방법에 따라 브리핑에 참석해야 한다. 브리핑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원활한 경기 참가를 위한 필수 사항이다. 브리핑에 불참할 경우에 참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4.3.15 참가자는 주최자가 요청하는 홍보활동(기자회견, 인터뷰, 사인회, 촬영, 프로모션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3.16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기 또는 타 참가자, 관계자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구,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5 팀

5.1 디지털 모터스포츠 대회에 선수 개인이 아닌 팀으로 참가를 원할 경우 KARA에 팀 등록을 통해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5.2 디지털 모터스포츠 팀은 2인 이상의 KARA회원 또는 라이선스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선수, 팀 대표 또는 감독 등 팀의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5.3 팀 명칭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방송 등에 부적절한 단어, 문구, 특수문자 등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5.4 기존 KARA 등록팀은 디지털 모터스포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6 주최자

6.1 자격

6.1.1 디지털 모터스포츠 대회주최자를 개최하려는 자는 KARA에 주최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최자 등록을 통해 대회를 개최 자격을 가진다.

6.1.2 디지털 모터스포츠는 KARA 대회주최자 C 등급 이상이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6.2 권리

6.2.1 주최자는 KARA의 허가를 득하고 KARA 및 FIA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6.2.2 운영하는 대회의 기록을 영구히 인정받을 수 있고, 타 ASN에서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다.

6.2.3 KARA에 의해 주최자, 팀, 선수 등 회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6.2.4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대회와 관련된 저작권, 방송중계권 등 상업적 권리는 주최자가 보유할 수 있다.

6.2.5 주최자는 대회 규정을 제정하고 수정, 보강할 수 있으며, 내용이 수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선수 및 관계자에게 즉각 통보해야 한다.

6.2.6 대회 규정의 해석, 선수 자격, 대회 일정,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페널티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다.

6.3 의무

6.3.1 대회 주최자는 KARA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3.2 대회운영을 책임질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며, 대회운영에 대한 책임은 주최자 또는

조직위원회에 있다.

6.3.3 대회 주최자는 대회 규정을 제정하여 공표해야 하며, 온라인 상에서 원활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적절한 플랫폼을 준비해야 한다.

6.3.4 기술지원 인력 등 안정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6.3.5 대회가 물리적 장소에서 개최되는 경우, 주최자는 이벤트 3일 전에 모든 선수, 직원 스폰서, 에이전트, 운영 요원 및 관람객 대상으로 제3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증빙 문서를 KARA에 제출한다.

7 대회

7.1 대회는 KARA에 등록된 주최자가 시리즈 등록 또는 라운드 등록을 통해 개최할 수 있다.

7.2 일정 등록은 당해 년도 전체일정의 공식화를 위한 목적이다.

7.3 주최자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규정에는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또는 플랫폼, 참가자격, 대회방식, 일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7.4 공정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7.5 대회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플랫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7.5.1 행사 장소 및 날짜

7.5.2 대회에 대한 설명 및 날짜, 시간 등 세부 일정

7.5.3 대회에 사용되는 차량

7.5.4 제어 장치 및 핸디캡의 특성, 목록

7.5.5 참가 선수 또는 팀의 이름

7.5.6 심사위원 또는 레이스 디렉터 등 책임 오피셜의 이름

7.5.7 KARA 로고

7.6 차량 및 디지털 모터스포츠 환경 내에는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 차별적인 문구가 포함되거나 연상될 수 있으면 안 된다.

8 일반 스포츠 규칙

8.1 클린 레이싱 (Clean Racing)

8.1.1 **차량 컨트롤** (Car Control) : 참가 선수는 트랙에 있는 다른 참가 차량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충돌 및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의도치 않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만, 사고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8.1.2 고의로 다른 참가 차량과 충돌하면 사안에 따라 페널티를 받거나 경기참가를 금지당할 수 있다.

8.1.3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보여지는 깃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차량 속도를 늦추고 피트로 들어와야 한다.

8.1.4 경기 중에 다른 차량의 위치를 인식해야, 하며 시야 밖에 있는 차량을 조심해야 한다.

8.1.5 **스포츠맨십 위반** : 심사위원에 의해 판단되는 사안으로 특정인물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한 경우 또는 올바른 경기 정신에 위반되는 행동을 할 경우 규칙 위반으로 간주된다.

8.2 깃발 설명

모터스포츠에서는 다음과 같은 깃발이 사용되며 각 깃발의 색깔 및 모양에 따라 의미가 다르므로 참가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모든 포스트에서 제시되는 깃발

① **황색기 (Yellow Flag)**

해당 구간에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알리는 깃발. 이 깃발이 제시된 포스트부터 녹색기가 제시된 포스트까지 추월이 금지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드라이버의 주의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② **적색기 (Red Flag)**

경기 중단을 알리는 깃발. 추월이 금지되며 드라이버들은 피트나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야 한다.

③ **황적줄무늬기 (오일기, Red and Yellow Striped Flag)**

해당 구간에 잔해물이나 미끄러운 물질이 표면에 있음을 알리는 깃발.

④ **백색기 (White Flag)**

해당 구간에 서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깃발. 서행하고 있는 경주차나 응급차, 소방차, 견인차 등이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차량이 정차했을 경우 황색기로 변환하여 제시한다.

⑤ **청색기 (Blue Flag)**

해당 차량 뒤에 추월을 하려는 차량이 근접함을 알리는 깃발. 연습이나 예선에서는 해당 차량에 빠른 차량이 근접하였을 경우 제시하며 결승 시에는 근접하고 있는 차량보다 한 랩 이상 뒤진 차량에게 제시한다.

⑥ **녹색기 (Green Flag)**

코스 상태가 깨끗하다는 것을 알리는 깃발. 코스 인 시와 포메이션 랩 시에는 포스트의 위치와 코스의 최종상태를 알리기 위해 전 포스트에서 제시되며 경기 중에는 사고 발생구간이 끝나는 포스트에서 제시되어 그 이후부터는 코스 상황이 깨끗하여 추월을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세이프티 카 상황이 해제되어 재스타트 시에도 1랩동안 전 포스트에서 제시된다.

⑦ **SC보드 (Safety Car Board)**

결승 도중 세이프티 카(Safety Car, SC)가 투입되었음을 알려주는 깃발. SC 발령 동안 전 차량은 SC 뒤에 일렬로 정렬하여 주행하여야 하며 추월은 금지 된다. SC 발령 동안 주행한 랩은 결승의 전체 랩에 포함된다.

경기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출발선/결승선에서만 사용되는 깃발

① **체커기 (Black and White Chequered Flag)**

경기가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깃발

② **흑백반기 (Black and White Flag divided diagonally)**

해당 드라이버에게 스포츠맨십과 드라이빙 표준을 지키도록 경고하기 위해 제시되는 깃발. 해당 드라이버 차량 엔트리 넘버와 함께 제시한다.

③ **오렌지볼기 (Black Flag with an orange disc 40cm in diameter)**

해당 드라이버의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있음을 알려주는 깃발. 엔트리 넘버와 함께 제시되며 해당 차량은 피트로 들어와야 한다. 코스로의 복귀는 수리 후 기술위원장의 허가 시에만 가능하며 해당 차량이 피트로 들어오지 않을 시에는 흑색기로 바뀌어 페널티가 제시된다.

④ **흑색기 (Black Flag)**

해당 드라이버에게 페널티를 받아야 함을 알려주는 깃발. 엔트리 넘버와 함께 제시되며 해당 차량은 피트로 들어와서 지정된 페널티 위치에 정차하여 페널티를 이행하여야 한다. 최대 3랩까지 제시되며 페널티 미 이행시 실격 처리될 수 있다.

8.3 추월 (Overtaking)

8.3.1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경우 추월을 한다.

8.3.2 추월 시도 시 다른 운전자와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고의적인 또는 무리한 주행은 중대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8.3.3 레이스 스타트 시 첫번째 코너에 진입할 때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주행해야 한다.

8.3.4 실수로 선행차량의 후미에 부딪혀 그 과정에서 추월하여 선행차량의 포지션을 확보하게 되었다면 빠른 시간내에 그 포지션을 돌려주어야 한다.

8.3.5 다른 차량을 1랩 앞서며 느린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 자신의 헤드라이트를 깜빡이게 하여 더 빠른 차량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다. 동일한 랩에 있는 차량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8.3.6 더 빠른 차량은 느린 차량을 위협하지 않아야 하며, 느린 차량의 주행 라인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추월해야 한다. 느린 차량은 레이싱 라인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주행 및 제동을 해야 한다.

8.3.7 느린 차량에게 의도적으로 접촉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8.4 블로킹 (Blocking)

8.4.1 과도한 블로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치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코너와 코너 사이 구간 중 두 번 이상의 주행 라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8.4.2 브레이크 구역에서 주행시 라인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이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8.4.3 주행중에 급정지, 브레이크 점검 등은 스포츠맨십 위반으로 평가되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신에게 청색기가 제시된다면 가능한 빨리 더 빠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며, 깃발이 표시된 후 두 직선 또는 두 코너 이내에서 완료한다.

8.5 예선 (Qualifying)

8.5.1 예선에서 어택 랩 즉,기록 경신을 위한 랩을 주행할 때 트랙에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8.5.2 어택랩(attack-lap)주행 시 뒤에서 접근하는 빠른 차량에게 양보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예선에서 다른 드라이버를 의도적으로 막거나 충돌하는 것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8.5.3 인랩(in-lap)이나 아웃랩(out-lap)에 있다면 더 빠른 차량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

행해야 한다.

8.6 피트스톱 (Pitstop)

8.6.1 드라이버는 항상 피트레인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8.6.2 피트에 진입할 때와 빠져나올 때는 트랙내 주행중인 다른 차량을 주의해야 한다.

8.6.3 피트 개러지 진입 시 다른 개러지에 정차해 있거나 피트주행 레인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주의해야 한다.

8.7 금지된 행동

8.7.1 **무리한 트랙 복귀** : 코스를 이탈하여 다시 트랙에 재 진입할 때 다른 차량에게 충돌을 일으킬 수 있거나 위협이 될 정도로 무리하게 복귀해서는 안된다.

8.7.2 **역주행** : 정해진 차량 주행방향과 반대로 주행해서는 안된다.

8.7.3 **무리한 사행주행** : 차량을 좌우로 반복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다른 차량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주행

8.7.4 **부정 출발(점프스타트)** : 출발 신호가 제시되기 전에 차량이 그리드에서 이동하는 경우

8.7.5 **이유 없는 트랙 이탈** : 트랙 가장자리의 흰색 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하는 경우. 차량의 4바퀴 모두가 흰색 선을 벗어난 경우 트랙이탈로 간주된다.

8.7.6 **고의 서행 주행** : 트랙에서 통상적인 경주 속도의 60% 이하로 고의적으로 운전한 경우

8.7.7 **트랙에서의 정차** : 차량을 완전히 또는 거의 정지된 상태로 트랙에 정차해서는 안된다. 차량을 부득이하게 정차시켜야 할 때는 트랙 바깥쪽의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정차해야 한다.

9 레이스 디렉터

9.1 주최자는 각 세션의 경기 운영을 위하여 레이스 디렉터 또는 경기위원장을 지정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9.1.1 실시간 경기에서 운전자 주변 장치 및 경기 구역 점검 및 모니터링

9.1.2 모든 세션의 통제, 필요 시 경기 타임테이블의 변경

9.1.3 규정에 따라 세션 중지 또는 중단

9.1.4 세이프티카의 투입 및 운영

9.1.5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 내에서의 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 부여

9.1.6 사건, 사고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행위 및 벌칙이나 벌금 부과

9.1.7 스타트 절차

9.1.8 경기 결과 결정 및 확인

9.2 레이스 디렉터는 특별 공지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대회의 모든 분류와 결과는 각 대회 단계에 대한 규정집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발표한다.

9.3 레이스 디렉터는 레이스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10 심사위원

10.1 심사위원은 스포츠규정의 시행을 위한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항을 심의 및 판정할 수 있다.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규정의 틀에 벗어나서 발생한 경기 또는 참가자 관련 위반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0.2 디지털 모터스포츠에서 심사위원은 연습, 예선, 세션의 시작, 중단 및 세이프티카의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레이스 디렉터 또는 경기위원장의 역할과는 구분된다.

10.3 심사위원은 KARA에 의해 지명된다.

10.4 심사위원은 매 시즌 시작 전 KARA에서 운영하는 심사위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0.5 심사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특정선수 또는 팀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경기 결과로부터 직간접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10.6 심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나 처신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10.7 디지털 모터스포츠는 사실 판단관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으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상에서 처리될 수 있는 제어 기능을 근거로 레이스 디렉터에 의해 1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10.8 다음의 경우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0.8.1 상대방과의 충돌로 인해 추월하여 순위가 변경된 경우

10.8.2 충돌로 인해 상대가 스핀하거나 트랙을 벗어 난 경우

10.8.3 충돌로 인해 상대가 기계적 손상을 입은 경우

10.8.4 트랙에서 2번 이상의 주행라인 변경으로 블로킹 한 경우

10.8.5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에서 코너를 돌 때 안쪽 차량의 공간을 남겨두지 않아 접촉 또는 충돌을 유발한 경우("사이드 바이 사이드"상황은 차량의 1/3 이상이 겹쳐 있을때를 의미)

10.8.6 코너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아닌 상황에서 안쪽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경우

10.8.7 브레이크가 필요하지 않은 위치에서 제동하거나 트랙에서 브레이크 테스트를 한 경우

10.8.8 주행 후 트랙으로 복귀하여 다른 사람에게 충돌 또는 사고를 유발한 경우

10.8.9 예선 동안 다른 차량의 어택랩을 방해한 경우

10.8.10 다른 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비밀리에 활동한 경우

10.8.11 기술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10.8.12 기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11 부정행위

11.1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또는 불공정한 이득을 얻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11.1.1 **하드웨어 수정** : 하드웨어의 일부에 대한 수정, 변경으로 주최자 또는 게임 제조사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의 기능을 뜻한다.

11.1.2 **해킹 및 치팅** : 표준 소프트웨어 패치 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가 아닌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고의적으로 게임 및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를 말한다.

11.1.3 **게임의 결함 이용** : 의도적으로 게임 내 버그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11.1.4 **사칭(다른 운전자 계정으로 로그인/재생 포함)** : 다른 운전자의 계정으로 접속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참가하도록 권유, 유도, 부탁 또는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1.1.5 **담합** : 두 명 이상의 참가자 및 또는 다른 사람과 합의하여, 경기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11.1.6 **약물 및 음주** : 마약 또는 음주운전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경기 일정 중에 약물 또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된 참가자는 퇴출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

11.1.7 **뇌물 및 선물** : 참가자 및 경기 관계자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선물이나 보상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

12 필수 애플리케이션

12.1 주최자는 선수가 경기 중에 자동화된 제어 메커니즘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에 관한 추가 규칙을 제시할 수 있다. 참가선수는 이에 대한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기 후 기술적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규칙을 유의해야 한다.

12.2 차량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해킹이나 부정행위로 사용되는 기타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단계에서도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주최자 또는 조직위원회에서 승인한 애플리케이션 앱만이 사용될 수 있다.

13 레이스 채팅 (Race Chat)

13.1 주최자는 참가 선수에게 음성 또는 문자 등의 통신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13.2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경기진행 중 주최자가 허가한 방법 이외의 통신은 허용되지 않으며 스포츠맨십과 다른 참가자에 대한 배려를 보여야 한다.

13.3 채팅 도중 다른 참가자나 주최자, 심사위원 등을 비방하거나 욕설, 폭언, 차별적 발언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

MEMBER OF FIA

디지털 모터스포츠 선수 및 팀 등록 가이드라인

제1조 총칙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라 한다)는 KARA 공인 디지털 모터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팀의 권익보호와 기록관리를 위하여 KARA의 디지털 모터스포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선수 라이선스를 등록 및 발급한다.

제2조 선수 라이선스

제2.1조 KARA가 발급하는 디지털 선수 라이선스는 본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발급한다.

2.1.1 디지털 선수 라이선스의 취득 가능 연령 제한은 없없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라이선스 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표-1 레이스 라이선스 등급별 취득 점수]

구분	국내	등급	라이선스 취득 점수
디지털	국내	A	2021년 연내 레이팅 시스템* 발표 예정
		B	
		C	

* 레이팅 시스템(Rating System): 공인대회 라운드당 순위에 따른 포인트 및 세이프티 포인트(Safety Point: 사고, 페널티 등을 점수화) 반영

2.1.2 디지털 국내 C 선수 라이선스

디지털 모터스포츠 대회 참가에 필요한 라이선스로 다음을 충족하면 발급할 수 있다.

2.1.2.a KARA 온라인 교육 과정 수료 후 테스트를 통과한 자.

제2.2조 디지털 선수 라이선스의 신청 및 갱신

2.2.1 라이선스의 발급 희망자는 KARA 전산 시스템(info.kara.or.kr)에 회원 가입하여 라이선스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여 신청할 수 있다.

2.2.2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라이선스 갱신은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선수 라이선스 가명의 사용

2.3.1 라이선스는 가명으로 발급될 수 있으며, KARA에 특별신청을 해야 한다.

2.3.2 가명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KARA 국내 스포츠 규정 제 5장 선수등록규정의 내용을 따른다.

제2.4조 기타 사항

2.4.1 선수 라이선스 관련 사항은 KARA 자동차경기국내규정 제5장 선수등록규정의 내용을 따른다.

2.4.2 선수 라이선스C 관련 비용은 1만원이며 2021 시즌의 경우 면제된다. B, A등급 라이선스 비용은 레이팅 시스템에 따라 2021 시즌 중 결정된다. 모든 비용은 KARA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팀의 등록

3.1 KARA가 발급하는 디지털 모터스포츠 팀 라이선스는 본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발급한다.

3.2 등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KARA에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방송 등에 부적절한 단어, 문구, 특수문자 등이 포함된 팀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3.3 팀은 2인 이상의 KARA 회원 또는 라이선스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3.4 팀은 기업 등의 후원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팀 명칭에 후원 기업 또는 브랜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3.5 선수, 팀 대표 또는 감독 등 팀의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팀 등록 신청 및 준수 사항

4.1 디지털 모터스포츠 팀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비

용과 함께 KARA사무국에 제출한다.

4.2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KARA 사무국에 신청하여 라이선스를 연장할 수 있다.

4.3 기타 팀 관련 준수 사항은 KARA 자동차경기국내규정 제4장 팀등록규정의 내용을 따른다.

4.4 팀 등록 비용은 5만원이며 2021 시즌의 경우 면제된다. 모든 비용은 KARA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

MEMBER OF FIA

디지털 모터스포츠 주최자 및 대회 등록 가이드라인

제1조 총칙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라 한다)는 KARA 공인 디지털 모터스포츠 대회 주최자의 권익 보호와 대회 참가 선수 및 기록 관리 그리고 안정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KARA의 디지털 모터스포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주최자 및 대회를 등록한다.

제2조 대회 주최자 등록 및 자격

2.1 디지털 모터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주최자는 KARA에 대회 주최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2.2 디지털 모터스포츠 대회 주최자의 등록은 KARA 국내스포츠 규정 제3장 주최자 등록규정 내의 기초종목 주최자 등급인 C 등급으로 등록하여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3 주최자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KARA 사무국에 신청하여 라이선스를 연장할 수 있다.

2.4 기타 등록 및 자격 관련 사항은 KARA 자동차경기국내규정 제3장 주최자 등록규정의 내용을 따르며, 이 규정 내에 내용이 없거나 디지털 모터스포츠의 특성에 따른 유권 해석이 필요할 경우 KARA 사무국의 해석을 따른다.

제3조 디지털 모터스포츠 대회의 공인 신청

3.1 국내 디지털 모터스포츠 대회는 KARA에 등록되어 있는 주최자에 한해 공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3.2 대회 주최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공인신청을 한다.

-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KARA의 디지털 모터스포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 대회운영을 책임질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
- 대회 운영방식이 포함된 특별규정을 제정하고 공표하기전 KAR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대회 공인 신청

4.1 일정 기간 라운드가 진행되는 시리즈 경기의 경우 시리즈 등록을 한다.

4.2 시리즈 등록은 당해 연도 전체 일정 공식화를 위한 목적이며 KARA의 승인 하에 경기 공인 등록이 완료된다.

4.3 주최자는 대회 공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접수기한을 지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접수 기한
1) 시리즈 등록 신청서 (양식)	대회 공식 스케쥴 시작일 1개월 전까지
2) 대회 특별규정	
3) 대회 조직도	
4) 대회 세부 일정 및 운영 계획	대회 공식 스케쥴 시작 3일 전까지
5) 참가 선수 및 오피셜 명단	

4.4 **대회 후 주최자 제출 서류**

주최자는 대회 종료 후 1주일 이내 다음의 서류 제출한다.

- 대회 결과 및 사고 기록지 (Log book)
- 페널티 부과 내용이 포함된 심사 보고서
- 기타 대회 및 선수 기록 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5조 대회 공인비

디지털 모터스포츠 대회의 공인비는 기초 종목(KART) 수준으로 정하되 대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비용은 대회 개최 1주일 전까지 납부한다.

제6조 기타 사항

6.1 대회 등록 관련 사항은 KARA 자동차경기국내규정 제7장 대회 등록규정의 내용을 따르며, 이 규정 내에 내용이 없거나 디지털 모터스포츠의 특성에 따른 유권 해석이 필요할 경우 KARA 사무국의 해석을 따른다.

2021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자동차경기
국내규정집

발행인 손 관 수
발행처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발행일 2021.01

전화 02.424.2951 팩스 02.424.2953
공식 웹사이트 www.kara.or.kr